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25-10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I.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II.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III.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발간사 *

정부에서는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 시 학대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사후관리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월 28일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와 상담원들이 실시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세 번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머리말 *

200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설립된 이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활발히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2000년 17개소에 불과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에는 대구남부, 인천미추홀, 경기용인,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4개소가 추가되어 총 50개소로 확대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보다 선진화되기 위한 큰 걸음을 디뎠습니다. 아동학대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점차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의미있는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발간하는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서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실태의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 주소를 살펴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법 및 정책이 마련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로 희생된 소중한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동의 삶의 질이 증진되고 꿈꾸는 미래가 곧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목 차



[요 약] 2

제1장 서 론 3

1. 발간목적 및 배경	45
2. 주요내용	46
3. 자료수집 과정	47
4. 자료분석	47

제2장 신고접수 현황 4

1. 신고접수	51
1) 신고접수	51
2) 기관별 신고접수	53
2. 신고자 유형	55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60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36

1. 현장조사	65
1) 현장조사 횟수	65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65
2. 사례판정	67
1) 사례판정 결과	67
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68
3) 피해아동 보호 수	69
3. 피해아동 발견율	69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Ⅶ
1. 인구사회학적 요인	73
1) 피해아동	73
가. 피해아동 성별	73
나. 피해아동 연령	73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57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6 7
마. 피해아동 특성	77
2) 학대행위자	79
가. 학대행위자 성별	97
나. 학대행위자 연령	97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8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2 8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8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3 8
사. 학대행위자 특성	48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85
1) 아동학대 발생장소	85
2) 아동학대 발생빈도	86
3. 아동학대사례 유형	87
1) 아동학대사례 유형	8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7 8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8 8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89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9 8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0 9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 9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9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4 9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95
1) 피해아동 조치결과	95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9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0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05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❸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IV
5. 서비스 제공 현황	109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09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9·0 1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0·1 1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11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1·1 1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2·1 1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13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3·1 1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4·1 1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❶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17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정결과	117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7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81
2)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피해아동 특성	118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8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91
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1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 1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122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22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221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421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521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26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62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721
6)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28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821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21

7) 교차분석	129
가.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921
나.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	031
2. 재학대 사례	131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31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31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❶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❷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❸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❹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35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❶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❷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❸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❹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8·3 1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❷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9
5) 재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14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❶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❷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❸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1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441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45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5·4 1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6·4 1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46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611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71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71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1
8) 2012/2013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149
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❷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91
다. 가족유형 비교	❶

3. 사망아동 사례	151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151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152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	1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154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4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5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55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6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157
1) 기관별 현황	157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158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51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51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51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161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161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6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3·6 1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4·6 1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165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61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61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6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13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현황	175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175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176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177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179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180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80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182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4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186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188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188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88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89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90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1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93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193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194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4
[부 록]	197
용어집	199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05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6

<표목차>

<표 1-1> 보고서 내용 구성	6· 4
<표 2-1> 신고접수 건수	1· 5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2· 5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5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4· 5
<표 2-5> 신고자 유형	6· 5
<표 2-6> 기관별 신고자 유형	7· 5
<표 2-7> 신고접수 경로 유형	8· 6
<표 2-8>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1· 6
<표 3-1> 현장조사 횟수	5· 6
<표 3-2> 기관별 현장조사	6· 6
<표 3-3> 사례판정 결과	7· 6
<표 3-4>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8· 6
<표 3-5> 피해아동 보호 수	9· 6
<표 3-6> 피해아동 발견율	0· 7
<표 4-1> 피해아동 성별	3· 7
<표 4-2> 피해아동 연령	4· 7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6· 7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6· 7
<표 4-5> 피해아동 특성	8· 7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9· 7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0· 8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 8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2· 8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3· 8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3· 8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4· 8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5· 8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6· 8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분류)	8· 8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9· 8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0· 9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 9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 9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9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4	9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6	9
<표 4-23>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7	9
<표 4-24>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7	9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비교	8	9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9	9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0·0	1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2·0	1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3·0	1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4·0	1
<표 4-31>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0	1
<표 4-3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0	1
<표 4-33>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8·0	1
<표 4-3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8·0	1
<표 4-35>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90	1
<표 4-3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0·1	1
<표 4-3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1	1
<표 4-3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이전/2013년)	2·1	1
<표 4-3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2·1	1
<표 4-4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3·1	1
<표 4-4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1	1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7·1	1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8·1	1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9·1	1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0·2	1
<표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	1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2·2	1
<표 5-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3·2	1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4·2	1
<표 5-9>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5·2	1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6·2	1
<표 5-1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7·2	1
<표 5-1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8·2	1
<표 5-1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2	1

<표 5-14>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9·2 1
<표 5-15>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31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3 1
<표 5-1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2·3 1
<표 5-1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3·3 1
<표 5-1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4·3 1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3 1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6·3 1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6·3 1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7·3 1
<표 5-2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8·3· 1
<표 5-2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9·3 1
<표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9·3 1
<표 5-27>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041
<표 5-28>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4 1
<표 5-29>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 1
<표 5-30>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3·4 1
<표 5-31>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4·4 1
<표 5-32>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5·4· 1
<표 5-3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6·4· 1
<표 5-3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6·4 1
<표 5-3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7·4 1
<표 5-3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8·4 1
<표 5-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4 1
<표 5-38>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4· 1
<표 5-39>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5· 1
<표 5-40>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1·5 1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1·5 1
<표 5-42>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5 1
<표 5-4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5 1
<표 5-44>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1
<표 5-45>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4·5 1
<표 5-46>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5·5 1
<표 5-47>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6·5 1
<표 5-4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5 1

<표 5-49>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7·5 1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8·5 1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9·5 1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0·6 1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1·6 1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6 1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3·6 1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3·6· 1
<표 5-57>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4·6· 1
<표 5-5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6 1
<표 5-5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6 1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 상담원 업무량	0·7 1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0·7 1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7· 1
<표 6-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71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571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6·7 1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871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971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1·8 1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1·81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3·8 1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4·8 1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8 1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7·8 1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8·8 1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9·8 1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0·9 1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9 1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9 1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3·9 1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4·9 1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9 1

<그림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1· 5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2·· 5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5
<그림 2-4> 신고자 유형	6· 5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0·· 6
<그림 3-1> 사례판정 결과	7· 6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3· 7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5· 7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6· 7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6..... 7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9· 7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9· 7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0· 8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 8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2.... 8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3..... 8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6.. 8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8..... 8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9..... 8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0.... 9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 9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9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6.... 9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격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6..... 9
<그림 4-19>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7.... 9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0 1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3·0 1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4·0 1
<그림 4-23>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0 1
<그림 4-2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0 1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7·1 1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9·1 1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2· 1

<그림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4·2 1
<그림 5-5>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5·2 1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6·2 1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8·2 1
<그림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9·2 1
<그림 5-9>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0·3 1
<그림 5-10>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건수	0·3 1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3 1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2·3 1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3·3 1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5·3 1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3 1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6·3 1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7·3 1
<그림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7·3 1
<그림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8·3 1
<그림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0·4 1
<그림 5-21>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0·4 1
<그림 5-22>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4 1
<그림 5-23>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 1
<그림 5-24>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4·4 1
<그림 5-25>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5·4 1
<그림 5-2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5·4 1
<그림 5-2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6·4 1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7·4 1
<그림 5-2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7·4 1
<그림 5-3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8·4 1
<그림 5-3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8·4 1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5 1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3·5 1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4·5 1
<그림 5-35>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5·5 1
<그림 5-36>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6·5 1
<그림 5-37>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5 1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8·5 1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9·5 1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6 1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1·6 1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6 1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6· 1
<그림 5-4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4·6· 1
<그림 5-4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6 1
<그림 5-4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6 1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671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7·7 1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7·7 1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08 1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1·8 1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8 1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3·8 1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4·8 1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8 1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7·8 1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8·8 1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9·8 1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0·9 1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9 1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9 1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3·9 1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4·9 1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9 1

요 약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 판정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2001~2013년)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약 *

- 본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3년 기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의거).
- 본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3,076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3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 수집된 자료는 2013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및 서비스 제공,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 2013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3,076건에 해당됨.
 - ▶ 아동학대 신고접수 13,076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0,857건(83.0%), 중복신고는 43건(0.3%), 일반상담은 2,176건(16.6%)임.
 - ▶ 아동학대 신고접수 13,076건 중 재신고 사례는 1,840건(14.1%)이며, 2013년 신규신고는 11,236건(85.9%)임.
 - ▶ 201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나누면 5월이 1,482건(1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월 1,350건(10.3%), 9월 963건(7.4%), 7월 1,327건(10.1%), 4월 1,145건(8.8%)의 순으로 나타남.

- ▣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620건,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504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478건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4.1%(3,706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5.9%(7,151건)로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9.7%임. 다음으로는 교원 6.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8% 순으로 나타남.
-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와 부모에 의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24.2%, 13.1%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이웃·친구 9.8%, 경찰 6.7% 순으로 나타남.

신고접수 경로 유형

-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1577-1391을 통한 신고가 11,859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내방이 597건(4.6%),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549건(4.2%), 인터넷과 119의 경우는 각각 53건(0.4%), 18건(0.1%)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 ▣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0,857건을 대상으로 총 21,323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 ▣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0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사례판정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0,857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6,796건으로 62.6%를 차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 1,217건(11.2%), 일반사례 2,829건(26.1%)임.
- 아동학대사례 6,796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6,303명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발견율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3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0.73%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88%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0.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0.67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86,638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21,767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319,865명, 대전광역시 309,364명, 부산광역시 275,597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1개 기관 당 약 60,804명이었고, 강원도는 89,826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2,674건(39.3%), 여아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8%,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7.4%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2,581건(38.0%), 친부모가족 외 형태 3,427건(50.4%),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404건(5.9%), 46건(0.7%)의 양상을 나타냄.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20.0%, 14.4%, 2.3%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6.7%로 나타나 2012년에 39.8%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함.

▶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1건(0.3%), 27건(0.4%), 356건(5.2%)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1,915건(28.2%), 비수급권 대상 4,173건(61.4%), 그리고 파악 안 됨이 708건(10.4%)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행동이 전체 35.5%인 5,513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서·정신건강 4,914건(31.6%), 특성 없음 2,465건(15.9%), 발달·신체건강 1,855건(11.9%), 장애 539건(3.5%), 기타 247건(1.6%)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3,576건(52.6%), 여성 3,207건(47.2%)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교적 많았으며, 파악 안 됨은 13건(0.2%)임.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2,737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144건(31.5%)으로 나타났는데 10~15세의 피해아동이 가장 많은 것을 비추어볼 때, 대부분 초등학생의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 친인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5,454건(8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786건(11.6%), 친인척 351건(5.2%), 타인 및 기타 85건(1.3%), 파악 안 됨 35건(0.5%)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5,375건으로 전체의 79.1%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 안 됨은 각각 1,396건(20.5%), 25건(0.4%)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2,404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직 1,052건(15.5%)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전체의 약 18.9% 정도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이 1,373건(20.6%)인 반면 비수급권이 4,563건(67.1%)에 달하였으며, 과악 안 됨은 860건(12.7%)에 해당함.
- ▣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2.6%에 해당하는 7,099건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4,883건(22.4%),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건 (9.4%)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1.9%에 해당하는 5,564 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은 각각 232건(3.4%), 379건(5.6%), 15건(0.2%)임.
- ▣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8.7%인 2,629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1,049건(15.4%)임.

아동학대사례 유형

-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922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78건(26.2%), 정서학대 1,101건(16.2%), 신체학대 753건(11.1%), 성학대 242건 (3.6%)의 순으로 나타남.
- ▣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3,843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3,160건(30.9%), 2,848건(27.8%)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성학대 380건(3.7%)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됨.
-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의 피해아동 연령은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세 구간에 많은 아동이 분포됨.
- ▣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성학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서·정신건강은 정서학대, 발달·신체건강은 방임에서 빈번히 발생함.
-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성학대의 경우 4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 정서, 방임에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음.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4,949건(72.8%)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 1,839건(27.1%), 사망 8건(0.1%)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이 초기에 격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065건(15.7%), 친인척보호 354건(5.2%), 장기보호 253건(3.7%), 연고자에 의한 보호 69건(1.0%), 병원입원 86건(1.3%), 가정위탁 12건(0.2%) 순으로 나타남.
- ▶ 초기 격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385건(21.0%)이었으며, 가정 복귀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격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150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사이 88건(22.9%), 3~6개월 사이 83건(21.6%), 6개월~1년 사이 59건(15.3%), 1년 이상 5건(1.3%)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초기 격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가 39.8%, 인천광역시 31.5%, 충청남도 29.1% 순으로 조사됨.
-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5%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 ▣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3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함.

-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4,376건(64.4%), 격리보호 1,944건(28.6%), 사망 22건(0.3%), 가정복귀 454건(6.7%)으로 나타났으며, 격리 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장기보호 960건(14.1%), 친족보호 526건(7.7%), 일시보호 358건(5.3%), 연고자에 의한 보호 37건(0.5%), 병원입원 38건(0.6%), 가정위탁 25건(0.4%) 순으로 나타남.
- ▶ 2013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보호가 3,527건(69.0%)이나 격리보호는 1,277건(25.0%)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849건(50.4%), 격리보호 667건(39.6%)으로 파악됨.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5,220건(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나지 못함과 고소·고발은 각각 660건(9.7%), 544건(8.0%)임. 아동과의 분리는 372건(5.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 위자에게 고소고발 조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대부분 지속관찰 조치함.
- ▶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544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수사가 19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수사 118건(21.7%),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146건(26.8%), 78건(14.3%)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고발 조치가 많이 취해진 유형은 중복학대와 성학대임.

서비스 제공 현황

-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3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311,599회임.
-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3년 이전과 2013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62,177회(41.1%), 74,004회(46.1%)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 보호서비스는 2013년 이전 사례 52,586회(34.8%), 2013년 사례 50,605회(31.5%)로 나타남.
-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았고(121,260회, 42.2%), 일시보호서비스 103,191회 (35.9%), 심리치료서비스 22,158회(7.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4,066회(8.4%) 순임. 사후관리 사례에서도 상담서비스가 14,921회(61.1%)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은 심리치료서비스 4,520회(18.5%)임.
-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3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63,863회임.
-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3년 이전과 2013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2013년 이전 신고 사례 26,481회 (82.9%), 2013년 신고 사례 27,108회(84.9%)의 서비스가 실시됨.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진행 중 사례에는 47,785회(85.0%), 사후관리 사례에는 5,804회(76.2%)가 실시됨. 의료서비스의 경우 진행 중 사례 3,746회(6.7%), 사후관리 사례 1,148회(15.1%)임.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3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58,869회임.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3년 이전과 2013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3년 이전 사례는 25,350회(92.4%), 2013년 신고사례는 27,846회(88.6%)인 것으로 파악됨.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46,790회(90.4%), 사후관리 사례는 6,406회(90.2%)에 해당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정 결과는 신고의무자가 2,716건(73.5%), 비신고의무자가 4,080건(57.1%)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3건(100.0%), 의료기사 6건(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0건(87.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2건(86.9%),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165건(86.4%)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만 13~15세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603건(22.2%)과 889건(21.8%)을 나타냄. 다음으로는 만 10~12세로 각각 560건(20.6%)과 854건(20.9%)을 차지함.

▶ 신고의무자를 직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원에 의한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연령이 만 13~15세인 경우가 200건(33.2%)으로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는 피해아동이 만 1~3세일 때 4건(30.8%), 의료인은 피해아동이 만 1세 미만일 때 17건(28.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종사자에 의해 발견된 피해아동 연령은 만 4~6세로 각각 59건(39.1%)과 9건(60.0%)을 나타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경우 피해아동 연령이 만 13~15세일 때가 25건(4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분포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부모 2,266건(83.4%), 친인척 149건(5.5%), 대리양육자 201건(7.4%), 타인 34건(1.3%)을 차지하였으며,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부모 3,188건(78.1%), 친인척 202건(5.0%), 대리양육자 585건(14.3%), 타인 51건(1.3%)을 나타냄.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발생장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모두 가정 내 2,218건(81.7%), 3,346건(8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아동학대의 발생빈도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73건(43.2%), 1,456건(35.7%)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2~3일에 한 번 정도 발생한 경우가 각각 365건(13.4%), 684건(16.8%)임.
-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1주일에서 1개월 이전 발생한 아동학대 중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07건(22.3%),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51건(18.4%)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학대사례를 빨리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방임이 1,418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 1,301건(32.4%), 신체학대 1,116건(27.8%)이었음.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정서학대 2,542건(40.9%), 신체학대 2,044건(32.9%), 방임 1,430건(23.0%)으로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학원 강사, 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순으로 신체학대 발견율이 각각 57.1%, 43.5%, 43.0%, 37.5%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 모두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1,870건(68.9%), 3,080건(75.5%)임. 격리보호의 경우 신고의무자 845건(31.1%), 993건(24.3%)으로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관찰을 취하는 사례가 각각 1,989건(73.2%), 3,231건(7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를 살펴본 결과, 11점에서 20점의 경우 신고의무자 1,356건(49.9%), 비신고의무자 1,873건(45.9%)이었고 20점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자 85건(3.1%), 비신고의무자 105건(2.6%)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위험요인이 높은 사례들을 더 잘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횟수가 높을수록 신고 건수도 높아지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재학대 사례

- 2013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9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796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14.4%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677건(69.1%), 남아 303건(30.9%)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약 2.2배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3~15세가 27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 10~12세 236건(24.1%), 만 7~9세 198건(20.2%), 만 4~6세 138건(14.1%)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325건(33.2%), 친부모가족 외 형태 548건(55.9%), 대리양육형태 89건(9.1%), 기타와 파악 안 됨은 각각 4건(0.4%), 14건(1.4%)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경우, 부자가정 217건(22.1%), 모자가정 174건(17.8%), 재혼가정 59건(6.0%), 친인척보호 38건(3.9%) 순으로 나타남. 또한 대리양육형태의 세부유형 중에는 시설보호는 79건(8.1%),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은 각각 6건(0.6%), 4건(0.4%)임.
-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행동이 1,072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 990건(34.8%), 발달·신체건강 395건(13.9%), 특성없음 217건(7.6%), 장애 143건(5.0%)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61건(57.2%), 여성 417건(42.6%)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2건(0.2%)임.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 401건(40.9%), 30대 304건(31.0%), 50대 170건(17.3%)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30~40대(71.9%)인 것으로 분석됨.
-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431건(44.0%), 201건(20.5%)으로 가장 많이 분포함.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직 101건(10.3%), 파악 안 됨 57건(5.8%), 기술공 및 준전문직 43건(4.4%)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8.5%를 차지한 반면 300만 원 이상은 28건(2.9%)에 그침.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권 대상자 539건(55.0%), 수급권 대상자 345건(35.2%)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96건(9.8%)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113건(3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808건(22.8%), 부부 및 가족 갈등 282건(8.0%), 성격 및 기질문제 258건(7.3%), 중독문제 236건(6.7%) 순임.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81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 108건(11.0%), 친인척 55건(5.6%), 타인 22건(2.2%)으로 파악됨.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853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81건(8.3%), 기타 12건(1.2%), 집근처 또는 길가 11건(1.1%)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430건(4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3일에 한번 및 일주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05건(10.7%)임.
- 아동학대 사례판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356건, 나타남). 다시 말해 재학대 신고 사례 중 사례판정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사례는 75.1%에 해당함.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에서는 정서·정신건강이 85건(41.9%), 적응행동이 76건(3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개월에서 3개월의 경우 68건(41.7%), 59건(36.2%), 6개월에서 1년은 122건(40.7%), 119건(39.7%)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학대 행위자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학대가 443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방임 242건(24.7%), 정서학대 137건 (14.0%) 순임. 또한 중복학대 유형을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545건(3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방임 440건(29.2%), 신체학대 440건(29.2%)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711건(72.6%), 격리보호조치가 266건 (27.1%), 사망 3건(0.3%)으로 파악됨. 최종조치결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580건(5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격리보호 317건(32.3%), 가정복귀 79건 (8.1%), 사망 4건(0.4%)임.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관찰이었으며 783건 (79.9%)임.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83건(8.5%)이었고 고소·고발과 아동과의 분리는 각각 70건(7.1%), 44건(4.5%)임. 학대행위자 대상의 최종조치결과 또한 지속관찰이 737건(75.2%)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81 건(8.3%)에 해당함. 고소·고발과 아동과의 분리는 각각 96건(9.8%), 66건(6.7%)임.
- 2012/2013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였음.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격리보호 비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격리보호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계부와 계모, 이웃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

- 201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796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22건이며, 전체 사례의 0.3%를 차지 함.
- 총 22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7건(31.8%), 여아 15건 (68.2%)으로 여아가 많았음.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22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의

각각 8건(36.4%), 14건(63.6%)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 미만이 8건(3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만 2세는 5건(22.7%)이었다. 그리고 만 8세는 3건(13.6%)을 차지하였고, 7세, 11세는 각각 2건(9.1%), 5세와 15세는 각각 1건(4.5%)으로 집계됨.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20대에서 40대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가 분포된 연령대는 30대로 9건(40.9%)이 이에 해당됨.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살펴보면 부모에 해당하는 유형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는데, 친모와 친부에 의한 사망아동 사례는 각 10건(45.5%), 7건(31.8%)이었으며, 계모 2건(9.1%), 그 외 양모,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사례는 각각 1건(4.5%)이 발생함.

▣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17건, 77.3%),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는 3건(13.6%), 기타는 2건(9.1%)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 5건(22.7%), 2~3일에 한번과 1주일에 한 번이 각각 3건(13.6%)인 것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 12건(54.5%), 신체학대 7건(31.8%), 중복학대 3건(13.6%)으로 분석됨. 중복학대 3건 중 2건(9.1%)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이며, 1건(4.5%)은 정서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사례임.

▣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고발 조치가 10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 관찰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8건(36.4%),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4건(18.2%)으로 파악됨.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 2013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종사자(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591건으로 전체의 8.7%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34.2%), 기타복지시설 종사자는 27건(4.6%)이었음.

- ▶ 각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43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29건(21.8%), 경상남도 58건(9.8%) 순으로 나타남.
- ▶ 또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각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전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한 사례가 143건(24.2%)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사례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135건, 그리고 보육 교직원 1건, 기타복지시설 7건 이었음.

-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313건(53.0%), 여아 278건(47.0%)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례의 경우 남아 91건(45.0%), 여아 111건(55.0%)이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남아 207건(57.2%), 여아 155건(42.8%), 그리고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남아 15건(55.6%), 여아 12건(44.4%)임.
-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6세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가 192건으로 95.1%를 차지함. 아동복지시설은 만 13~1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10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마지막으로 기타복지시설은 만 13~15세에 14건(51.9%)의 많은 아동이 집중됨.
-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 없음 743건(43.4%)을 제외하고는 적응·행동 특성 466건(27.2%)과 정서·정신건강 특성 314건(18.4%)을 지닌 아동이 두드러지게 많았음.
- 학대행위자 중 여성(359건, 60.7%)이 남성(232건, 39.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여성의 비중보다 높고, 보육교직원은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연령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지닌 항목은 30대로 185건(31.3%)을 기록함. 다음으로는 40대 155건(26.2%), 20대 148건(25.0%) 순임. 보육교직원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20대 86건(42.6%), 30대 50건(24.8%)이었으며, 이에 반해 기타복지시설의 종사자는 50대 12건(44.4%)과 30대 7건(25.9%)이었다.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938건(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64건(8.6%), 성격 및 기질문제와 특성없음은 각각 161건(8.5%), 438건(23.1%)으로 나타남.

- ▣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03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정서학대 192건(32.5%), 신체학대 179건(30.3%), 방임 9건(1.5%), 성학대 8건(1.4%) 순임.
 -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89건(48.1%)을 기록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 353건(43.6%), 방임 44건(5.4%), 성학대 23건(2.8%)임.
-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모두 격리보호보다 원가정보호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각각 199건(98.5%), 324건(89.5%), 16건(59.3%)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가장 많이 취해진 최종조치는 지속관찰로 308건(52.1%)이었으며, 고소·고발은 전체 사례의 24.7%인 146건이었다. 또한 아동과 분리된 학대행위자는 100건(16.9%),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37건(6.3%)에 해당하였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5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포함한 상담원 총 375명을 대상으로 파악함.
-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 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횟수, 교육·홍보·협력사업 실시 횟수 및 인원수를 선정함.
- ▣ 신고접수된 신고 건수 13,071건 가운데 10,856건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총 21,319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사례 당 평균 2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됨.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총 449,172회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에게 17,425회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인쇄물, 언론, 홍보매체, 캠페인 및 홍보

행사를 통해 총 1,794,960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함.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협력사업의 경우, 1,441회에 걸쳐 이루어짐.

-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기관장을 포함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인 375명(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제외)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산출함.
- 2013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상담지원사업의 업무량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13년 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신고접수 건수는 34.9건, 현장조사 횟수는 56.9회로 파악됨.
 - ▶ 상담원 인당 서비스 대상자에게 총 1,197.8회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음.
 - ▶ 2013년 한 해 동안 총 46.5회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홍보사업과 협력사업의 경우 각각 4786.6회, 3.8회가 실시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2001-2013)»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의 신고 건수는 13,0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9.5% 증가함.
- 2001년에는 20건이 재신고 되었으나 2013년에는 1,840건이 재신고되어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3년에는 3,706건에 달하여 5.4배 증가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30%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의 유형을 보면 매년 1577-1391로 신고되

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13년에 1577-1391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의 90.7%로 2012년 88.8%에 비해 증가함.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내방하여 신고한 경우는 2012년 6.3%에서 2013년 4.6%로 다소 감소함.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2013년의 피해아동 보호 건수,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하여 개입한 사례의 건수는 2001년과 비교할 때 약 3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증가는 2001년 17개소에 불과하던 지역아동보호기관이 2013년에 50개소로 증설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함. 2013년의 경우, 중복학대는 전체의 43%를 차지하였고 방임은 26.2%에 해당하였음.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지난 13년 간 아동학대사례 중 약 80%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부모 정도의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 또한 꾸준히 발생함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지난 13년 간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부자가정으로 평균 30%로 집계되었고, 모자가정은 약 14.5%를 차지함. 재혼가정의 경우 6.7%에서 11.3%의 수준이었으며,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었던 아동은 4.4%에서 8.9%로 나타남.
- 대리양육형태는 친부모가족이나 친부모가족 외의 형태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가정위탁의 경우 0.1%에서 0.6%되었으며, 입양가정 형태도 이와 유사한 0.2%에서 0.6%로 나타남. 시설보호의 경우는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에 비해 많았으며 0.4%에서 5.2%의 분포를 나타냄.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재학대 사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503건, 2011년 563건, 2012년 914건, 2013년 980건으로 증가함. 재학대 사례 사례의 아동 수의 경우, 2010년에는 494명, 2011년 559명, 2013년 826명, 2013년 489명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4년 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0년에는 방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정서학대, 신체학대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남. 반면 2011년, 2012년과 2013년에는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방임과 신체학대가 그 뒤를 이어 많이 발생함.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재학대 사례 중 약 30% 정도가 초기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되었음. 2013년 전체 재학대 사례 중 36.3%가 초기 아동학대사례 판정 이후 3년 이후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해마다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전체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와 유사하게 원가정보호 조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10년 72%, 2011년 68.9%, 2012년 68.7%, 2013년 72.6% 정도의 수준을 나타냄.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관찰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10년 81.7%, 2011년 83.8%, 2012년 76.9%, 2013년 79.9%로 분석됨.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19건으로 집계됨.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서 2010년에는 3건에서 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에 13명, 2012년 10명으로 다시 증가함.
- 최근 4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방임과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 2013년 54.5%이었으며, 중복학대는 2010년 33.3%, 2011년 23.1%, 2012년 50%, 2013년 13.6%로 분석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고소·고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 100%, 2012년 50%, 2013년 45.5%로 집계

됨. 2011년의 경우 69.2%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는 지속관찰 조치를 하였고 고소·고발은 23.1% 이루어짐.

1

제1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 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2. 주요내용
3. 자료수집 과정
4. 자료분석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었다.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대구남부, 인천미추홀, 경기용인,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가 설립되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50개소)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법 제46조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13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보고서 내용 구성

분 류	내 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사례판정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 상담원 업무량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관리기간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3년 12월 말 기준 기관장 포함 375명 상담원)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이후,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4년 2월 28일 기준 입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2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24시간 동안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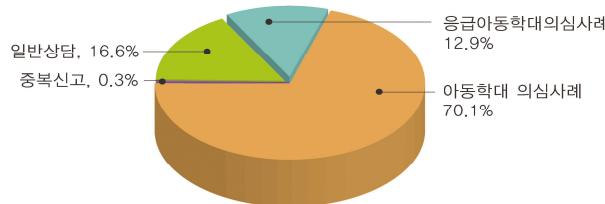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복신고 그리고 일반상담으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중복신고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였으나, 사례판정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보고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등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신고접수 건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076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1,686건, 9,17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3%를 차지하였다. 중복신고는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43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176건으로 16.6%에 해당하였다.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1,686 (12.9)	9,171 (70.1)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0,857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총 6,796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6,303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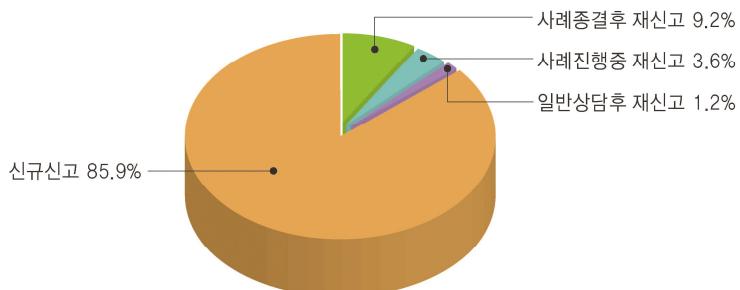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재신고 및 신규 신고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정 이전에 또 다른 학대 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2013년에 신고접수된 13,076건 중 재신고 사례는 14.1%에 해당하는 1,840건이며, 11,236건 (85.9%)은 2013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208건(9.2%)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 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475건(3.6%), 157건(1.2%)으로 집계되었다.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1,208(9.2)	475(3.6)	157(1.2)	1,840(14.1)	11,236(85.9)	13,076(100.0)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표 2-3>은 2013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5월에 총 1,482건(11.3%), 6월 총 1,350건(10.3%)의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되었다. 이는 2012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5월 및 6월에 집중된 것과 동일한 결과인데, 이는 가정의 달 및 어린이주간을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언론홍보 및 캠페인 등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1월 824건(6.3%), 2월 748건(5.7%) 순이었는데, 특히 동절기 방학 기간은 아동의 옷차림이 두터워져 외관상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 재신고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를 말하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말함.

방학과 추운 날씨로 인해 아동이 학교생활 등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적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인에 의해 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동절기 방학 기간 동안 신고율이 낮은 현상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계절 등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조기발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의료체계를 활용한다면 아동학대 고위험군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24	748	1,064	1,145	1,482	1,350	1,327	1,046	963	973	1,051	1,103	13,076
(6.3)	(5.7)	(8.1)	(8.8)	(11.3)	(10.3)	(10.1)	(8.0)	(7.4)	(7.4)	(8.0)	(8.4)	(100.0)

(단위: 건)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904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20건(4.7%),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504건(3.9%),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478건(3.7%)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아동학대의 경우 타범죄에 비해 피해아동 본인의 신고율이 약 2% 이내로 무척 낮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학대 피해 사실 발견이 아주 중요함.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중앙**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중복신고	계
서울	서울특별시	344(55.5)	276(44.5)	0(0.0)
	서울특별시동부	222(65.3)	112(32.9)	6(1.8)
	서울강서	176(88.4)	23(11.6)	0(0.0)
	서울은평	169(72.5)	64(27.5)	0(0.0)
	서울영등포	168(88.0)	23(12.0)	0(0.0)
	서울성북	96(65.8)	49(33.6)	1(0.7)
	서울마포	129(72.1)	49(27.4)	1(0.6)
	서울동남권	0(0.0)	0(0.0)	0(0.0)
부산	소 계	1,304(68.3)	596(31.2)	8(0.4)
	부산광역시	235(88.7)	30(11.3)	0(0.0)
	부산동부	192(82.8)	40(17.2)	0(0.0)
	소 계	427(82.1)	70(14.1)	0(0.0)
대구	대구광역시	360(90.7)	36(9.1)	1(0.3)
	대구남부	44(78.6)	11(19.6)	1(1.8)
	소 계	404(89.2)	47(10.4)	2(0.4)
인천	인천광역시	306(65.0)	164(34.8)	1(0.2)
	인천북부	178(89.9)	20(10.1)	0(0.0)
	인천미추홀	52(75.4)	17(24.6)	0(0.0)
	소 계	536(72.6)	201(27.2)	1(0.1)
광주	광주광역시	252(90.3)	27(9.7)	0(0.0)
대전	대전광역시	260(83.1)	51(16.3)	2(0.6)
울산	울산광역시	403(80.0)	100(19.8)	1(0.2)
경기	경기도	311(83.6)	60(16.1)	1(0.3)
	경기북부	272(87.2)	36(11.5)	4(1.3)
	경기성남	307(84.3)	57(15.7)	0(0.0)
	경기고양	208(77.0)	60(22.2)	2(0.7)
	경기부천	324(97.0)	10(3.0)	0(0.0)
	경기화성	374(87.4)	53(12.4)	1(0.2)
	경기남양주	140(76.5)	41(22.4)	2(1.1)
	안산시	329(95.1)	16(4.6)	1(0.3)
	경기용인	61(79.2)	16(20.8)	0(0.0)
	경기시흥	42(97.7)	1(2.3)	0(0.0)
	소 계	2,368(86.8)	350(12.8)	11(0.4)
	강원도	102(82.9)	19(15.4)	2(1.6)
강원	강원동부	126(79.7)	28(17.7)	4(2.5)
	원주시	100(90.1)	11(9.9)	0(0.7)
	소 계	328(83.7)	58(14.8)	6(1.5)
충북	충청북도	255(78.0)	72(22.0)	0(0.0)
	충북북부	199(84.7)	36(15.3)	0(0.0)
	충북남부	124(82.7)	26(17.3)	0(0.0)
	소 계	578(81.2)	134(18.8)	0(0.0)
충남	충청남도	408(96.5)	15(3.5)	0(0.0)
	충청남도남부	122(74.8)	41(25.2)	0(0.0)
	소 계	530(90.4)	56(9.6)	0(0.0)
전북	전라북도	294(88.8)	36(10.9)	1(0.3)
	전라북도서부	462(96.7)	16(3.3)	0(0.0)
	전라북도동부	126(80.8)	30(19.2)	0(0.0)
	소 계	882(91.4)	82(8.5)	1(0.1)
전남	전라남도	237(86.5)	37(13.5)	0(0.0)
	전남서부권	161(89.4)	19(10.6)	0(0.0)
	전남중부권	154(82.4)	33(17.6)	0(0.0)
	소 계	552(86.1)	89(13.9)	0(0.0)
경북	경상북도	201(83.4)	38(15.8)	2(0.8)
	경북안동	139(88.0)	16(10.1)	3(1.9)
	경북포항	208(81.3)	46(18.0)	2(0.8)
	구미	136(65.7)	70(33.8)	1(0.5)
	소 계	684(79.4)	170(19.7)	8(0.9)
경남	경상남도	884(97.8)	20(2.2)	0(0.0)
	경남서부	197(92.1)	17(7.9)	0(0.0)
	소 계	1,081(96.7)	37(3.3)	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48(82.7)	31(17.3)	0(0.0)
	서귀포시	119(61.0)	75(38.5)	1(0.5)
	소 계	267(71.4)	106(28.3)	1(0.3)
	계	10,857(83.0)	2,176(16.6)	43(0.3)
13,076(100.0)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 건수 실적이 없음.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구에 한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번호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2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5>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10,857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706건(34.1%)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가 1,055 건(9.7%)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많았다. 다음으로는 교원 716건(6.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3건(3.7%), 보육 교직원 223건(2.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91건(1.8%)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신고의무자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은 신고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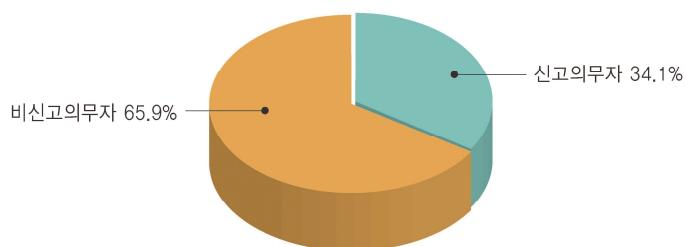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151건(65.9%)으로 2012년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와 부모에 의한 신고접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의료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632건(24.2%), 부모의 경우는 1,426건(13.1%)으로 나타나 전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경찰의 경우,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724건으로 신고접수건수가 작년 대비 약 70%가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 횟수가 2012년 10회에서 2013년 181회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9월 시행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상호현장출동 동행 및 경찰의 아동학대신고 통보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2-5>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교원	716(6.6)	부모	1,426(13.1)
의료인	93(0.9)	이웃·친구	1,065(9.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3(3.7)	친인척	397(3.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1(0.1)	경찰	724(6.7)
보육 교직원	223(2.1)	종교인	28(0.3)
유치원 종사자	20(0.2)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632(24.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7(0.1)	낯선 사람	103(0.9)
소방구급대원	11(0.1)	아동 본인	171(1.6)
응급구조사	0(0.0)	형제·자매	45(0.4)
의료기사	6(0.1)	의명	14(0.1)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8(0.1)	기타	546(5.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75(0.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3(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91(1.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55(9.7)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34(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6(3.1)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7(0.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7(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7(0.2)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6(0.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60(1.5)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37(0.3)		
소계	3,706(34.1)	소계	7,151(65.9)
계			10,857 (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표 2-6>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지역 및 기관	종양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대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서울특별시	0	0	0	0	0	0	0	0	0	0	0	0
서울	서울특별시동부	18	4	15	0	1	0	1	0	0	1	0	0
	서울강서	13	4	1	0	5	0	0	0	0	0	1	0
	서울은평	19	1	1	0	1	0	0	0	0	0	0	0
	서울영등포	10	2	2	0	3	0	0	0	0	0	0	0
	서울성북	10	4	2	0	7	0	0	0	0	0	0	0
	서울마포	5	2	2	0	2	0	0	1	0	0	0	2
	서울동남권	12	0	4	0	2	0	0	0	0	0	0	0
소 계		87	17	27	0	21	0	1	1	0	1	1	2
부산	부산광역시	33	1	4	0	9	0	0	0	0	0	1	0
	부산동부	21	1	6	0	0	0	0	0	0	0	0	2
	소 계	54	2	10	0	9	0	0	0	0	0	1	2
대구	대구광역시	34	6	28	0	3	5	0	0	0	0	0	8
	대구남부	5	0	1	0	2	0	0	0	0	0	0	0
	소 계	39	6	29	0	5	5	0	0	0	0	0	8
인천	인천광역시	18	4	7	0	3	0	0	0	0	0	0	3
	인천부부	13	3	2	4	2	0	0	1	0	0	0	0
	인천미추홀	0	0	1	0	0	0	0	0	0	0	0	0
	소 계	31	7	10	4	5	0	0	1	0	0	0	3
광주	광주광역시	16	1	67	0	5	0	1	1	0	0	0	0
대전	대전광역시	34	4	5	0	9	0	1	0	0	0	0	3
울산	울산광역시	20	0	7	0	5	0	1	0	0	0	0	4
경기	경기도	18	3	4	0	3	0	0	2	0	0	1	5
	경기부부	19	4	5	0	8	0	1	0	0	0	0	1
	경기성남	32	1	7	1	3	0	0	0	0	0	0	2
	경기고양	7	8	3	0	8	0	0	0	0	0	0	0
	경기부천	28	1	13	0	2	0	0	0	0	0	0	1
	경기화성	21	2	2	0	10	5	0	0	0	0	2	5
	경기남양주	12	0	2	0	2	0	0	1	0	0	0	1
	안산시	14	1	6	0	12	0	0	0	0	0	0	0
	경기용인	8	3	0	0	1	0	0	0	0	0	0	0
	경기시흥	7	0	0	0	1	0	0	0	0	0	0	0
	소 계	166	23	42	1	50	5	1	3	0	0	3	15
강원	강원도	15	2	2	0	5	0	0	0	0	0	0	0
	강원동부	14	4	3	0	1	0	0	3	0	0	0	6
	원주시	13	0	1	3	3	0	0	0	0	0	0	0
	소 계	42	6	6	3	9	0	0	3	0	0	0	6
충북	충청북도	9	3	15	0	3	0	0	0	0	1	0	0
	충북북부	11	0	8	1	4	2	0	0	0	0	0	1
	충북남부	16	1	3	0	0	0	0	0	0	0	0	1
	소 계	36	4	26	1	7	2	0	0	0	1	0	2
충남	충청남도	13	4	8	0	3	0	0	0	0	0	3	1
	충청남도남부	6	0	2	0	4	0	0	0	0	0	0	0
	소 계	19	4	10	0	7	0	0	0	0	3	1	1
전북	전라북도	20	6	46	0	12	0	0	0	0	0	0	1
	전라북도서부	18	3	32	0	10	2	0	0	0	0	0	2
	전라북도동부	16	0	6	0	0	2	0	0	0	0	0	0
소 계		54	9	84	0	22	4	0	0	0	0	0	3
전남	전라남도	19	0	18	2	1	0	0	1	0	0	0	5
	전남서부권	8	0	8	0	5	0	0	0	0	1	0	0
	전남중부권	2	1	5	0	0	0	0	0	0	0	0	0
	소 계	29	1	31	2	6	0	0	1	0	1	0	5
경북	경상북도	11	6	11	0	10	1	0	0	0	0	0	6
	경북안동	11	1	1	0	3	0	0	0	0	0	0	1
	경북포항	21	1	5	0	3	1	0	0	0	0	2	2
	구미	4	0	9	0	3	0	0	0	0	0	0	0
소 계		47	8	26	0	19	2	0	0	0	0	2	9
경남	경상남도	22	1	9	0	14	1	2	0	0	0	0	5
	경남서부	10	0	2	0	2	0	0	0	0	0	0	3
	소 계	32	1	11	0	16	1	2	0	0	0	0	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	0	4	0	8	1	0	1	0	0	0	3
	서귀포시	9	0	8	0	20	0	0	0	0	0	0	1
	소 계	10	0	12	0	28	1	0	1	0	0	0	4
계		716	93	403	11	223	20	7	11	0	6	8	75
		(6.6)	(0.9)	(3.7)	(0.1)	(2.1)	(0.2)	(0.1)	(0.1)	(0.0)	(0.1)	(0.1)	(0.7)

(계속)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소계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서울	중앙	0	0	1	0	0	0	0	0	0	0	0	1
	서울특별시 동부	0	0	162	1	1	0	0	0	0	1	3	208
	서울강서	0	2	8	1	1	0	0	0	1	9	0	46
	서울은평	0	3	7	0	4	0	0	0	0	2	0	37
	서울영등포	0	1	26	0	2	0	0	0	0	2	1	55
	서울성북	0	0	4	11	0	0	0	0	2	1	0	32
	서울마포	0	1	5	0	0	0	0	0	0	2	0	26
	서울동남권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	부산광역시	2	18	30	0	4	0	0	0	0	0	1	103
	부산동부	0	4	20	2	3	0	0	1	5	2	1	68
	소 계	2	22	50	2	7	0	0	1	5	2	2	171
대구	대구광역시	3	4	11	1	8	0	0	1	4	2	3	121
	대구남부	0	0	1	0	6	0	0	0	0	0	0	15
	소 계	3	4	12	1	14	0	0	1	4	2	3	136
인천	인천광역시	6	10	34	9	7	1	1	2	0	1	1	107
	인천북부	0	6	25	15	5	0	0	0	0	0	0	76
	인천미추홀	1	0	16	5	3	0	0	0	0	0	0	26
광주	광주광역시	7	16	75	29	15	1	1	2	0	1	1	209
	대전광역시	0	1	32	4	4	2	0	0	0	0	3	137
	울산광역시	0	1	30	5	30	1	0	0	0	4	1	109
경기	경기도	0	5	22	0	6	0	0	0	0	5	4	78
	경기북부	0	4	34	56	5	1	1	1	5	5	0	150
	경기성남	0	4	19	1	11	0	0	0	0	6	0	87
	경기고양	0	0	5	1	13	0	0	0	6	2	0	53
	경기부천	0	7	22	2	6	0	0	0	0	1	0	83
	경기화성	0	4	18	15	8	0	0	0	1	8	2	103
	경기남양주	1	0	7	2	29	0	0	0	0	10	1	68
	안산시	0	2	18	1	12	0	6	2	0	3	0	77
	경기용인	0	1	1	0	2	0	0	0	0	0	0	16
	경기시흥	0	0	8	0	0	0	0	0	0	1	0	17
	소 계	1	27	154	78	92	1	7	3	12	41	7	732
강원	강원도	0	6	4	0	4	0	0	0	0	1	0	39
	강원동부	0	3	9	1	7	1	0	0	0	2	2	55
	원주시	0	1	10	4	6	0	0	0	0	0	0	41
	소 계	0	10	23	5	17	1	0	0	0	2	2	135
충북	충청북도	0	3	47	1	6	2	0	0	2	12	2	106
	충북부부	0	8	18	3	2	0	0	3	0	0	0	61
	충북남부	0	0	0	2	6	0	0	7	8	0	1	45
	소 계	0	11	65	6	14	2	0	10	10	12	3	212
충남	충청남도	0	6	93	19	23	0	1	0	0	10	1	186
	충청남도남부	0	3	33	1	2	0	0	0	3	2	0	56
	소 계	0	9	126	20	25	0	1	0	3	12	1	242
전북	전라북도	0	5	17	1	23	0	2	2	2	0	0	137
	전라북도서부	0	0	34	29	5	0	0	0	0	2	0	137
	전라북도동부	0	1	16	0	3	0	0	0	0	2	0	46
전남	소 계	0	6	67	30	31	0	2	2	2	4	0	320
	전라남도	0	4	39	3	1	0	1	3	0	4	3	104
	전남서부권	0	2	8	0	2	1	0	0	0	8	1	44
	전남중부권	0	2	7	1	0	0	0	2	0	0	0	20
경북	소 계	0	8	54	4	3	1	1	5	0	12	4	168
	경상북도	0	1	20	2	2	0	0	0	0	2	0	72
	경북안동	0	4	3	0	14	0	1	0	1	4	0	44
	경북포항	0	3	9	3	8	1	0	0	1	0	0	60
	구미	0	16	18	2	3	2	0	1	0	1	0	59
경남	소 계	0	24	50	7	27	3	1	1	1	8	0	235
	경상남도	0	19	60	26	32	0	0	0	2	23	1	217
	경남서부	0	17	25	1	3	0	0	1	0	8	1	73
	소 계	0	36	85	27	35	0	0	1	2	31	2	29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	7	4	0	1	3	0	0	0	0	1	34
	서귀포시	0	0	2	1	2	0	0	0	0	3	0	46
	소 계	0	7	6	1	3	3	0	0	0	3	1	80
계		13	191	1,055	234	336	17	17	27	46	160	37	3,706
		(0.1)	(1.8)	(9.7)	(2.2)	(3.1)	(0.2)	(0.2)	(0.4)	(0.4)	(1.5)	(0.3)	(34.1)

신고자 유형 지역 및 기관	비신고의무자											계		
	부모	이우 친구	친인척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종사자	낯선 사람	아동 본인	의명	형제· 자매	기타			
중앙	0	0	0	0	0	0	0	0	0	0	0	1(0.0)		
서울	서울특별시	32	37	9	13	0	13	3	8	0	1	20	136 344(3.2)	
	서울특별시동부	24	34	10	20	3	55	8	6	0	0	16	176 222(2.0)	
	서울강서	30	51	4	15	0	22	0	5	0	1	11	139 176(1.6)	
	서울은평	32	41	6	17	0	26	1	1	0	0	3	127 169(1.6)	
	서울영등포	26	26	4	11	0	39	1	1	0	1	4	113 168(1.5)	
	서울성북	14	14	4	6	1	18	0	2	0	0	5	64 96(0.9)	
	서울마포	26	14	5	21	1	25	2	3	1	1	4	103 129(1.2)	
	서울동남권	0	0	0	0	0	0	0	0	0	0	0	0(0.0)	
소계		184	217	42	103	5	198	15	26	1	4	63	858 1,304(12.0)	
부산	부산광역시	45	28	7	5	0	36	3	2	2	2	2	132 235(2.2)	
	부산동부	43	20	5	11	0	24	5	2	0	2	12	124 192(1.8)	
	소계	88	48	12	16	0	60	8	4	2	4	14	256 427(3.9)	
대구	대구광역시	55	15	11	20	0	111	3	8	2	1	13	239 360(3.3)	
	대구남부	5	5	1	1	0	11	1	2	1	0	2	29 44(0.4)	
	소계	60	20	12	21	0	122	4	10	3	1	15	268 404(3.7)	
인천	인천광역시	21	48	16	25	0	78	0	1	0	2	8	199 306(2.8)	
	인천북부	32	28	2	23	0	4	4	2	0	0	7	102 178(1.6)	
	인천미추홀	3	4	1	6	0	6	0	0	0	0	6	26 52(0.5)	
광주	광주광역시	35	24	13	8	0	23	1	3	0	0	8	115 252(2.3)	
	대전	41	27	6	16	0	67	1	4	0	2	13	177 260(2.4)	
	울산	26	10	2	1	0	179	8	3	0	0	65	294 403(3.7)	
경기	경기도	46	56	14	33	0	67	0	6	0	2	9	233 311(2.9)	
	경기북부	29	5	4	14	0	57	3	2	0	2	6	122 272(2.5)	
	경기성남	49	25	12	34	0	84	1	5	0	0	10	220 307(2.8)	
	경기고양	46	20	5	26	0	48	0	8	0	0	2	155 208(1.9)	
	경기부천	45	56	17	26	3	74	4	9	0	4	3	241 324(3.0)	
	경기화성	89	27	7	39	1	73	4	6	0	0	25	271 374(3.4)	
	경기남양주	24	18	8	10	0	8	0	1	1	1	1	72 140(1.3)	
	안산시	27	18	15	38	0	144	1	2	0	0	7	252 329(3.0)	
	경기용인	9	6	0	9	0	14	2	0	1	0	4	45 61(0.6)	
	경기시흥	2	2	2	7	0	7	2	1	0	0	2	25 42(0.4)	
소계		366	233	84	236	4	576	17	40	2	9	69	1,636 2,368(21.8)	
강원	강원도	12	14	11	0	0	11	1	5	0	1	8	63 102(0.9)	
	강원동부	13	14	12	9	0	10	0	1	0	0	12	71 126(1.2)	
	원주시	15	10	6	4	0	12	0	1	0	0	11	59 100(0.9)	
	소계	40	38	29	13	0	33	1	7	0	1	31	193 328(3.0)	
충북	충청북도	33	30	8	18	0	42	1	2	0	1	14	149 255(2.3)	
	충북북부	9	12	2	4	0	102	0	2	0	0	7	138 199(1.8)	
	충북남부	13	1	2	12	0	50	0	0	0	0	1	79 124(1.1)	
소계		55	43	12	34	0	194	1	4	0	1	22	366 578(5.3)	
충남	충청남도	71	39	26	16	0	44	2	5	0	2	17	222 408(3.8)	
	충청남도남부	16	12	2	4	0	22	3	0	0	0	7	66 122(1.1)	
	소계	87	51	28	20	0	66	5	5	0	2	24	288 530(4.9)	
전북	전라북도	30	17	15	18	1	46	8	3	1	2	16	157 294(2.7)	
	전라북도서부	39	85	16	18	0	79	12	8	1	3	64	325 462(4.3)	
	전라북도동부	9	9	0	15	0	41	0	1	0	0	5	80 126(1.2)	
	소계	78	111	31	51	1	166	20	12	2	5	85	562 882(8.1)	
전남	전라남도	33	10	18	10	2	28	3	4	1	3	21	133 237(2.2)	
	전남서부	33	14	10	13	9	31	0	5	0	1	1	117 161(1.5)	
	전남중부권	22	2	8	21	1	67	1	2	0	1	9	134 154(1.4)	
소계		88	26	36	44	12	126	4	11	1	5	31	384 552(5.1)	
경북	경상북도	33	7	9	12	0	55	4	3	0	3	3	129 201(1.9)	
	경북안동	22	8	4	6	2	38	1	5	0	3	6	95 139(1.3)	
	경북포항	27	26	15	12	2	45	2	3	0	1	15	148 208(1.9)	
	구미	13	18	3	6	0	24	2	6	0	0	5	77 136(1.3)	
소계		95	59	31	36	4	162	9	17	0	7	29	449 684(6.3)	
경남	경상남도	65	43	28	29	0	475	2	18	3	2	2	667 884(8.1)	
	경남서부	24	12	7	14	1	13	3	2	0	0	48	124 197(1.8)	
	소계	89	55	35	43	1	488	5	20	3	2	50	791 1,081(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2	11	2	21	0	47	0	1	0	0	0	114 148(1.4)	
	서귀포시	6	12	3	7	1	37	0	1	0	0	6	73 119(1.1)	
	소계	38	23	5	28	1	84	0	2	0	0	6	187 267(2.5)	
계		1,426	(13.1)	1,065	397	724	28	2,632	103	171	14	45	546	7,151 (65.9) 10,857(100.0)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경로는 전화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통한 신고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넷 접수, 직접 기관에 내방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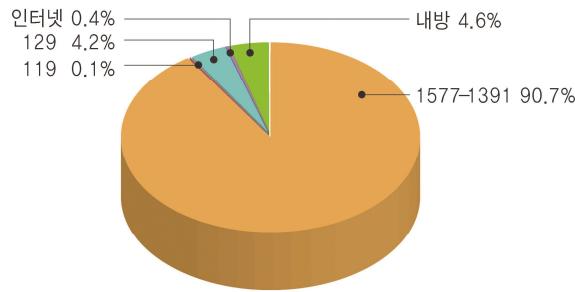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577-1391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90.7%에 해당하는 11,859건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가 1577-1391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기관에 내방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597건(4.6%),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549건(4.2%), 인터넷과 119의 경우는 각각 53건(0.4%), 18건(0.1%)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건, %)

1577-1391	119	129	인터넷	내방	계
11,859 (90.7)	18 (0.1)	549 (4.2)	53 (0.4)	597 (4.6)	13,076 (100.0)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표 2-8>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 경로	1577-1391	119	129	인터넷	내 방	계
중 앙		5(100.0)	0(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서울	서울특별시	426(68.7)	1(0.2)	14 (2.3)	29 (4.7)	150 (24.2)	620 (100.0)	
	서울특별시동부	299(87.9)	0(0.0)	34 (10.0)	0 (0.0)	7 (2.1)	340 (100.0)	
	서울강서	187(94.0)	0(0.0)	9 (4.5)	0 (0.0)	3 (1.5)	199 (100.0)	
	서울은평	216(92.7)	0(0.0)	14 (6.0)	1 (0.4)	2 (0.9)	233 (100.0)	
	서울영등포	183(95.8)	0(0.0)	4 (2.1)	0 (0.0)	4 (2.1)	191 (100.0)	
	서울성북	138(94.5)	0(0.0)	6 (4.1)	1 (0.7)	1 (0.7)	146 (100.0)	
	서울마포	175(97.8)	0(0.0)	3 (1.7)	0 (0.0)	1 (0.6)	179 (100.0)	
	서울동남권	0(0.0)	0(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624(85.1)	1(0.1)	84 (4.4)	31 (1.6)	168 (8.8)	1,908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29(86.4)	0(0.0)	22 (8.3)	5 (1.9)	9 (3.4)	265 (100.0)	
	부산동부	212(91.4)	0(0.0)	16 (6.9)	0 (0.0)	4 (1.7)	232 (100.0)	
	소 계	441(88.7)	0(0.0)	38 (7.6)	5 (1.0)	13 (2.6)	497 (100.0)	
대구	대구광역시	343(86.4)	0(0.0)	16 (4.0)	0 (0.0)	38 (9.6)	397 (100.0)	
	대구남부	49(87.5)	0(0.0)	1 (1.8)	0 (0.0)	6 (10.7)	56 (100.0)	
	소 계	392(86.5)	0(0.0)	17 (3.8)	0 (0.0)	44 (9.7)	453 (100.0)	
인천	인천광역시	437(92.8)	0(0.0)	13 (2.8)	0 (0.0)	21 (4.5)	471 (100.0)	
	인천북부	164(82.8)	4(2.0)	18 (9.1)	0 (0.0)	12 (6.1)	198 (100.0)	
	인천미추홀	54(78.3)	1(1.4)	4 (5.8)	8 (11.6)	2 (2.9)	69 (100.0)	
	소 계	655(88.8)	5(0.7)	35 (4.7)	8 (1.1)	35 (4.7)	738 (100.0)	
광주	광주광역시	257(92.1)	0(0.0)	14 (5.0)	0 (0.0)	8 (2.9)	279 (100.0)	
	대전광역시	288(92.0)	0(0.0)	8 (2.6)	1 (0.3)	16 (5.1)	313 (100.0)	
울산	울산광역시	458(90.9)	2(0.4)	10 (2.0)	2 (0.4)	32 (6.3)	504 (100.0)	
경기	경기도	334(89.8)	0(0.0)	26 (7.0)	1 (0.3)	11 (3.0)	372 (100.0)	
	경기북부	292(93.6)	0(0.0)	4 (1.3)	0 (0.0)	16 (5.1)	312 (100.0)	
	경기성남	350(96.2)	0(0.0)	10 (2.7)	0 (0.0)	4 (1.1)	364 (100.0)	
	경기고양	253(93.7)	0(0.0)	15 (5.6)	0 (0.0)	2 (0.7)	270 (100.0)	
	경기부천	312(93.4)	0(0.0)	15 (4.5)	0 (0.0)	7 (2.1)	334 (100.0)	
	경기화성	395(92.3)	0(0.0)	21 (4.9)	1 (0.2)	11 (2.6)	428 (100.0)	
	경기남양주	170(92.9)	1(0.5)	7 (3.8)	0 (0.0)	5 (2.7)	183 (100.0)	
	안산시	334(96.5)	0(0.0)	5 (1.4)	0 (0.0)	7 (2.0)	346 (100.0)	
	경기용인	74(96.1)	0(0.0)	3 (3.9)	0 (0.0)	0 (0.0)	77 (100.0)	
	경기시흥	43(100.0)	0(0.0)	0 (0.0)	0 (0.0)	0 (0.0)	43 (100.0)	
	소 계	2,557(93.7)	1(0.0)	106 (3.9)	2 (0.1)	63 (2.3)	2,729 (100.0)	
강원	강원도	116(94.3)	3(2.4)	4 (3.3)	0 (0.0)	0 (0.0)	123 (100.0)	
	강원동부	147(93.0)	0(0.0)	5 (3.2)	0 (0.0)	6 (3.8)	158 (100.0)	
	원주시	101(91.0)	1(0.9)	0 (0.0)	0 (0.0)	9 (8.1)	111 (100.0)	
	소 계	364(92.9)	4(1.0)	9 (2.3)	0 (0.0)	15 (3.8)	392 (100.0)	
충북	충청북도	308(94.2)	0(0.0)	14 (4.3)	0 (0.0)	5 (1.5)	327 (100.0)	
	충북북부	217(92.3)	0(0.0)	3 (1.3)	2 (0.9)	13 (5.5)	235 (100.0)	
	충북남부	145(96.7)	0(0.0)	0 (0.0)	0 (0.0)	5 (3.3)	150 (100.0)	
	소 계	670(94.1)	0(0.0)	17 (2.4)	2 (0.3)	23 (3.2)	712 (100.0)	
충남	충청남도	400(94.6)	2(0.5)	15 (3.5)	0 (0.0)	6 (1.4)	423 (100.0)	
	충청남도남부	154(94.5)	0(0.0)	1 (0.6)	0 (0.0)	8 (4.9)	163 (100.0)	
	소 계	554(94.5)	2(0.3)	16 (2.7)	0 (0.0)	14 (2.4)	586 (100.0)	
	전라북도	314(94.9)	0(0.0)	10 (3.0)	0 (0.0)	7 (2.1)	331 (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338(70.7)	0(0.0)	112 (23.4)	0 (0.0)	28 (5.9)	478 (100.0)	
	전라북도동부	134(85.9)	0(0.0)	0 (0.0)	0 (0.0)	22 (14.1)	156 (100.0)	
	소 계	786(81.5)	0(0.0)	122 (12.6)	0 (0.0)	57 (5.9)	965 (100.0)	
	전라남도	255(93.1)	0(0.0)	8 (2.9)	0 (0.0)	11 (4.0)	274 (100.0)	
전남	전남서부	156(86.7)	0(0.0)	4 (2.2)	0 (0.0)	20 (11.1)	180 (100.0)	
	전남중부권	178(95.2)	0(0.0)	2 (1.1)	0 (0.0)	7 (3.7)	187 (100.0)	
	소 계	589(91.9)	0(0.0)	14 (2.2)	0 (0.0)	38 (5.9)	641 (100.0)	
	경상북도	230(95.4)	0(0.0)	7 (2.9)	0 (0.0)	4 (1.7)	241 (100.0)	
경북	경북안동	144(91.1)	0(0.0)	1 (0.6)	0 (0.0)	13 (8.2)	158 (100.0)	
	경북포항	241(94.1)	2(0.8)	5 (2.0)	0 (0.0)	8 (3.1)	256 (100.0)	
	구미	196(94.7)	0(0.0)	6 (2.9)	0 (0.0)	5 (2.4)	207 (100.0)	
	소 계	811(94.1)	2(0.2)	19 (2.2)	0 (0.0)	30 (3.5)	862 (100.0)	
경남	경상남도	852(94.2)	0(0.0)	32 (3.5)	0 (0.0)	20 (2.2)	904 (100.0)	
	경남서부	199(93.0)	0(0.0)	3 (1.4)	2 (0.9)	10 (4.7)	214 (100.0)	
	소 계	1,051(94.0)	0(0.0)	35 (3.1)	2 (0.2)	30 (2.7)	1,118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71(95.5)	1(0.6)	4 (2.2)	0 (0.0)	3 (1.7)	179 (100.0)	
	서귀포시	186(95.4)	0(0.0)	1 (0.5)	0 (0.0)	8 (4.1)	195 (100.0)	
	소 계	357(95.5)	1(0.3)	5 (1.3)	0 (0.0)	11 (2.9)	374 (100.0)	
계		11,859(90.7)	18(0.1)	549 (4.2)	53 (0.4)	597 (4.6)	13,076 (100.0)	

3

제3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2. 사례판정

3. 피해아동 발견율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의심아동 및 학대행위의심자 등 관련인들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상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1회 이상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10,857건을 대상으로 총 21,323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10,857	21,323	2.0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표 3-2>은 2013년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용인,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각각 2.8회, 2.7회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기관별 현장조사*

(단위: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1	1**	
서 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344	470	1.4
	서울특별시동부	222	658	3.0
	서울강서	176	460	2.6
	서울은평	169	316	1.9
	서울영등포	168	383	2.3
	서울성북	96	222	2.3
	서울마포	129	249	1.9
부 산	서울동남권	0	0	0.0
	소 계	1,304	2,758	2.1
	부산광역시	235	311	1.3
	부산동부	192	404	2.1
대 구	소 계	427	715	1.7
	대구광역시	360	592	1.6
	대구남부	44	114	2.6
인 천	소 계	404	706	1.7
	인천광역시	306	708	2.3
	인천북부	178	392	2.2
	인천미추홀	52	113	2.2
광 주	소 계	536	1,213	2.3
	광주광역시	252	558	2.2
	대전광역시	260	497	1.9
울 산	울산광역시	403	630	1.6
	경기도	311	546	1.8
	경기북부	272	572	2.1
경 기	경기성남	307	640	2.1
	경기고양	208	514	2.5
	경기부천	324	624	1.9
	경기화성	374	826	2.2
	경기남양주	140	320	2.3
	안산시	329	615	1.9
	경기용인	61	172	2.8
	경기시흥	42	115	2.7
강 원	소 계	2,368	4,944	2.1
	강원도	102	165	1.6
	강원동부	126	259	2.1
	원주시	100	188	1.9
충 북	소 계	328	612	1.9
	충청북도	255	432	1.7
	충북북부	199	525	2.6
	충북남부	124	235	1.9
충 남	소 계	578	1,192	2.1
	충청남도	408	819	2.0
	충청남도남부	122	200	1.6
전 북	소 계	530	1,019	1.9
	전라북도	294	496	1.7
	전라북도서부	462	597	1.3
	전라북도동부	126	216	1.7
전 남	소 계	882	1,309	1.5
	전라남도	237	448	1.9
	전남서부권	161	307	1.9
	전남중부권	154	387	2.5
경 북	소 계	552	1,142	2.1
	경상북도	201	344	1.7
	경북인동	139	286	2.1
	경북포항	208	450	2.2
경 남	구 미	136	253	1.9
	소 계	684	1,333	1.9
	경상남도	884	1,839	2.1
제 주	경남서부	197	375	1.9
	소 계	1,081	2,214	2.0
	제주특별자치도	148	242	1.6
제 주	서귀포시	119	238	2.0
	소 계	267	480	1.8
계		10,857	21,323	2.0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구에 한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짐.

** 상기 사례는 해외발생사례로 발생국가 내에서 가정위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가족구성원 파악 후 연계 외 제공서비스가 없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하였음.

2

사례판정



1) 사례판정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정하게 되는데,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 내 자체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를 걸쳐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아동학대사례의 세부적인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빙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잠재위험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의 사례를 말하며, 잠재위험사례를 관리 할 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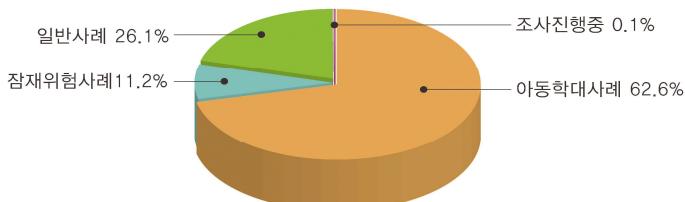
<표 3-3>는 2013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0,857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총 6,7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62.6%를 차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는 각각 1,217건(11.2%), 2,829건(26.1%), 15건(0.1%)으로 나타났다.

<표 3-3> 사례판정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6,796(62.6)	1,217(11.2)	2,829(26.1)	15(0.1)	10,857(100.0)

* 조사진행중사례란 2014년 2월 28일 기준 사례판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사례임.



<그림 3-1> 사례판정 결과

* 아동학대사례 6,796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6,303명임

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의 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정 비율을 보면 36.5%에서 92.1%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판정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100.0)	0 (0.0)	0 (0.0)	0(0.0)	1 (100.0)
서 울	서울특별시	225 (65.4)	73 (21.2)	46 (13.4)	0(0.0)	344 (100.0)
	서울특별시동부	130 (58.6)	53 (23.9)	39 (17.6)	0(0.0)	222 (100.0)
	서울강서	102 (58.0)	42 (23.9)	32 (18.2)	0(0.0)	176 (100.0)
	서울은평	105 (62.1)	8 (4.7)	56 (33.1)	0(0.0)	169 (100.0)
	서울영등포	118 (70.2)	13 (7.7)	36 (21.4)	1(0.6)	168 (100.0)
	서울성북	52 (54.2)	12 (12.5)	32 (33.3)	0(0.0)	96 (100.0)
	서울마포	83 (64.3)	18 (14.0)	28 (21.7)	0(0.0)	129 (100.0)
	서울동남권	0 (0.0)	0 (0.0)	0 (0.0)	0(0.0)	0 (0.0)
소 계		815 (62.5)	219 (16.8)	269 (20.6)	1(0.1)	1,304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156 (66.4)	21 (8.9)	58 (24.7)	0(0.0)	235 (100.0)
	부산동부	139 (72.4)	32 (16.7)	21 (10.9)	0(0.0)	192 (100.0)
	소 계	295 (69.1)	53 (12.4)	79 (18.5)	0(0.0)	427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158 (43.9)	25 (6.9)	177 (49.2)	0(0.0)	360 (100.0)
	대구남부	33 (75.0)	0 (0.0)	11 (25.0)	0(0.0)	44 (100.0)
	소 계	191 (47.3)	25 (6.2)	188 (46.5)	0(0.0)	404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212 (69.3)	24 (7.8)	70 (22.9)	0(0.0)	306 (100.0)
	인천북부	94 (52.8)	1 (0.6)	83 (46.6)	0(0.0)	178 (100.0)
	인천미추홀	34 (65.4)	5 (9.6)	13 (25.0)	0(0.0)	52 (100.0)
소 계		340 (63.4)	30 (5.6)	166 (31.0)	0(0.0)	536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18 (46.8)	26 (10.3)	108 (42.9)	0(0.0)	252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08 (80.0)	27 (10.4)	25 (9.6)	0(0.0)	260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147 (36.5)	89 (22.1)	155 (38.5)	12(3.0)	403 (100.0)
경 기	경기도	182 (58.5)	60 (19.3)	69 (22.2)	0(0.0)	311 (100.0)
	경기북부	144 (52.9)	18 (6.6)	110 (40.4)	0(0.0)	272 (100.0)
	경기성남	185 (60.3)	71 (23.1)	51 (16.6)	0(0.0)	307 (100.0)
	경기고양	105 (50.5)	17 (8.2)	86 (41.3)	0(0.0)	208 (100.0)
	경기부천	246 (75.9)	21 (6.5)	56 (17.3)	1(0.3)	324 (100.0)
	경기화성	243 (65.0)	75 (20.1)	56 (15.0)	0(0.0)	374 (100.0)
	경기남양주	105 (75.0)	9 (6.4)	26 (18.6)	0(0.0)	140 (100.0)
	안산시	241 (73.3)	18 (5.5)	70 (21.3)	0(0.0)	329 (100.0)
	경기용인	37 (60.7)	18 (29.5)	6 (9.8)	0(0.0)	61 (100.0)
	경기시흥	28 (66.7)	13 (31.0)	1 (2.4)	0(0.0)	42 (100.0)
소 계		1,516 (64.0)	320 (13.5)	531 (22.4)	1(0.0)	2,368 (100.0)
강 원	강원도	75 (73.5)	12 (11.8)	15 (14.7)	0(0.0)	102 (100.0)
	강원동부	81 (64.3)	8 (6.3)	37 (29.4)	0(0.0)	126 (100.0)
	원주시	80 (80.0)	8 (8.0)	12 (12.0)	0(0.0)	100 (100.0)
소 계		236 (72.0)	28 (8.5)	64 (19.5)	0(0.0)	328 (100.0)
충 북	충청북도	199 (78.0)	12 (4.7)	43 (16.9)	1(0.4)	255 (100.0)
	충북북부	89 (44.7)	2 (1.0)	108 (54.3)	0(0.0)	199 (100.0)
	충북남부	99 (79.8)	1 (0.8)	24 (19.4)	0(0.0)	124 (100.0)
소 계		387 (67.0)	15 (2.6)	175 (30.3)	1(0.2)	578 (100.0)
충 남	충청남도	269 (65.9)	38 (9.3)	101 (24.8)	0(0.0)	408 (100.0)
	충청남도남부	78 (63.9)	6 (4.9)	38 (31.1)	0(0.0)	122 (100.0)
	소 계	347 (65.5)	44 (8.3)	139 (26.2)	0(0.0)	530 (100.0)
전 북	전라북도	188 (63.9)	49 (16.7)	57 (19.4)	0(0.0)	294 (100.0)
	전라북도서부	337 (72.9)	91 (19.7)	34 (7.4)	0(0.0)	462 (100.0)
	전라북도동부	116 (92.1)	9 (7.1)	1 (0.8)	0(0.0)	126 (100.0)
소 계		641 (72.7)	149 (16.9)	92 (10.4)	0(0.0)	882 (100.0)

전 남	전라남도	141 (59.5)	37 (15.6)	59 (24.9)	0(0.0)	237 (100.0)
	전남서부권	112 (69.6)	32 (19.9)	17 (10.6)	0(0.0)	161 (100.0)
	전남중부권	119 (77.3)	4 (2.6)	31 (20.1)	0(0.0)	154 (100.0)
	소 계	372 (67.4)	73 (13.2)	107 (19.4)	0(0.0)	552 (100.0)
경 북	경상북도	115 (57.2)	36 (17.9)	50 (24.9)	0(0.0)	201 (100.0)
	경북안동	115 (82.7)	14 (10.1)	10 (7.2)	0(0.0)	139 (100.0)
	경북포항	156 (75.0)	30 (14.4)	22 (10.6)	0(0.0)	208 (100.0)
	구미	84 (61.8)	14 (10.3)	38 (27.9)	0(0.0)	136 (100.0)
경 남	소 계	470 (68.7)	94 (13.7)	120 (17.5)	0(0.0)	684 (100.0)
제 주	경상남도	446 (50.5)	0 (0.0)	438 (49.5)	0(0.0)	884 (100.0)
	경남서부	129 (65.5)	12 (6.1)	56 (28.4)	0(0.0)	197 (100.0)
	소 계	575 (53.2)	12 (1.1)	494 (45.7)	0(0.0)	1,081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71 (48.0)	4 (2.7)	73 (49.3)	0(0.0)	148 (100.0)
	서귀포시	66 (55.5)	9 (7.6)	44 (37.0)	0(0.0)	119 (100.0)
	소 계	137 (51.3)	13 (4.9)	117 (43.8)	0(0.0)	267 (100.0)
	(비율)	6,796 (62.6)	1,217 (11.2)	2,829 (26.1)	15(0.1)	10,857 (100.0)

3) 피해아동 보호 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아동보호로부터전문기관이 학대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실제 피해 아동 수는 6,30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6,796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아동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5> 피해아동 보호 수

(단위: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6,796	6,303

3

피해아동 발견율 *



<표 3-6>에는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3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 (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 피해아동 발견율 :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까지는 피해아동 보호율로 명시되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특성 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는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아동 보호율' 대신 '피해아동 발견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용어를 변경하였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0.73%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0.37%에서 1.88%의 수준이었다. 전라북도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충청북도가 1.31%, 전라남도 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광역시가 0.42%, 광주광역시가 0.37%로 낮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간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수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67로 도출되었다. 이는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 인구를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6>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명, 개소,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616,440	8	202,055	815	0.50
부산광역시	551,194	2	275,597	295	0.54
대구광역시	459,610	2	229,805	191	0.42
인천광역시	536,129	3	178,710	340	0.63
광주광역시	321,767	1	321,767	118	0.37
대전광역시	309,364	1	309,364	208	0.67
울산광역시	231,780	1	231,780	147	0.63
경 기 도	2,457,376	10	245,738	1,516	0.62
강 원 도	269,477	3	89,826	236	0.88
충 청 북 도	295,644	3	98,548	387	1.31
충 청 남 도	402,947	2	201,474	347	0.86
전 라 북 도	340,886	3	113,629	641	1.88
전 라 남 도	323,936	3	107,979	372	1.15
경 상 북 도	454,007	4	113,502	470	1.04
경 상 남 도	639,730	2	319,865	575	0.90
제주특별자치도	121,607	2	60,804	137	1.13
계	9,331,894	50	186,638	6,795	0.73

* 통계청(www.kosis.kr), 2013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사례 판정이 된 해외발생아동학대사례 1건을 제외한 아동학대사례 건수 6,795건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음.

4

제4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5. 서비스 제공 현황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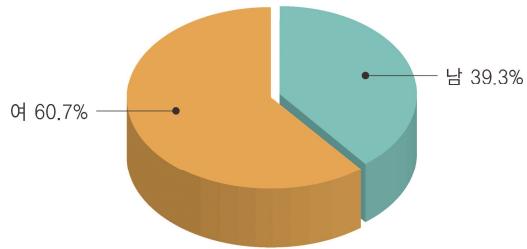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성별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2,674건(39.3%), 여아가 4,122건(60.7%)으로 여아의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0년을 제외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비교적 유사했으나 2012년과 2013년은 여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남	여	계
2,674 (39.3)	4,122 (60.7)	6,796 (10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표 4-2>은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교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8%,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학교의 교사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대적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위생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학대의심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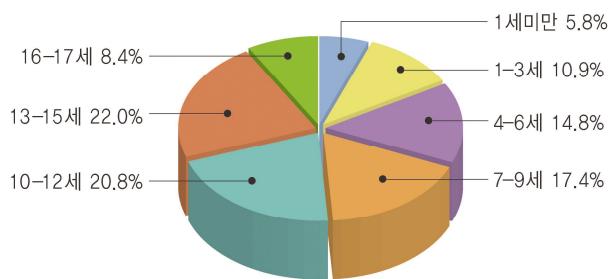
이와 달리 학령기 이전 아동들의 경우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어 학대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학대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후유증은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영유아기는 아동이 부모와의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발달 상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및 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방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전 예방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394(5.8)
1세	227(3.3)
2세	249(3.7)
3세	263(3.9)
소계	739(10.9)
4세	322(4.7)
5세	346(5.1)
6세	339(5.0)
소계	1,007(14.8)
7세	388(5.7)
8세	416(6.1)
9세	376(5.5)
소계	1,180(17.4)
10세	399(5.9)
11세	481(7.1)
12세	534(7.9)
소계	1,414(20.8)
13세	561(8.3)
14세	488(7.2)
15세	443(6.5)
소계	1,492(22.0)
16세	343(5.0)
17세	227(3.3)
소계	570(8.4)
계	6,796(100.0)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은 38%인 2,581건이었으며,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3,427건(50.4%),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404건(5.9%), 46건(0.7%)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2,495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6.7%가 한부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에 집계되었던 39.8%에 비해 다소 감소된 수치이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저연령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내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가정위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체의 21건(0.3%), 입양된 경우는 27건(0.4%), 마지막으로 시설에 보호된 아동은 356건(5.2%)이었다.

특히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2년의 127건(2.0%)에 비해 약 1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모와의 격리를 경험한 이후 대리양육의 환경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로 인한 후유증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해 돌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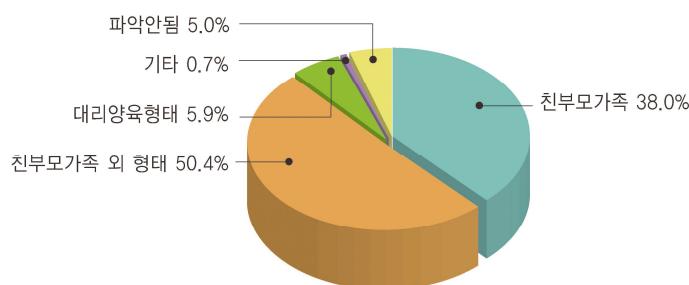
* 통계청(2013).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 여성가족부(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2,581 (38.0)	1,360 (20.0)	981 (14.4)	154 (2.3)	473 (7.0)	238 (3.5)	201 (3.0)	20 (0.3)	3,427 (50.4)	21 (0.3)	27 (0.4)	356 (5.2)	404 (5.9)	46 (0.7)	338 (5.0)	6,796 (100.0)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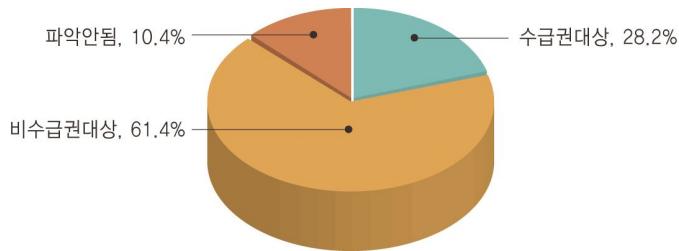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전체 피해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아동의 경우 1,915건(28.2%)이었으며,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4,173건(61.4%)이었다.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0.4%인 708건에 해당하였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단위: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915(28.2)
비수급권 대상	4,173(61.4)
파악안됨	708(10.4)
계	6,796(100.0)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표 4-5>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35.5%에 해당하는 5,5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으로 4,914건(31.6%)이었으며,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2,465건(15.9%), 발달신체건강이 1,855건(11.9%), 장애 539건(3.5%), 기타 247건(1.6%)이었다. 다음은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732건(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학습문제 628건(4.0%), 가출과 학교 부적응이 각각 524건(3.4%), 531건(3.4%)으로 나타났으며, 거짓말은 559건(3.6%)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022건(6.6%)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주의산만 735건(4.7%), 낮은 자아존중감 602건(3.9%), 애착문제 515건(3.3%), 우울 461건(3.0%)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달 및 신체건강 측면에서는 위생문제를 가진 아동이 696건(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밖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238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각각 69건(0.4%), 232건(1.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별다른 특성이 발견되지 않은 피해아동은 2,465건(15.9%)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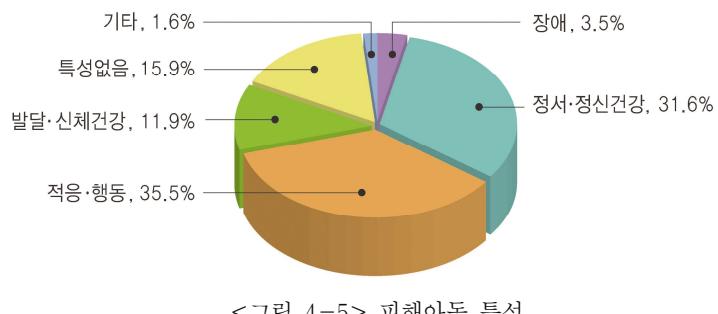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 유발요인으로 보는 경우 자칫 피해아동에 대하여 낙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볼 때에는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 및 후유증으로 보는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파악 및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 성		건수 (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69(0.4)
	정신적 장애	232(1.5)
	장애의심	238(1.5)
	소계	539(3.5)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735(4.7)
	과잉행동	364(2.3)
	인터넷(게임)중독	206(1.3)
	불안	1,022(6.6)
	애착문제	515(3.3)
	무력감	366(2.4)
	우울	461(3.0)
	낮은 자아존중감	602(3.9)
	성격 및 기질 문제	385(2.5)
	탐식 및 결식	258(1.7)
	소계	4,914(31.6)
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732(4.7)
	거짓말	559(3.6)
	도벽	388(2.5)
	가출	524(3.4)
	약물·흡연·음주	433(2.8)
	성문제	169(1.1)
	학교 부적응	531(3.4)
	잦은 결석	451(2.9)
	늦은 귀가	388(2.5)
	학습문제	628(4.0)
	폭력행동	204(1.3)
	비행·집단활동	108(0.7)
	불건전한 또래 관계	216(1.4)
	대인관계 기피	182(1.2)
	소계	5,513(35.5)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88(1.2)
	언어문제	408(2.6)
	영양결핍	155(1.0)
	대소변문제	143(0.9)
	위생문제	696(4.5)
	턱(음성, 신체, 뚜렷)	37(0.2)
	잦은 병치료	88(0.6)
	주요병력	140(0.9)
	소계	1,855(11.9)
	특성없음	2,465(15.9)
기타	기타	247(1.6)
	계	15,533(100.0)

* 중복포함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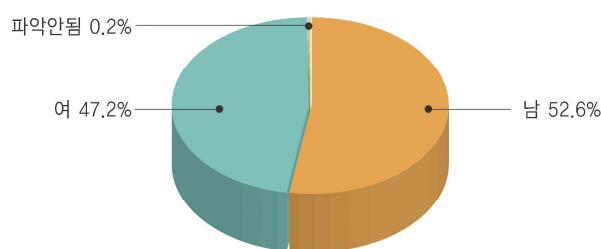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3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2.6%에 해당하는 3,576건이었으며, 여성은 3,207건(47.2%), 그리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의 0.2%에 해당하였다(<표 4-6> 참조).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남	여	파악 안 됨	계
3,576(52.6)	3,207(47.2)	13(0.2)	6,796(100.0)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의 40.3%인 2,737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가 총 2,144건으로 31.5%이었다. 앞서 피해아동의 연령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았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적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가 37명(0.5%)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학생미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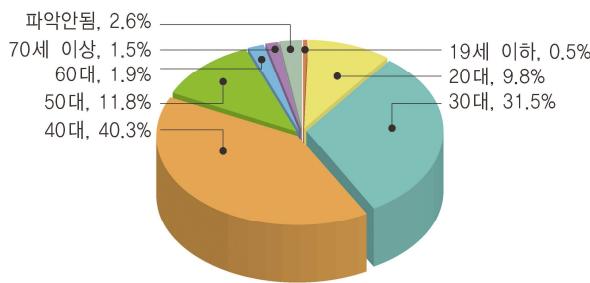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경우 부모로서의 준비 또는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경험하며,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정서적인 스트레스, 경제적 지원 부족 등의 위험요인 때문에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는 보통 성인인 학대행위자와는 차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 19세 이하 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적절한 양육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37(0.5)
20~29세	664(9.8)
30~39세	2,144(31.5)
40~49세	2,737(40.3)
50~59세	803(11.8)
60~69세	132(1.9)
70세 이상	99(1.5)
파악안됨	180(2.6)
계	6,796(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 안 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3년 아동학대사례인 6,796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454건(80.3%)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중 친부에 의한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사례가 2,790건(41.1%), 친모는 2,383건(35.1%)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 조항이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미한 학대라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의무화가 필수적으로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에 의해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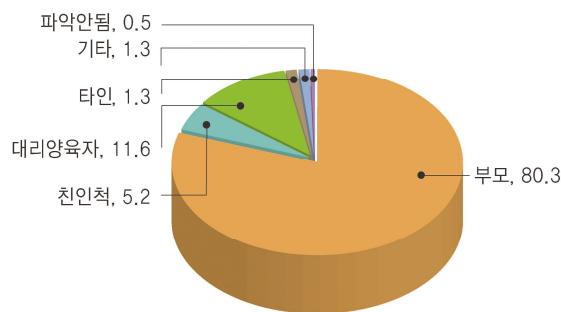
대리양육자의 경우 786건(11.6%), 친인척의 경우는 351건(5.2%), 기타와 파악 안됨은 각각 85건(1.3%), 35건(0.5%)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 계		건 수 (비 율)
부모	친부	2,790(41.1)
	친모	2,383(35.1)
	계부	108(1.6)
	계모	144(2.1)
	양부	14(0.2)
	양모	15(0.2)
	소계	5,454(80.3)
친인척	친조부	58(0.9)
	친조모	79(1.2)
	외조부	8(0.1)
	외조모	30(0.4)
	친인척	150(2.2)
	형제, 자매	26(0.4)
	소계	351(5.2)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86(1.3)
	유치원 종사자	53(0.8)
	교원	28(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1(0.2)
	보육 교직원	202(3.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62(5.3)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27(0.4)
	위탁부	2(0.0)
	위탁모	11(0.2)
	베이비시터	4(0.1)
타인	소계	786(11.6)
	이웃	51(0.8)
	낯선 사람	34(0.5)
	소계	85(1.3)
기타	기타	85(1.3)
	파악안됨	35(0.5)
계		6,796(100.0)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양육을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화·한유마·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화·한유마·강희경(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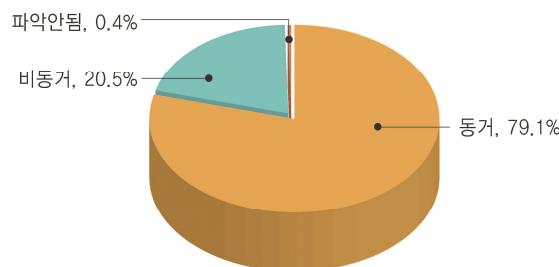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5,375건(79.1%)이었으며,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1,396건(20.5%),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25건(0.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학대는 지속성과 폭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5,375 (79.1)	1,396 (20.5)	25 (0.4)	6,796 (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4-10>은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2013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될 당시 노동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인 학대행위자는 2,404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단순노무직 1,05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종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에 의해 발생된 아동학대는 전체의 약 18.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직종은 위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종들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즉, 아동 학대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건, %)

직업유형	건 수 (비율)
관리직	145(2.1)
전문직	592(8.7)
기술공 및 준전문직	380(5.6)
사무직	168(2.5)
서비스 및 판매직	987(14.5)
농어축산업	155(2.3)
기능직	99(1.5)
기계장치조작원	175(2.6)
단순노무직	1,052(15.5)
군인	18(0.3)
무직	2,404(35.4)
파악안됨	621(9.1)
계	6,79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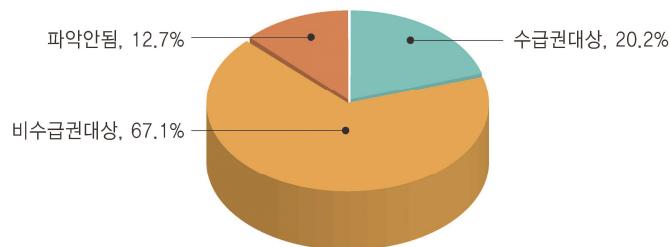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여부의 경우, 전체 6,796건 중 수급 대상자는 20.2%인 1,373건, 비수급 대상자는 4,563건(67.1%)으로 수급을 받지 않은 학대행위자가 약 3.3배 정도 많았다. 여기서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2.7%인 86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학대행위자의 경제적인 상황은 학대의 다양한 위험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급권 대상자가 학대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건, %)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1,373(20.2)
비수급권 대상	4,563(67.1)
파악 안 됨	860(12.7)
계	6,796(100.0)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은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4-12> 참조).

학대행위자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7,099건(32.6%)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을 가진 경우는 4,883건(22.4%)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가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가지는 경우도 2,049건(9.4%)이었다.

실제로 아동을 학대하는 상당수의 부모들은 적절한 자녀양육에 대한 방법 및 지식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학대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학대를 하기 쉽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사회 및 경제적 스트레스, 고립뿐 아니라 부부폭력 등 가족관계의 문제는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부모교육을 통해 상당한 학대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문제, 그리고 중독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각각 1,543건(7.1%), 1,275건(5.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병리적 특성은 아동과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대행위자에게 이러한 특성을 발견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특성	건 수 (비율)
신체적 장애	208(1.0)
정신적 장애	179(0.8)
장애의심	278(1.3)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7,099(32.6)
중독문제	1,275(5.9)
질환문제	261(1.2)
성격 및 기질문제	1,543(7.1)
위생문제	415(1.9)
나태 및 무기력	324(1.5)
난독해, 난자문	28(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22.4)
어릴 적 학대경험	393(1.8)
폭력성	939(4.3)
전파력	136(0.6)
성문제	212(1.0)
원치 않는 아동	229(1.1)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9.4)
종교문제	57(0.3)
특성 없음	748(3.4)
파악 안 됨	532(2.4)
계	21,788(100.0)

* 중복포함

*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5,564건(81.9%)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정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 중 5,409건(79.6%)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155건(2.3%)은 학대행위자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요 학대 발생장소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이었는데, 각각 232건(3.4%), 379건(5.6%), 15건(0.2%)이었다. 이는 <표 4-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7%를 차지한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신고의무자 교육 보다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5,409(79.6)
	학대행위자 가정 내	155(2.3)
소계		5,564(81.9)
집근처 또는 길가		83(1.2)
친척집		53(0.8)
이웃집		14(0.2)
어린이집		232(3.4)
유치원		36(0.5)
학교		40(0.6)
학원		13(0.2)
병원		51(0.8)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379(5.6)
	기타복지시설	15(0.2)
소계		394(5.8)
숙박업소		37(0.5)
종교시설		14(0.2)
기타		253(3.7)
파악 안 됨		12(0.2)
계		6,796(100.0)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2,629건(38.7%)로 집계되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사례는 1,049건(15.4%), 일주일의 한 번인 경우는 747건(11.0%)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사례 중의 65.1%로 나타난 만큼 아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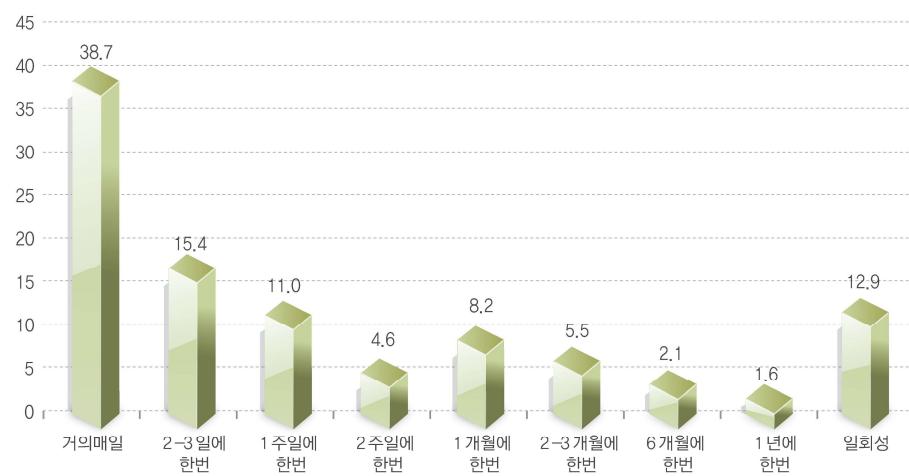
일회적인 학대뿐 아니라 만성적인 학대 또한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위험요인수준이 감소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후한 고위험군의 경우, 위험요인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이 고위험군 아동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빈도	건 수 (비율)
거의 매일	2,629(38.7)
2~3일에 한 번	1,049(15.4)
일주일에 한 번	747(11.0)
2주일에 한 번	311(4.6)
1개월에 한 번	554(8.2)
2~3개월에 한 번	375(5.5)
6개월에 한 번	146(2.1)
1년에 한 번	111(1.6)
일회성	874(12.9)
계	6,796(100.0)

(단위: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3

아동학대사례 유형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이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정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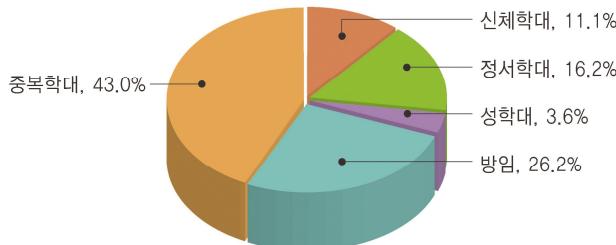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의 유형분포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4-15> 참고).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2,922건(43.0%)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방임 1,778건(26.2%), 정서학대 1,101건(16.2%), 신체학대 753건(11.1%), 성학대 24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단일한 학대유형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유형	건 수 (비 율)
신체학대	753(11.1)
정서학대	1,101(16.2)
성학대	242(3.6)
방임	1,778(26.2)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신체학대·성학대	21(0.3)
신체학대·방임	153(2.3)
정서학대·성학대	29(0.4)
정서학대·방임	471(6.9)
성학대·방임	6(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소계	2,922(43.0)
계	6,796(100.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표 4-16>은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10,231건이었으며, 이 중 정서학대가 3,843건(3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신체학대와 방임은 각각 3,160건(30.9%), 2,848건(27.8%)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성학대의 경우는 380건(3.7%)으로 아동 학대 유형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중복학대를 별도항목으로 분류할 때와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살펴볼 때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신체학대 등 다른 학대유형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며, 사례의 위급성이 떨어져 집중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서학대와 방임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의한 정서학대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관계 발달을 방해하게 되어 건강한 애착형성을 어렵게 한다*.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자기 자신에

* 조은정이기학(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학대의 경우 학대사실이 외부로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를 방지하는 방임행위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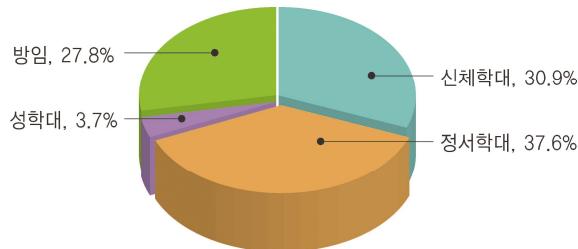
하지만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경우 정서학대와 방임이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서학대 55.5%, 방임은 49.7%로 나타나, 신체학대 72.0%, 성학대 90.8%에 비해 낫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3,160(30.9)
정서학대	3,843(37.6)
성학대	380(3.7)
방임	2,848(27.8)
계	10,231(100.0)

* 중복포함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이 절에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표 4-17>은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학대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 중 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인 반면 여아는 91.6%로, 여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성학대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성별	학대유형	성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남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계		3,160(100.0)	3,843(100.0)	380(100.0)	2,848(100.0)	10,231(100.0)

* 중복포함

(단위: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및 성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는데, 학령기인 만 10~12세와 만 13~15세 구간에 가장 많은 피해아동이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6~17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피해아동의 발견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만 10~12세부터 만 16~17세까지의 아동이 312건(82.1%)으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성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만 1세 미만과 만 1~3세에서 방임이 각각 349건(12.3%), 378건(13.3%)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는 영유아 시기의 아동학대는 영유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즉,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이겨내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검진 시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소아 응급실 방문 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학대피해가

* Schore, A. N. (2001) The effects of early relational trauma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201-269.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발견체계가 구축 및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서학대가 만 10~12세가 834건(21.7%), 만 13~15세가 982건(25.6%)으로 학령기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에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 및 학습능력의 향상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정서학대의 경험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기의 정서학대는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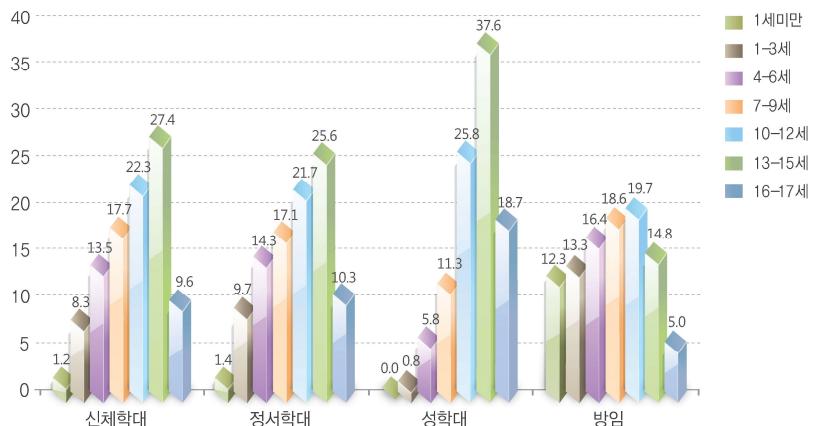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연령(만)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38(1.2)	55(1.4)	0(0.0)	349(12.3)	442(4.3)
1~3세		261(8.3)	371(9.7)	3(0.8)	378(13.3)	1,013(9.9)
4~6세		426(13.5)	550(14.3)	22(5.8)	468(16.4)	1,466(14.3)
7~9세		558(17.7)	657(17.1)	43(11.3)	529(18.6)	1,787(17.5)
10~12세		706(22.3)	834(21.7)	98(25.8)	560(19.7)	2,198(21.5)
13~15세		867(27.4)	982(25.6)	143(37.6)	422(14.8)	2,414(23.6)
16~17세		304(9.6)	394(10.3)	71(18.7)	142(5.0)	911(8.9)
계		3,160(100.0)	3,843(100.0)	380(100.0)	2,848(100.0)	10,231(100.0)

*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유형에서 거짓말, 기출,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정신건강,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특성이 60건(6.4%)로 성학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학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가 장애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발달신체건강 문제의 경우 방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생문제가 623건(9.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지하는 등의 방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일 수 있다.

정서학대에서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불안 특성이 8.1%로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우울불안을 발생시킨다**. 부모에 의한 폭언, 아동에 대한 위협 행위 등의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공포심을 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관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장애	신체적 장애	27(0.3)	36(0.4)	6(0.6)	32(0.5)	101(0.4)	
	정신적 장애	100(1.2)	112(1.2)	23(2.4)	107(1.6)	342(1.4)	
	장애 의심	101(1.2)	108(1.2)	31(3.3)	130(1.9)	370(1.5)	
	소계	228(2.8)	256(2.7)	60(6.4)	269(4.0)	813(3.2)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과잉행동	446(5.5)	433(4.6)	23(2.4)	312(4.6)	1,214(4.8)	
	인터넷(게임) 중독	224(2.8)	222(2.4)	12(1.3)	136(2.0)	594(2.4)	
	불안	99(1.2)	111(1.2)	4(0.4)	117(1.7)	331(1.3)	
	애착문제	567(7.0)	755(8.1)	89(9.5)	323(4.8)	1,734(6.9)	
	무력감	258(3.2)	344(3.7)	24(2.6)	236(3.5)	862(3.4)	
	우울	179(2.2)	261(2.8)	27(2.9)	163(2.4)	630(2.5)	
	낮은 자아존중감	245(3.0)	337(3.6)	46(4.9)	159(2.3)	787(3.1)	
	성격 및 기질문제	321(4.0)	423(4.5)	40(4.3)	254(3.7)	1,038(4.1)	
	성격 및 기질문제	241(3.0)	280(3.0)	22(2.3)	123(1.8)	666(2.6)	
	담식 및 결식	84(1.0)	129(1.4)	11(1.2)	201(3.0)	425(1.7)	
적응·행동	소계	2,664(32.9)	3,295(35.2)	298(31.7)	2,024(29.8)	8,281(32.9)	
	반항·충동·공격성	478(5.9)	509(5.4)	32(3.4)	213(3.1)	1,232(4.9)	
	거짓말	428(5.3)	393(4.2)	30(3.2)	150(2.2)	1,001(4.0)	
	도벽	294(3.6)	272(2.9)	17(1.8)	124(1.8)	707(2.8)	
	가출	384(4.7)	377(4.0)	47(5.0)	139(2.0)	947(3.8)	
	약물·흡연·음주	271(3.3)	267(2.9)	47(5.0)	125(1.8)	710(2.8)	
	성문제	83(1.0)	81(0.9)	57(6.1)	46(0.7)	267(1.1)	
	학교 부적응	276(3.4)	333(3.6)	38(4.0)	250(3.7)	897(3.6)	
	잦은 결석, 무단결과	223(2.8)	240(2.6)	20(2.1)	246(3.6)	729(2.9)	
	늦은 귀가	270(3.3)	262(2.8)	26(2.8)	121(1.8)	679(2.7)	
발달·신체건강	학습문제	305(3.8)	359(3.8)	35(3.7)	353(5.2)	1,052(4.2)	
	폭력·충동	135(1.7)	137(1.5)	9(1.0)	69(1.0)	350(1.4)	
	비행·집단활동	72(0.9)	68(0.7)	7(0.7)	26(0.4)	173(0.7)	
	불건전한 또래관계	151(1.9)	147(1.6)	20(2.1)	62(0.9)	380(1.5)	
	대인관계기피	60(0.7)	105(1.1)	14(1.5)	105(1.5)	284(1.1)	
	소계	3,430(42.4)	3,550(37.9)	399(42.4)	2,029(29.9)	9,408(37.4)	
	신체발달지연	72(0.9)	84(0.9)	3(0.3)	133(2.0)	292(1.2)	
	언어문제	164(2.0)	194(2.1)	13(1.4)	240(3.5)	611(2.4)	
	영양결핍	49(0.6)	57(0.6)	5(0.5)	131(1.9)	242(1.0)	
	대소변문제	62(0.8)	72(0.8)	5(0.5)	80(1.2)	219(0.9)	
특성	위생문제	185(2.3)	256(2.7)	19(2.0)	623(9.2)	1,083(4.3)	
	틱(음성·신체·뜻밖)	25(0.3)	25(0.3)	1(0.1)	13(0.2)	64(0.3)	
	잦은 범치병, 혀약	40(0.5)	47(0.5)	5(0.5)	49(0.7)	141(0.6)	
	주요병력	78(1.0)	68(0.7)	4(0.4)	66(1.0)	216(0.9)	
	소계	675(8.3)	803(8.6)	55(5.8)	1,335(19.7)	2,868(11.4)	
	특성 없음	987(12.2)	1,307(14.0)	109(11.6)	948(14.0)	3,351(13.3)	
기타		105(1.3)	140(1.5)	20(2.1)	115(1.7)	380(1.5)	
파악안됨		0(0.0)	0(0.0)	0(0.0)	65(1.0)	65(0.3)	
계		8,093(100.0)	9,355(100.0)	941(100.0)	6,789(100.0)	25,178(100.0)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장화정(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중복포함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를 각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시켜 집계된 총 10,231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8,369건(81.8%)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7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가 차지한 비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학대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한 성학대는 48.9%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근친강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수치이다.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 모	2,438 (77.2)	3,098 (80.6)	186 (48.9)	2,647 (92.9)	8,369 (81.8)
친인척	178 (5.6)	187 (4.9)	41 (10.8)	99 (3.5)	505 (4.9)
대리양육자	478 (15.1)	511 (13.3)	53 (13.9)	68 (2.4)	1,110 (10.8)
타 인	10 (0.3)	6 (0.2)	72 (18.9)	2 (0.1)	90 (0.9)
파악 안 됨	6 (0.2)	5 (0.1)	8 (2.1)	22 (0.8)	41 (0.4)
기타	50 (1.6)	36 (0.9)	20 (5.3)	10 (0.4)	116 (1.1)
계	3,160 (100.0)	3,843 (100.0)	380 (100.0)	2,848 (100.0)	10,231 (100.0)

*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 정서, 방임에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기족갈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가 학대행위자의 개별적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적 장애	89(0.9)	122(0.9)	8(0.9)	109(1.1)	328(0.9)	
정신적 장애	56(0.5)	61(0.4)	9(1.0)	121(1.2)	247(0.7)	
장애의심	80(0.8)	129(0.9)	12(1.4)	207(2.1)	428(1.2)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683(35.3)	4,519(33.0)	203(22.9)	3,169(32.0)	11,574(33.2)	
중독문제	670(6.4)	973(7.1)	43(4.9)	489(4.9)	2,175(6.2)	
질환문제	97(0.9)	152(1.1)	8(0.9)	145(1.5)	402(1.2)	
성격 및 기질문제	892(8.5)	1,213(8.9)	58(6.5)	478(4.8)	2,641(7.6)	
위생문제	78(0.7)	109(0.8)	8(0.9)	395(4.0)	590(1.7)	
나태 및 무기력	105(1.0)	136(1.0)	6(0.7)	250(2.5)	497(1.4)	
난독해, 난작문	8(0.1)	12(0.1)	0(0.0)	24(0.2)	44(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2,223(21.3)	2,925(21.4)	117(13.2)	2,494(25.2)	7,759(22.2)	
어릴 적 학대경험	211(2.0)	264(1.9)	12(1.4)	132(1.3)	619(1.8)	
폭력성	527(5.0)	775(5.7)	41(4.6)	280(2.8)	1,623(4.6)	
전과력	70(0.7)	88(0.6)	14(1.6)	52(0.5)	224(0.6)	
성문제	55(0.5)	82(0.6)	139(15.7)	56(0.6)	332(1.0)	
원치 않는 아동	94(0.9)	133(1.0)	2(0.2)	129(1.3)	358(1.0)	
부부 및 가족 갈등	945(9.0)	1,451(10.6)	53(6.0)	856(8.7)	3,305(9.5)	
종교문제	20(0.2)	33(0.2)	0(0.0)	33(0.3)	86(0.2)	
특성 없음	395(3.8)	351(2.6)	61(6.9)	206(2.1)	1,013(2.9)	
파악 안 됨	144(1.4)	158(1.2)	92(10.4)	268(2.7)	662(1.9)	
계	10,442(100.0)	13,686(100.0)	886(100.0)	9,893(100.0)	34,907(100.0)	

* 중복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정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3년 아동학대로 접수된 6,796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및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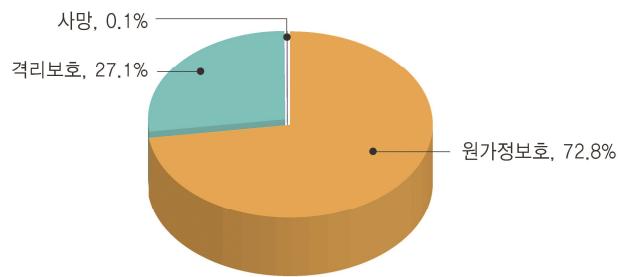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2.8%인 4,9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 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격리보호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격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격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격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27.1%인 1,839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1,065건 (15.7%), 친인척보호 354건(5.2%), 장기보호 253건(3.7%), 병원입원 86건(1.3%), 연고자에 의한 보호 69건(1.0%), 가정위탁 12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5.2%이고, 위탁가정 보호조치된 경우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리 양육체계 조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가정위탁 보호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계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4,949 (72.8)	354 (5.2)	69 (1.0)	12 (0.2)	1,065 (15.7)	253 (3.7)	86 (1.3)	1,839 (27.1)	8 (0.1)	6,796 (100.0)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격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격리보호인 1,839건의 사례 중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총 385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격리보호가 유지된 사례는 1,445건(79.0%)이었다(<표 4-23> 참조).

아동학대로 초기 격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격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강제 참여 제도화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4-23>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단위: 건, %)

초기 격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격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1,839 (100.0)	385 (21.0)	1,445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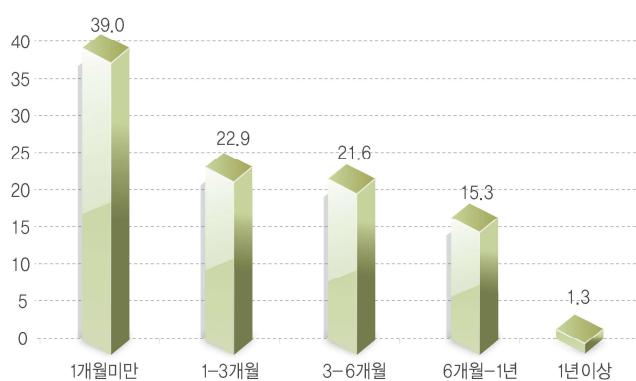
<표 4-24>는 2013년 아동학대 사례 중 초기에 격리보호된 1,839건 가운데 가정으로 복귀된 385건을 바탕으로 가정 복귀된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격리보호된 아동 중 150건(39.0%)이 격리보호 후 1개월 이내에 가정에 복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격리보호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88건(22.9%),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83건(21.6%)이었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9건(15.3%), 1년 이상은 5건(1.3%)이었다.

<표 4-24>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건, %)

복귀시기	건 수 (비 율)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 미만	150 (39.0)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3개월	88 (22.9)
초기 격리보호 후 3개월~6개월	83 (21.6)
초기 격리보호 후 6개월~1년	59 (15.3)
초기 격리보호 후 1년 이상	5 (1.3)
계	385 (100.0)

(단위: %)



<그림 4-19>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다음으로 <표 4-25>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비하여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0.9%, 광주광역시 39.8%, 서울특별시 38.8%, 순으로 초기에 아동을 격리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초기 격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2.9%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은 충청북도 14.2%, 전라북도 19.3% 순이었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1.88%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은 19.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0.37%로 가장 낮은 반면 초기 격리보호율은 39.8%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볼 때 초기격리보호율에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기관에 접수되는 사례의 특성 및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기 격리보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아동의 위험을 명확하게 사정하여 초기에 격리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격리에 필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비교

(단위 : ‰, %)

지 역	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서울특별시	0.50	38.8
부산광역시	0.54	28.8
대구광역시	0.42	27.2
인천광역시	0.63	31.5
광주광역시	0.37	39.8
대전광역시	0.67	24.5
울산광역시	0.63	12.9
경 기 도	0.62	24.3
강 원 도	0.88	28.8
충청북도	1.31	14.2
충청남도	0.86	29.1
전라북도	1.88	19.3
전라남도	1.15	23.4
경상북도	1.04	28.5
경상남도	0.90	29.2
제주특별자치도	1.13	40.9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단위: 건, %)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계
서 울	중앙	0(0.0)	1(100.0)*	0(0.0)	1(100.0)
	서울특별시	47(20.9)	178(79.1)	0(0.0)	225(100.0)
	서울특별시동부	84(46.6)	46(35.4)	0(0.0)	130(100.0)
	서울강서	81(79.4)	21(20.6)	0(0.0)	102(100.0)
	서울은평	77(73.3)	27(25.7)	1(1.0)	105(100.0)
	서울영등포	99(83.9)	19(16.1)	0(0.0)	118(100.0)
	서울성북	40(76.9)	12(23.1)	0(0.0)	52(100.0)
	서울마포	70(84.3)	13(15.7)	0(0.0)	83(100.0)
부 산	서울동남권**	0(0.0)	0(0.0)	0(0.0)	0(0.0)
	소 계	498(61.1)	316(38.8)	1(0.1)	815(100.0)
	부산광역시	97(62.2)	58(37.2)	1(0.6)	156(100.0)
	부산동부	112(80.6)	27(19.4)	0(0.0)	139(100.0)
대 구	소 계	209(70.8)	85(28.8)	1(0.3)	295(100.0)
	대구광역시	112(70.9)	44(27.8)	2(1.3)	158(100.0)
	대구남부	25(75.8)	8(24.2)	0(0.0)	33(100.0)
인 천	소 계	137(71.7)	52(27.2)	2(1.0)	191(100.0)
	인천광역시	140(66.0)	72(34.0)	0(0.0)	212(100.0)
	인천부평	69(73.4)	25(26.6)	0(0.0)	94(100.0)
	인천미추홀	24(70.6)	10(29.4)	0(0.0)	34(100.0)
광 주	소 계	233(68.5)	107(31.5)	0(0.0)	340(100.0)
	광주광역시	70(59.3)	47(39.8)	1(0.8)	118(100.0)
	대전광역시	157(75.5)	51(24.5)	0(0.0)	208(100.0)
울 산	울산광역시	126(85.7)	19(12.9)	2(1.4)	147(100.0)
경 기	경기도	128(70.3)	54(29.7)	0(0.0)	182(100.0)
	경기북부	108(75.0)	35(24.3)	1(0.7)	144(100.0)
	경기성남	130(70.3)	55(29.7)	0(0.0)	185(100.0)
	경기고양	73(69.5)	32(30.5)	0(0.0)	105(100.0)
	경기부천	202(82.1)	44(17.9)	0(0.0)	246(100.0)
	경기화성	181(74.5)	62(25.5)	0(0.0)	243(100.0)
	경기남양주	85(81.0)	20(19.0)	0(0.0)	105(100.0)
	안산시	199(82.6)	42(17.4)	0(0.0)	241(100.0)
	경기용인	22(59.5)	15(40.5)	0(0.0)	37(100.0)
	경기시흥	19(67.9)	9(32.1)	0(0.0)	28(100.0)
	소 계	1,147(75.7)	368(24.3)	1(0.1)	1,516(100.0)
	강원도	53(70.7)	22(29.3)	0(0.0)	75(100.0)
	강원동부	63(77.8)	18(22.2)	0(0.0)	81(100.0)
강 원	원주시	52(65.0)	28(35.0)	0(0.0)	80(100.0)
	소 계	168(71.2)	68(28.8)	0(0.0)	236(100.0)
	충청북도	169(84.9)	30(15.1)	0(0.0)	199(100.0)
충 북	충북북부	75(84.3)	14(15.7)	0(0.0)	89(100.0)
	충북남부	88(88.9)	11(11.1)	0(0.0)	99(100.0)
	소 계	332(85.8)	55(14.2)	0(0.0)	387(100.0)
충 남	충청남도	187(69.5)	82(30.5)	0(0.0)	269(100.0)
	충청남도남부	59(75.6)	19(24.4)	0(0.0)	78(100.0)
	소 계	246(70.9)	101(29.1)	0(0.0)	347(100.0)
전 북	전라북도	136(72.3)	52(27.7)	0(0.0)	188(100.0)
	전리북도서부	279(82.8)	58(17.2)	0(0.0)	337(100.0)
	전리북도동부	102(87.9)	14(12.1)	0(0.0)	116(100.0)
전 남	소 계	517(80.7)	124(19.3)	0(0.0)	641(100.0)
	전라남도	104(73.8)	37(26.2)	0(0.0)	141(100.0)
	전남서부권	81(72.3)	31(27.7)	0(0.0)	112(100.0)
	전남중부권	100(84.0)	19(16.0)	0(0.0)	119(100.0)
경 북	소 계	285(76.6)	87(23.4)	0(0.0)	372(100.0)
	경상북도	63(54.8)	52(45.2)	0(0.0)	115(100.0)
	경북아동	93(80.9)	22(19.1)	0(0.0)	115(100.0)
	경북포항	98(62.8)	58(37.2)	0(0.0)	156(100.0)
	구 미	82(97.6)	2(2.4)	0(0.0)	84(100.0)
경 남	소 계	336(71.5)	134(28.5)	0(0.0)	470(100.0)
	경상남도	326(73.1)	120(26.9)	0(0.0)	446(100.0)
	경남서부	81(62.8)	48(37.2)	0(0.0)	129(100.0)
제 주	소 계	407(70.8)	168(29.2)	0(0.0)	575(100.0)
	제주특별자치도	26(36.6)	45(63.4)	0(0.0)	71(100.0)
	서귀포시	55(83.3)	11(16.7)	0(0.0)	66(100.0)
	소 계	81(59.1)	56(40.9)	0(0.0)	137(100.0)
	계	4,949(72.8)	1,839(27.1)	8(0.1)	6,796(100.0)

* 상기 사례는 해외발생사례로 발생국가 내에서 가정위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가족구성원 폴악 후 연계 외 제공서비스가 없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하였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초기조치결과 실적이 없음.

<표 4-27>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원가정보호 조치 비율이 전체 사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5% 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되었다. 원가정보호조치된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성학대 사례 중 원가정보호조치된 사례들의 학대행위자를 살펴본 결과, 원가정보호조치된 사례들 중 78건(41.5%)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족보존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이수가 강제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원가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신체학대와 방임 유형에서 사망사례가 각각 5건,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대부분 일회적인 신체학대가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 해당하였다. 방임으로 인한 사망사례의 경우, 대부분 영유아를 방치하여 굶주려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 해당하였다. 이를 비추어볼 때 방임과 같이 외형적으로 학대가 심각해보이지 않더라도 아동이 가정 내에서 계속 보호되는 것이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단기적인 안전 확보가 우선시될 경우 학대재발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격리보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격리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단위: 건, %)

학대유형 초기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2,305 (72.9)	2,884 (75.0)	188 (49.5)	1,948 (68.4)	7,325 (71.6)
격리 보호	친족보호	195 (6.2)	241 (6.3)	32 (8.4)	123 (4.3)	591 (5.8)
	연고자에 의한 보호	36 (1.1)	39 (1.0)	10 (2.6)	35 (1.2)	120 (1.2)
	가정위탁	6 (0.2)	4 (0.1)	2 (0.5)	5 (0.2)	17 (0.2)
	일시보호	489 (15.5)	556 (14.5)	117 (30.8)	524 (18.4)	1,686 (16.5)
	장기보호	85 (2.7)	97 (2.5)	29 (7.6)	156 (5.5)	367 (3.6)
	병원입원	39 (1.2)	22 (0.6)	2 (0.5)	54 (1.9)	117 (1.1)
	소계	850 (26.9)	959 (25.0)	192 (50.5)	897 (31.5)	2,898 (28.3)
사망		5 (0.2)	0 (0.0)	0 (0.0)	3 (0.1)	8 (0.1)
계		3,160 (100.0)	3,843 (100.0)	380 (100.0)	2,848 (100.0)	10,231 (100.0)

* 중복포함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란 2013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3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표 4-28>를 통해 2013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의 비중은 0%에서 70.9%의 분포를 나타낸 반면,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25.4%에서 100%의 범위를 보였다.

2013년 아동학대사례 6,796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는 1,685건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5,111건(75.2%)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단기간에 감소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가 한번 이상 발생한 경우, 만성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재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단기간에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별달을 모니터링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다.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중	계
				1(100.0)
서 울	중앙	0(0.0)	1(100.0)*	1(100.0)
	서울특별시	16(7.1)	209(92.9)	225(100.0)
	서울특별시동부	11(8.5)	119(91.5)	130(100.0)
	서울강서	34(33.3)	68(66.7)	102(100.0)
	서울은평	18(17.1)	87(82.9)	105(100.0)
	서울영등포	31(26.3)	87(73.7)	118(100.0)
	서울성북	4(7.7)	48(92.3)	52(100.0)
	서울마포	36(43.4)	47(56.6)	83(100.0)
부 산	서울동남권**	0(0.0)	0(0.0)	0(0.0)
	소 계	150(18.4)	665(81.6)	815(100.0)
부 산	부산광역시	9(5.8)	147(94.2)	156(100.0)
	부산동부	38(27.3)	101(72.7)	139(100.0)
	소 계	47(15.9)	248(84.1)	295(100.0)
대 구	대구광역시	112(70.9)	46(29.1)	158(100.0)
	대구남부	4(12.1)	29(87.9)	33(100.0)
인 천	소 계	116(60.7)	75(39.3)	191(100.0)
	인천광역시	106(50.0)	106(50.0)	212(100.0)
	인천부평	32(34.0)	62(66.0)	94(100.0)
	인천미추홀	7(20.6)	27(79.4)	34(100.0)
광 주	소 계	145(42.6)	195(57.4)	340(100.0)
	광주광역시	88(74.6)	30(25.4)	118(100.0)
	대전광역시	77(37.0)	131(63.0)	208(100.0)
대 전	울산광역시	29(19.7)	118(80.3)	147(100.0)
경 기	경기도	12(6.6)	170(93.4)	182(100.0)
	경기북부	44(30.6)	100(69.4)	144(100.0)
	경기서남	19(10.3)	166(89.7)	185(100.0)
	경기고양	13(12.4)	92(87.6)	105(100.0)
	경기부천	43(17.5)	203(82.5)	246(100.0)
	경기화성	49(20.2)	194(79.8)	243(100.0)
	경기남양주	45(42.9)	60(57.1)	105(100.0)
	안산시	72(29.9)	169(70.1)	241(100.0)
	경기용인***	0(0.0)	37(100.0)	37(100.0)
	경기시흥	0(0.0)	28(100.0)	28(100.0)
강 원	소 계	297(19.6)	1,219(80.4)	1,516(100.0)
	강원도	18(24.0)	57(76.0)	75(100.0)
	강원동부	20(24.7)	61(75.3)	81(100.0)
	원주시	17(21.3)	63(78.8)	80(100.0)
충 북	소 계	55(23.3)	181(76.7)	236(100.0)
	충청북도	49(24.6)	150(75.4)	199(100.0)
	충북북부	8(9.0)	81(91.0)	89(100.0)
	충북남부	18(18.2)	81(81.8)	99(100.0)
충 남	소 계	75(19.4)	312(80.6)	387(100.0)
	충청남도	24(8.9)	245(91.1)	269(100.0)
	충청남도남부	18(23.1)	60(76.9)	78(100.0)
	소 계	42(12.1)	305(87.9)	347(100.0)
전 북	전라북도	120(63.8)	68(36.2)	188(100.0)
	전라북도서부	72(21.4)	265(78.6)	337(100.0)
	전라북도동부	11(9.5)	105(90.5)	116(100.0)
전 남	소 계	203(31.7)	438(68.3)	641(100.0)
	전라남도	95(67.4)	46(32.6)	141(100.0)
	전남서부권	15(13.4)	97(86.6)	112(100.0)
	전남중부권	9(7.6)	110(92.4)	119(100.0)
경 북	소 계	119(32.0)	253(68.0)	372(100.0)
	경상북도	67(58.3)	48(41.7)	115(100.0)
	경북안동	25(21.7)	90(78.3)	115(100.0)
	경북포항	35(22.4)	121(77.6)	156(100.0)
경 남	구 미	30(35.7)	54(64.3)	84(100.0)
	소 계	157(33.4)	313(66.6)	470(100.0)
	경상남도	41(9.2)	405(90.8)	446(100.0)
제 주	경남서부	32(24.8)	97(75.2)	129(100.0)
	소 계	73(12.7)	502(87.3)	575(100.0)
	제주특별자치도	10(14.1)	61(85.9)	71(100.0)
제 주	서귀포시	2(3.0)	64(97.0)	66(100.0)
	소 계	12(8.8)	125(91.2)	137(100.0)
계		1,685(24.8)	5,111(75.2)	6,796(100.0)

* 상기 사례는 해외발생사례로 발생국가 내에서 가정위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가족구성원 과학 후 연계 외 제공서비스가 없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하였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용인,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개소하였으므로 현재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음.

<표 4-29>은 2013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6,796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2013년 진행 중 사례와 종결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진행 중 사례와 종결 사례를 종합한 최종조치결과의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가 4,376건(64.4%), 격리보호 1,944건(28.6%), 가정 복귀 사례 454건(6.7%), 사망 22건(0.3%)으로 파악되었다. 격리보호조치 된 아동들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 960건(14.1%), 친족(친인척)보호 526건(7.7%), 일시보호 358건(5.3%), 가정위탁 25건(0.4%)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보호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3,357건(69.0%)을 차지하는 반면, 종결사례의 경우 849건(50.4%)으로 나타났고, 격리보호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277건(25.0%)이나 종결사례의 경우 667건(39.6%)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초기개입 시 사망사례는 8건이었으나 최종조치에서는 22건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사건이 증가한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사망사건을 인지한 후 사례를 접수한 경우가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종결여부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진행 중 사례	3,527(69.0)	322(6.3)	34(0.7)	12(0.2)	323(6.3)	559(10.9)	27(0.5)	1,277(25.0)	8(0.2)	299(5.9)	5,111(100.0)
종결사례	849(50.4)	204(12.1)	3(0.2)	13(0.8)	35(2.1)	401(23.8)	11(0.7)	667(39.6)	14(0.8)	155(9.2)	1,685(100.0)
계	4,376(64.4)	526(7.7)	37(0.5)	25(0.4)	358(5.3)	960(14.1)	38(0.6)	1,944(28.6)	22(0.3)	454(6.7)	6,796(100.0)

(단위 : %)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표 4-30>은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초기조치결과와 같이 모든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드러냈다.

사례유형 특성상 성학대 사례는 격리보호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20.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성학대 사례 중 원가정보호조치된 사례인 161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 중 고소고발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60건이었으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조치결과	유형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2,101(66.5)	2,606(67.8)	161(42.4)	1,572(55.2)	6,440(62.9)
격리보호	친족보호	281(8.9)	343(8.9)	44(11.6)	197(6.9)	865(8.5)
	연고자에의한보호	14(0.4)	22(0.6)	5(1.3)	19(0.7)	60(0.6)
	가정위탁	7(0.2)	9(0.2)	3(0.8)	16(0.6)	35(0.3)
	일시보호	172(5.4)	183(4.8)	49(12.9)	171(6.0)	575(5.6)
	장기보호	299(9.5)	368(9.6)	77(20.3)	674(23.7)	1,418(13.9)
	병원입원	21(0.7)	17(0.4)	1(0.3)	22(0.8)	61(0.6)
소계		794(25.1)	942(24.5)	179(47.1)	1,099(38.6)	3,014(29.5)
사망		9(0.3)	3(0.1)	0(0.0)	15(0.5)	27(0.3)
가정복귀		256(8.1)	292(7.6)	40(10.5)	162(5.7)	750(7.3)
계		3,160(100.0)	3,843(100.0)	380(100.0)	2,848(100.0)	10,231(100.0)

*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1>는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3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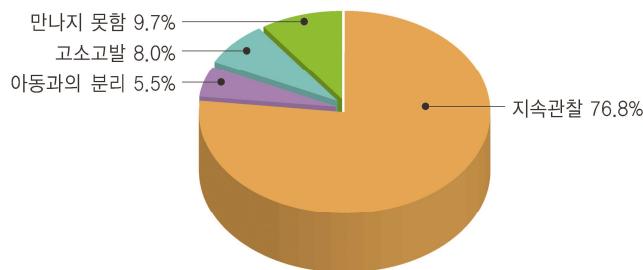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5,220건(76.8%)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속관찰에 해당된다. 한편 고소고발과 아동과의 분리에 해당되는 사례는 각각 544건(8.0%), 372건(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중 지속관찰의 비중이 높고 고소고발조치가 낮은 이유는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하기보다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교정에 더욱 비중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고소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법조계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결여로 인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3년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판결 사례 역시 전체 고소고발건수의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표 4-33>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660건(9.7%)이었다. 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 등으로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으로는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4-31>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계
5,220 (76.8)	372 (5.5)	544 (8.0)	660 (9.7)	6,796 (100.0)



<그림 4-23>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2>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 조치로 지속관찰이 70% 이상인 반면 성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고발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표 4-20>과 같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성학대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성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춰볼 때, 성학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학대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 조치 결정 시 고소고발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아동학대가 범죄행위이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관찰이 성학대를 제외하고 전체 학대유형에서 70% 이상을 나타낸 것은 현행 법률 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이수를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강제 이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표 4-3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학대유형 조치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2,553(80.8)	3,132(81.5)	102(26.8)	2,181(76.6)	7,968(77.9)
고소·고발	274(8.7)	250(6.5)	210(55.3)	103(3.6)	837(8.2)
아동과의 분리	185(5.9)	207(5.4)	16(4.2)	129(4.5)	537(5.2)
만나지 못함	148(4.7)	254(6.6)	52(13.7)	435(15.3)	889(8.7)
계	3,160(100.0)	3,843(100.0)	380(100.0)	2,848(100.0)	10,231(100.0)

*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201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6,796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544건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544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195건(35.8%)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례는 151건(27.8%), 내사종결된 사례는 44건(8.1%)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찰 수사 중인 사례는 총 118건(21.7%)이었으며, 이 중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81건(14.9%), 불기소 37건(6.8%)으로 집계되었다.

재판 진행중인 사례 78건 중 1심 진행 중인 경우는 58건(10.7%), 항소심(2심) 진행 중인 사례는 16건(2.9%), 상고심(최종) 진행 중인 경우는 4건(0.7%)이었다. 법원판결을 받은 사례는 146건(26.8%)이었는데, 이중 보안처분은 12건(2.2%), 형사처벌은 103건(18.9%),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은 사례가 31건(5.7%)이었다.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 60건(11.0%), 벌금 24건(4.4%), 집행유예 9건(1.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사처벌에 비해 보호처분 판결이 현격히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현행 아동복지법 상에서 학대행위자에 관하여 보호관찰, 상담수강명령과 같은 보호처분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9월 시행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법원의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이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사례가 총 310건으로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고소고발되어 1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최종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학대행위자는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왜곡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의 변화가 시급하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판결내용이나 아동학대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행위자의 출소 사실 등과 같은 고소고발 결과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최종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속히 파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 처리상황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3>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

구 분		전 수	
경찰수사	수사중 내사종결 소계	151(27.8) 44(8.1) 195(35.8)	
검찰수사	수사중 불기소 소계	81(14.9) 37(6.8) 118(21.7)	
재판진행중	1심 진행 항소심 진행 상고심 진행 소계	58(10.7) 16(2.9) 4(0.7) 78(14.3)	
관찰	보안처분	접근행위 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3(0.6) 3(0.6) 3(0.6) 1(0.2) 2(0.4)
		소계	12(2.2)
	형사처분	무죄 징역 벌금 집행유예 기재 안됨	2(0.4) 60(11.0) 24(4.4) 9(1.7) 8(1.5)
		소계	103(18.9)
		징역+수강명령 징역+보호관찰 징역+친권행사제한 징역+접근제한 징역+사회봉사 징역+기타 징역+파악안됨 집행유예+사회봉사 집행유예+수강명령	10(1.8) 1(0.2) 1(0.2) 2(0.4) 5(0.9) 7(1.3) 2(0.4) 2(0.4) 1(0.2)
	보호처분+형사처분	소계	31(5.7)
		파악안됨	7(1.3)
	계	544(100.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4>와 같다. 고소·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였으며, 총 236건(41.5%)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성학대 165건(29.0%), 신체학대 75건(13.2%), 방임 48건(8.5%), 정서학대 44건(7.7%) 순이었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133건(23.4%),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가 함께 발생한 사례는 24건(4.2%),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은 23건(4.0%)으로 나타났다.

< 표 4-3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

유형	고소고발 결과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관찰			계	
					보안처분	형사처벌	무죄		
신체학대	14(18.7)	28(37.3)	3(4.0)	4(5.3)	25(33.3)	1(1.3)	30(40.0)	75(100.0)	
정서학대	32(72.7)	1(2.3)	2(4.5)	1(2.3)	8(18.2)	0(0.0)	9(20.5)	44(100.0)	
성학대	39(23.6)	25(15.2)	30(18.2)	20(12.1)	51(30.9)	0(0.0)	71(43.0)	165(100.0)	
방임	23(47.9)	18(37.5)	1(2.1)	2(4.2)	4(8.3)	0(0.0)	6(12.5)	48(100.0)	
중복 학대	신체·정서	49(36.8)	27(20.3)	23(17.3)	12(9.0)	22(16.5)	0(0.0)	34(25.6)	133(100.0)
	신체·성	3(27.3)	4(36.4)	2(18.2)	0(0.0)	1(9.1)	1(9.1)	2(18.2)	11(100.0)
	신체·방임	5(62.5)	1(12.5)	1(12.5)	0(0.0)	1(12.5)	0(0.0)	1(12.5)	8(100.0)
	정서·성	1(8.3)	3(25.0)	4(33.3)	0(0.0)	4(33.3)	0(0.0)	4(33.3)	12(100.0)
	정서·방임	4(40.0)	1(10.0)	2(20.0)	0(0.0)	3(30.0)	0(0.0)	3(30.0)	10(100.0)
	성·방임	2(66.7)	0(0.0)	1(33.3)	0(0.0)	0(0.0)	0(0.0)	0(0.0)	3(100.0)
	신체·정서·성	6(25.0)	4(16.7)	5(20.8)	2(8.3)	7(29.2)	0(0.0)	9(37.5)	24(100.0)
	신체·정서·방임	11(47.8)	3(13.0)	4(17.4)	2(8.7)	3(13.0)	0(0.0)	5(21.7)	23(100.0)
	신체·성·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00.0)
	정서·성·방임	2(66.7)	1(33.3)	0(0.0)	0(0.0)	0(0.0)	0(0.0)	0(0.0)	3(100.0)
	신체·정서·성·방임	4(44.4)	2(22.2)	0(0.0)	0(0.0)	3(33.3)	0(0.0)	3(33.3)	9(100.0)
소 계		87(36.9)	46(19.5)	42(17.8)	16(6.8)	44(18.6)	1(0.4)	61(25.8)	236(100.0)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서비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이후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고소고발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3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3년 신고사례, 그리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35>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회)

구분	2013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311,599
학대행위자	63,863
부모 또는 가족	58,869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311,599회이다. <표 4-35>에서 2013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51,162회이며, 2013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60,437회로 집계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62,177회(41.1%), 74,004회(4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유형 중에서는 상담서비스 중에서는 개별 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 이전 신고사례는 기관상담 34,142회(22.6%), 개별상담 25,173회(16.7%)가 제공되었으며, 2013년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기관상담 44,341회(27.6%), 개별상담 26,320회(16.4%)가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52,586회(34.8%), 50,605회(31.5%)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아동에게 일시보호서비스가 많이 제공된 것은 피해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장기보호조치하기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3년 이전과 당해 연도에 모두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서비스 유형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연계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시켜야 할 것이다.

<표 4-3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단위: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3년 이전 신고사례	2013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5,173(16.7)	26,320(16.4)
	집단상담	889(0.6)	837(0.5)
	기관상담	34,142(22.6)	44,341(27.6)
	주변인상담	1,973(1.3)	2,506(1.6)
	소계	62,177(41.1)	74,004(46.1)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87(0.1)	572(0.4)
	입원치료	2,256(1.5)	3,377(2.1)
	통원치료	546(0.4)	581(0.4)
	소계	2,989(2.0)	4,530(2.8)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523(0.3)	1,467(0.9)
	심리치료	15,589(10.3)	9,099(5.7)
	소계	16,112(10.7)	10,566(6.6)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7,619(5.0)	12,828(8.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205(3.4)	910(0.6)
	공적지원연결	173(0.1)	91(0.1)
	소계	12,997(8.6)	13,829(8.6)
일시보호서비스		52,586(34.8)	50,605(31.5)
교소·고발지원서비스		275(0.2)	448(0.3)
기타		4,026(2.7)	6,455(4.0)
계		151,162(100.0)	160,437(100.0)

*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 총 311,599회를 2013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진행 중인 사례는 287,172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24,427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7>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2.2%,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는 기관상담, 개별상담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에서 상담서비스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가 35.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후관리 중인 사례에서는 상담서비스 다음으로 심리치료서비스가 1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3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45,796(15.9)	5,697(23.3)
	집단상담	1,526(0.5)	200(0.8)
	기관상담	69,965(24.4)	8,518(34.9)
	주변인상담	3,973(1.4)	506(2.1)
소계		121,260(42.2)	14,921(61.1)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734(0.3)	25(0.1)
	입원치료	5,249(1.8)	384(1.6)
	통원치료	1,017(0.4)	110(0.5)
	소계	7,000(2.4)	519(2.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895(0.7)	95(0.4)
	심리치료	20,263(7.1)	4,425(18.1)
	소계	22,158(7.7)	4,520(18.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8,648(6.5)	1,799(7.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161(1.8)	954(3.9)
	공적지원연결	257(0.1)	7(0.0)
	소계	24,066(8.4)	2,760(11.3)
일시보호서비스		103,191(35.9)	0(0.0)
고소·고발지원서비스		691(0.2)	32(0.1)
기타		8,806(3.1)	1,675(6.9)
계		287,172(100.0)	24,427(100.0)

* 중복포함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2013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63,863회로 집계되었다. 2013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31,940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3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31,923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였으며, 2013년 이전에는 82.9%, 당해 연도에는 84.9%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개별 상담이 각각 71.6%, 68.8%로 나타났으며, 기관 상담의 경우 각각 10%, 13.1%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가 2013년 이전 신고사례에서는 9.3%, 당해 연도 사례에서 6%를 차지하였으며, 심리치료서비스는 2013년 이전과 당해 연도에 각각 4.2%, 5.4%의 비중을 보였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3년 이전 사례에 2.8%, 당해 연도에 2.5% 실시되었다.

서비스 대상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보다 적은 편이며, 서비스 유형 측면에 있어서는 개별상담서비스에 편중되어 있고 학대행위자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등은 미비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이전/2013년)

(단위 : 회, %)

서비스		2013년 이전 신고사례	2013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2,872(71.6)	21,965(68.8)
	집단상담	169(0.5)	331(1.0)
	기관상담	3,207(10.0)	4,178(13.1)
	주변인상담	233(0.7)	634(2.0)
소계		26,481(82.9)	27,108(84.9)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2(0.0)	25(0.1)
	입원치료	2,738(8.6)	1,838(5.8)
	통원치료	217(0.7)	64(0.2)
소계		2,967(9.3)	1,927(6.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63(0.2)	216(0.7)
	심리치료	1,294(4.1)	1,510(4.7)
	소계	1,357(4.2)	1,726(5.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496(1.6)	646(2.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371(1.2)	119(0.4)
	공적지원연결	24(0.1)	20(0.1)
	소계	891(2.8)	785(2.5)
기타		244(0.8)	377(1.2)
계		31,940(100.0)	31,923(100.0)

* 중복포함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다음 <표 4-39>는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사례진행 중인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56,250회였으며, 사후관리 중인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7,613회로, 진행 중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7배 정도 많았다.

항목별 서비스 제공률을 살펴보면, 사례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에서 개별상담이 71%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관상담이었으며,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에서 각각 11.7%, 10.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통원치료에 비해 입원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진행 중 사례 6.2%, 사후관리 사례 14.3%의 분포를 보였다.

<표 4-3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39,938(71.0)	4,899(64.4)
	집단상담	458(0.8)	42(0.6)
	기관상담	6,581(11.7)	804(10.6)
	주변인상담	808(1.4)	59(0.8)
소계		47,785(85.0)	5,804(76.2)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34(0.1)	3(0.0)
	입원치료	3,488(6.2)	1,088(14.3)
	통원치료	224(0.4)	57(0.7)
소계		3,746(6.7)	1,148(15.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269(0.5)	10(0.1)
	심리치료	2,414(4.3)	390(5.1)
	소계	2,683(4.8)	400(5.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989(1.8)	153(2.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23(0.8)	67(0.9)
	공적지원연결	43(0.1)	1(0.0)
	소계	1,455(2.6)	221(2.9)
기타		581(1.0)	40(0.5)
계		56,250(100.0)	7,613(100.0)

* 중복포함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은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 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3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58,869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3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58,869회로 집계되었다.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40>에서 보듯이 2013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27,430회였고, 2013년 신고된 사례는 31,439회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개별상담서비스와 기관상담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이전 사례에서는 개별상담서비스가 78.3%, 기관상담서비스가 9.1%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신고사례에서는 개별상담서비스가 72.1%로 기관상담서비스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3년 이전/2013년)

(단위 : 회, %)

서비스		2013년 이전 신고사례	2013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1,489(78.3)	22,667(72.1)
	집단상담	242(0.9)	341(1.1)
	기관상담	2,508(9.1)	3,884(12.4)
	주변인상담	1,111(4.1)	954(3.0)
의료서비스	소계	25,350(92.4)	27,846(88.6)
	검진 및 검사	20(0.1)	29(0.1)
	입원치료	0(0.0)	218(0.7)
심리치료서비스	통원치료	92(0.3)	55(0.2)
	소계	112(0.4)	302(1.0)
	심리검사	37(0.1)	170(0.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심리치료	912(3.3)	1,046(3.3)
	소계	949(3.5)	1,216(3.9)
	가정지원서비스	690(2.5)	1,277(4.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63(0.2)	83(0.3)
	공적지원연결	18(0.1)	22(0.1)
	소계	771(2.8)	1,382(4.4)
계		27,430(100.0)	31,439(100.0)

*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다음으로 <표 4-41>에서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입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51,770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7,099회로 나타났다. 사례진행 중인 부모 또는 가족에게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7배 정도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46,790회로 90.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심리치료서비스 1,853회로 3.6%,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829회로 3.5%에 해당하였다.

사례를 종결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에는 상담서비스가 6,406회(90.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였으며, 324회(4.6%)를 나타내었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는 312회로 4.4%였다.

<표 4-4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38,813(75.0)	5,343(75.3)
	집단상담	521(1.0)	62(0.9)
	기관상담	5,714(11.0)	678(9.6)
	주민인상담	1,742(3.4)	323(4.5)
	소계	46,790(90.4)	6,406(90.2)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42(0.1)	7(0.1)
	입원치료	218(0.4)	0(0.0)
	통원치료	142(0.3)	5(0.1)
	소계	402(0.8)	12(0.2)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93(0.4)	14(0.2)
	심리치료	1,660(3.2)	298(4.2)
	소계	1,853(3.6)	312(4.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654(3.2)	313(4.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36(0.3)	10(0.1)
	공적지원연결	39(0.1)	1(0.0)
	소계	1,829(3.5)	324(4.6)
기타		896(1.7)	45(0.6)
계		51,770(100.0)	7,099(100.0)

* 중복포함

5

제5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2. 재학대 사례
3. 사망아동 사례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 5 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정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이번 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5-1>에서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 판정결과를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은 73.5%에 해당하고, 비신고의무자는 57.1%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의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2,716(73.5)	305(8.2)	676(18.3)	3,697(100.0)
비신고의무자	4,080(57.1)	912(12.8)	2,153(30.1)	7,145(100.0)
계	6,796(62.7)	1,217(11.2)	2,829(26.1)	10,842(100.0)

(단위 : %)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를 합친 사례판정결과는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신고건수인 10,842건 중에서 사례판정을 위한 정확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판정이 지연되고 있는 조사진행중 사례 15건을 제외한 수치임.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표 5-2>에서와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사례 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8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6.9%,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86.4%,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85%, 교직원 84.2%의 순으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이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사례판정비율인 57.1%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 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교원	603(84.2)	56(7.8)	57(8.0)	716(100.0)	
의료인	59(64.1)	20(21.7)	13(14.1)	92(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28(56.6)	43(10.7)	132(32.8)	403(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6(54.5)	1(9.1)	4(36.4)	11(100.0)	
보육교직원	151(67.7)	19(8.5)	53(23.8)	223(100.0)	
유치원종사자	15(75.0)	3(15.0)	2(10.0)	20(100.0)	
학원강사	4(57.1)	1(14.3)	2(28.6)	7(100.0)	
소방구급대원	9(81.8)	0(0.0)	2(18.2)	11(100.0)	
응급구조사	0(0.0)	0(0.0)	0(0.0)	0(0.0)	
의료기사	6(100.0)	0(0.0)	0(0.0)	6(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6(75.0)	1(12.5)	1(12.5)	8(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57(76.0)	7(9.3)	11(14.7)	75(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3(100.0)	0(0.0)	0(0.0)	13(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165(86.4)	7(3.7)	19(9.9)	191(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54(72.0)	89(8.5)	204(19.5)	1,047(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04(44.4)	24(10.3)	106(45.3)	234(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2(86.9)	18(5.4)	26(7.7)	336(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2(70.6)	1(5.9)	4(23.5)	17(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4(82.4)	2(11.8)	1(5.9)	17(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6(59.3)	0(0.0)	11(40.7)	27(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0(87.0)	2(4.3)	4(8.7)	46(100.0)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136(85.0)	7(4.4)	17(10.6)	160(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26(70.3)	4(10.8)	7(18.9)	37(100.0)	
계	2,716(73.5)	305(8.2)	676(18.3)	3,697(100.0)	

2)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피해아동 특성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만 13~15세의 연령에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603건(22.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10~12세가 560건(20.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체 피해아동 연령을 나타낸 <표 4-2>에서와 동일한 분포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 중 1세미만 연령에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236건(8.7%),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58건(3.9%)으로 영아 신고비율이 신고의무자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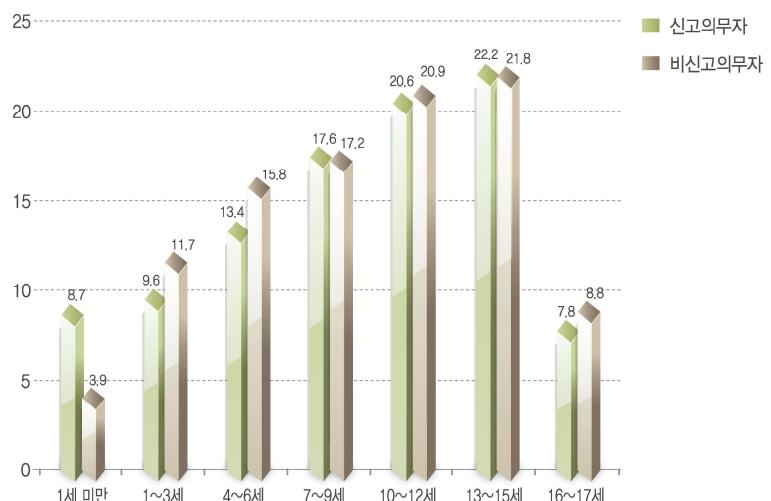
이는 특히 영아의 경우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어려운 만큼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을 활용하여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 연령	1세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신고의무자	236(8.7)	262(9.6)	364(13.4)	479(17.6)	560(20.6)	603(22.2)	212(7.8)	2,716(100.0)
비신고의무자	158(3.9)	477(11.7)	643(15.8)	701(17.2)	854(20.9)	889(21.8)	358(8.8)	4,080(100.0)
계	394(5.8)	739(10.9)	1,007(14.8)	1,180(17.4)	1,414(20.8)	1,492(22.0)	570(8.4)	6,796(100.0)

(단위 : %)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본 결과, 교원에 의한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15세 아동이 200건(33.2%), 만 10~12세 아동이 187건(31%)으로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에 의한 신고사례 중에서는 만 13~15세가 55건(40.4%)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았다.

의료인에 의한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연령은 만 1세 미만에서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령기 아동이 주로 학교 또는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에 반해 영아의 경우 유일하게 학대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병원이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시켜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아동 연령은 만 4~6세의 경우, 유치원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에 의해 발견된 신고사례 비율이 각각 60%, 39.1%로 높았으며 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신고의무자 교육 시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안 제작이 필요하다.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신고자유형 \ 연령	1세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교원	2(0.3)	2(0.3)	23(3.8)	118(19.6)	187(31.0)	200(33.2)	71(11.8)	603(100.0)
의료인	17(28.8)	2(3.4)	7(11.9)	9(15.3)	8(13.6)	15(25.4)	1(1.7)	59(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9(3.9)	13(5.7)	33(14.5)	65(28.5)	59(25.9)	40(17.5)	9(3.9)	228(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0(0.0)	0(0.0)	4(66.7)	1(16.7)	0(0.0)	0(0.0)	1(16.7)	6(100.0)
보육교직원	5(3.3)	52(34.4)	59(39.1)	17(11.3)	14(9.3)	3(2.0)	1(0.7)	151(100.0)
유치원종사자	0(0.0)	1(6.7)	9(60.0)	4(26.7)	1(6.7)	0(0.0)	0(0.0)	15(100.0)
학원강사	0(0.0)	0(0.0)	1(25.0)	0(0.0)	1(25.0)	2(50.0)	0(0.0)	4(100.0)
소방구급대원	2(22.2)	5(55.6)	1(11.1)	0(0.0)	0(0.0)	0(0.0)	1(11.1)	9(100.0)
응급구조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의료기사	0(0.0)	5(83.3)	1(16.7)	0(0.0)	0(0.0)	0(0.0)	0(0.0)	6(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0(0.0)	1(16.7)	0(0.0)	0(0.0)	2(33.3)	1(16.7)	2(33.3)	6(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0(0.0)	0(0.0)	5(8.8)	9(15.8)	13(22.8)	25(43.9)	5(8.8)	57(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3(23.1)	4(30.8)	1(7.7)	2(15.4)	1(7.7)	2(15.4)	0(0.0)	13(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7(4.2)	24(14.5)	25(15.2)	32(19.4)	22(13.3)	38(23.0)	17(10.3)	165(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6(23.3)	95(12.6)	98(13.0)	100(13.3)	127(16.8)	119(15.8)	39(5.2)	754(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0)	8(7.7)	23(22.1)	35(33.7)	22(21.2)	11(10.6)	4(3.8)	104(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3.8)	32(11.0)	57(19.5)	55(18.8)	57(19.5)	57(19.5)	23(7.9)	292(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0(0.0)	3(25.0)	3(25.0)	1(8.3)	3(25.0)	2(16.7)	0(0.0)	12(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0.0)	5(35.7)	2(14.3)	3(21.4)	2(14.3)	2(14.3)	0(0.0)	14(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0(0.0)	6(37.5)	5(31.3)	4(25.0)	1(6.3)	0(0.0)	0(0.0)	16(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3(7.5)	3(7.5)	1(2.5)	4(10.0)	8(20.0)	14(35.0)	7(17.5)	40(100.0)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0(0.0)	1(0.7)	6(4.4)	17(12.5)	29(21.3)	55(40.4)	28(20.6)	136(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자활센터 종사자	0(0.0)	0(0.0)	0(0.0)	3(11.5)	3(11.5)	17(65.4)	3(11.5)	26(100.0)
계	236(8.7)	262(9.6)	364(13.4)	479(17.6)	560(20.6)	603(22.2)	212(7.8)	2,716(100.0)

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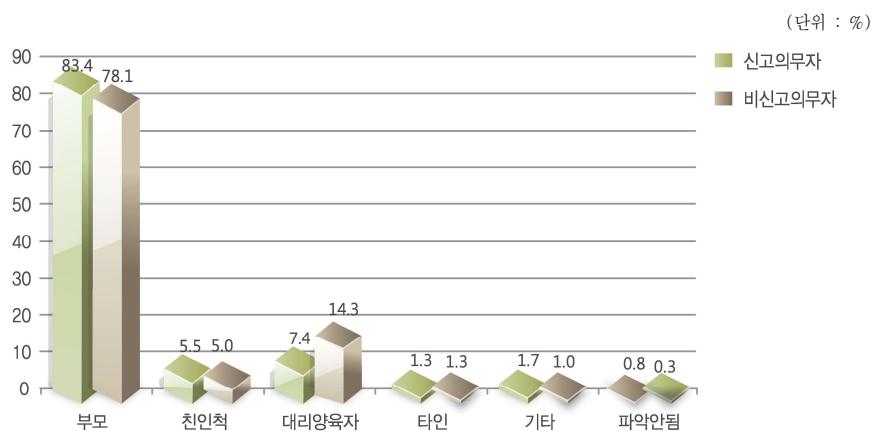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부모 비율이 83.4%, 친인척 5.5%, 대리양육자 7.4%, 타인 1.3%를 차지하고 있다. 비신고의무자 사례 중 부모 비율은 78.1%, 친인척 5.0%, 대리양육자 14.3%, 타인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대리양육자 및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신고자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부모	친부	1,116 (41.1)	1,674 (41.0)
	친모	1,040 (38.3)	1,343 (32.9)
	계부	42 (1.5)	66 (1.6)
	계모	55 (2.0)	89 (2.2)
	양부	4 (0.1)	10 (0.2)
	양모	9 (0.3)	6 (0.1)
	소계	2,266 (83.4)	3,188 (78.1)
친인척	친조부	29 (1.1)	29 (0.7)
	친조모	32 (1.2)	47 (1.2)
	외조부	3 (0.1)	5 (0.1)
	외조모	16 (0.6)	14 (0.3)
	친인척	53 (2.0)	97 (2.4)
	형제, 자매	16 (0.6)	10 (0.2)
	소계	149 (5.5)	202 (5.0)
대리 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32 (1.2)	54 (1.3)
	유치원교사, 교직원	2 (0.1)	51 (1.3)
	교원	2 (0.1)	26 (0.6)
	학원 강사	0 (0.0)	11 (0.3)
	보육교직원	50 (1.8)	152 (3.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8 (4.0)	254 (6.2)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2 (0.1)	25 (0.6)
	베이비시터	1 (0.0)	3 (0.1)
	위탁부	1 (0.0)	1 (0.0)
	위탁모	3 (0.1)	8 (0.2)
	소계	201 (7.4)	585 (14.3)
타인	이웃	18 (0.7)	33 (0.8)
	낯선사람	16 (0.6)	18 (0.4)
	소계	34 (1.3)	51 (1.3)
기타		45 (1.7)	40 (1.0)
파악안됨		21 (0.8)	14 (0.3)
계		2,716 (100.0)	4,080 (100.0)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비율이 높았다.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장소 신고자유형	(단위: 건, %)															
	가정내	집근처 또는 친인척의 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숙박업소	종교 시설	폐악 인됨	기타	계	
신고의무자	2,218 (81.7)	31 (1.1)	20 (0.7)	7 (0.3)	65 (2.4)	0 (0.0)	9 (0.3)	0 (0.0)	16 (0.6)	123 (4.5)	10 (0.4)	15 (0.6)	9 (0.3)	7 (0.3)	186 (6.8)	2,716 (100.0)
비신고의무자	3,346 (82.0)	52 (1.3)	33 (0.8)	7 (0.2)	167 (4.1)	36 (0.9)	31 (0.8)	13 (0.3)	35 (0.9)	256 (6.3)	5 (0.1)	22 (0.5)	5 (0.1)	67 (0.1)	4,080 (100.0)	
계	5,564 (81.9)	83 (1.2)	53 (0.8)	14 (0.2)	232 (3.4)	36 (0.5)	40 (0.6)	13 (0.2)	51 (0.8)	379 (5.6)	15 (0.2)	37 (0.5)	14 (0.2)	12 (0.2)	253 (3.7)	6,796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사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1건(13.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사례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45건(19.7%),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사례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사례가 5건(38.5%)으로 나타나 동일한 직군의 종사자가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시설의 폐쇄성, 신고자 신변노출 위험 등으로 인해

학대가 발견되더라도 신고되기가 어렵다. 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고자 비밀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위협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표 5-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	발생장소	가정내	(단위: 건, %)													
			집근처 또는 길가	천적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복지 시설	기타복지 시설	숙박업소	종교시설	파악안됨	기타
교원	571 (94.7)	7 (1.2)	7 (1.2)	1 (0.2)	0 (0.0)	0 (0.0)	2 (0.3)	0 (0.0)	0 (0.0)	1 (0.2)	0 (0.0)	4 (0.7)	6 (1.0)	1 (0.2)	3 (0.5)	603 (100.0)
의료인	51 (86.4)	2 (3.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5.1)	0 (0.0)	0 (0.0)	0 (0.0)	2 (3.4)	1 (1.7)	59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66 (72.8)	1 (0.4)	2 (0.9)	0 (0.0)	1 (0.4)	0 (0.0)	1 (0.4)	0 (0.0)	1 (0.4)	45 (19.7)	1 (0.4)	1 (0.4)	0 (0.0)	0 (0.0)	9 (3.9)	228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보육교직원	128 (84.8)	0 (0.0)	0 (0.0)	1 (0.7)	21 (13.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151 (100.0)
유치원 종사자	1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소방구급대원	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5 (8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6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1 (89.5)	2 (3.5)	1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2 (3.5)	57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7 (53.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7)	4 (30.8)	0 (0.0)	0 (0.0)	0 (0.0)	1 (7.7)	13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45 (87.9)	5 (3.0)	3 (1.8)	0 (0.0)	0 (0.0)	0 (0.0)	6 (3.6)	0 (0.0)	0 (0.0)	2 (1.2)	2 (1.2)	0 (0.0)	0 (0.0)	2 (1.2)	165 (100.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15 (68.3)	10 (1.3)	5 (0.7)	3 (0.4)	13 (1.7)	0 (0.0)	0 (0.0)	0 (0.0)	6 (0.8)	28 (3.7)	2 (0.3)	6 (0.8)	1 (0.1)	3 (0.4)	162 (21.5)	754 (100.0)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51 (49.0)	0 (0.0)	0 (0.0)	0 (0.0)	7 (6.7)	0 (0.0)	0 (0.0)	0 (0.0)	0 (0.0)	46 (44.2)	0 (0.0)	0 (0.0)	0 (0.0)	0 (0.0)	0 (0.0)	104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53 (86.6)	2 (0.7)	2 (0.7)	1 (0.3)	23 (7.9)	0 (0.0)	0 (0.0)	0 (0.0)	6 (2.1)	0 (0.0)	1 (0.3)	0 (0.0)	1 (0.3)	0 (1.0)	3 (1.0)	292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1 (9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1 (8.3)	12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3 (92.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1 (7.1)	14 (100.0)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1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38 (95.0)	1 (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5 (0.0)	0 (0.0)	0 (0.0)	40 (10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32 (97.1)	1 (0.7)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0 (0.0)	1 (0.7)	0 (0.0)	0 (0.0)	0 (0.0)	136 (100.0)
청소년보호센터 및 체활센터 종사자	25 (96.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8)	0 (0.0)	0 (0.0)	0 (0.0)	0 (0.0)	0 (0.0)	26 (100.0)
계	2,218 (81.7)	31 (1.1)	20 (0.7)	7 (0.3)	65 (2.4)	0 (0.0)	9 (0.3)	0 (0.0)	16 (0.6)	123 (4.5)	10 (0.4)	15 (0.6)	9 (0.3)	7 (0.3)	186 (6.8)	2,716 (100.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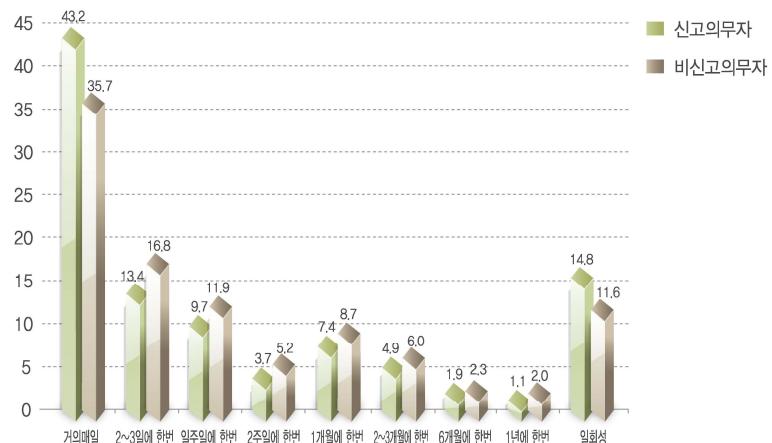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표 5-8>에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발견한 사례 모두 거의 매일 아동학대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는 거의 매일이 43.2%, 2~3일에 한번이 13.4%로 총 5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신고의무자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가 35.7%이고, 2~3일에 한번은 16.8%에 해당하여 총 52.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학대 노출 빈도가 높은 아동학대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빈도 신고자유형	거의 매일	2~3일 에 한번	일주일 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 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173 (43.2)	365 (13.4)	263 (9.7)	100 (3.7)	200 (7.4)	132 (4.9)	51 (1.9)	30 (1.1)	402 (14.8)	2,716 (100.0)
비신고의무자	1,456 (35.7)	684 (16.8)	484 (11.9)	211 (5.2)	354 (8.7)	243 (6.0)	95 (2.3)	81 (2.0)	472 (11.6)	4,080 (100.0)
계	2,629 (38.7)	1,049 (15.4)	747 (11.0)	311 (4.6)	554 (8.2)	375 (5.5)	146 (2.1)	111 (1.6)	874 (12.9)	6,796 (100.0)

(단위 : %)



<그림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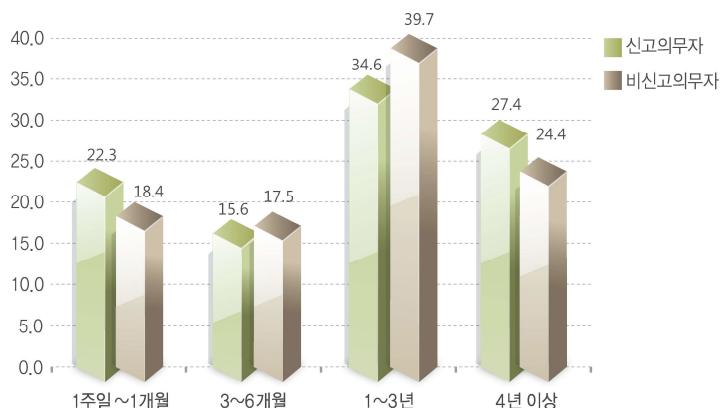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1주일에서 1개월 이전 발생한 아동학대 중 신고의무자는 607건(22.3%), 비신고의무자는 751건(18.4%)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발생 시기가 1주일~1개월, 3~6개월까지의 사례 발견에 있어서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비신고의무자보다 학대를 빨리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4년 이상 된 학대발생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745건(27.4%), 비신고의무자는 995건(24.4%)으로 나타나 전체 학대발생시기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즉, 이는 학대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비로소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대행위가 만성적이 될 경우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통해 초기에 신고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표 5-9>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1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신고의무자	607(22.3)	424(15.6)	940(34.6)	745(27.4)	2,716(100.0)
비신고의무자	751(18.4)	715(17.5)	1,619(39.7)	995(24.4)	4,080(100.0)
계	1,358(20.0)	1,139(16.8)	2,559(37.7)	1,740(25.6)	6,796(100.0)

(단위 : %)



<그림 5-5>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방임이 1,418건 (35.3%)으로 가장 높았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2,542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의 경우 1,418건(35.3%)으로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 1,430건(2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의 유형 및 방임 아동의 특성에 대한 신고의무자 직군의 이해가 비신고의무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임은 학대유형의 특성 상 발견이 어렵고 외부로 노출되기가 어려우므로 비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방임도 다른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라는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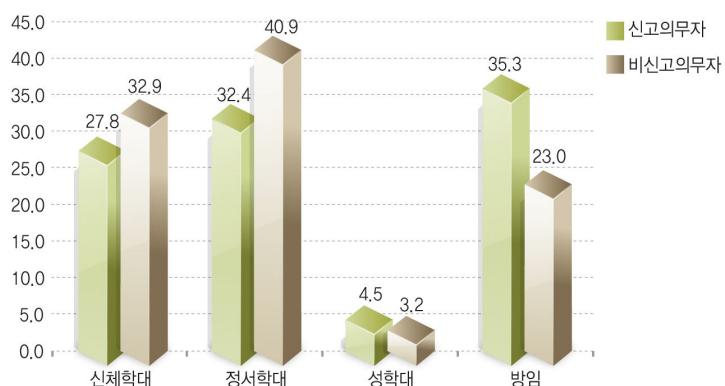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유형 신고자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고의무자	1,116(27.8)	1,301(32.4)	181(4.5)	1,418(35.3)	4,016(100.0)
비신고의무자	2,044(32.9)	2,542(40.9)	199(3.2)	1,430(23.0)	6,215(100.0)
계	3,160(30.9)	3,843(37.6)	380(3.7)	2,848(27.8)	10,231(100.0)

*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다음은 신고의무자 유형별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임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아 대부분 신고의무자 직군에서도 방임 발견율이 제일 높았다.

신체학대 발견율은 학원 강사 57.1%, 유치원 종사자 43.5%, 의료인 43.0%, 교직원 37.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2.8%, 보육교직원 26.7%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47.9%,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47.1%,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5.0%,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42.5%,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35.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4.9%의 발견율을 보였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의 경우 성학대 발견율이 각각 37.7%, 28.6%로 다른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1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교원	365(37.5)	353(36.2)	62(6.4)	194(19.9)	974(100.0)	
의료인	34(43.0)	19(24.1)	4(5.1)	22(27.8)	79(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1(32.8)	118(34.9)	19(5.6)	90(26.6)	338(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33.3)	1(16.7)	0(0.0)	3(50.0)	6(100.0)	
보육교직원	60(26.7)	59(26.2)	8(3.6)	98(43.6)	225(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10(43.5)	6(26.1)	0(0.0)	7(30.4)	23(100.0)	
학원 강사	4(57.1)	2(28.6)	0(0.0)	1(14.3)	7(100.0)	
소방구급대원	4(36.4)	2(18.2)	0(0.0)	5(45.5)	11(100.0)	
응급구조사	0(0.0)	0(0.0)	0(0.0)	0(0.0)	0(100.0)	
의료기사	2(28.6)	2(28.6)	0(0.0)	3(42.9)	7(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0(0.0)	2(28.6)	2(28.6)	3(42.9)	7(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6(20.8)	20(26.0)	29(37.7)	12(15.6)	77(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4(18.2)	7(31.8)	0(0.0)	11(50.0)	22(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85(32.6)	125(47.9)	11(4.2)	40(15.3)	261(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6(14.9)	218(22.2)	10(1.0)	608(61.9)	982(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5(22.0)	51(32.1)	3(1.9)	70(44.0)	159(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27.2)	157(35.6)	18(4.1)	146(33.1)	441(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6(30.0)	9(45.0)	2(10.0)	3(15.0)	20(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6.7)	1(6.7)	1(6.7)	12(80.0)	15(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23.8)	8(38.1)	0(0.0)	8(38.1)	21(100.0)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13(21.0)	20(32.3)	4(6.5)	25(40.3)	62(100.0)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74(32.5)	97(42.5)	8(3.5)	49(21.5)	228(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19(37.3)	24(47.1)	0(0.0)	8(15.7)	51(100.0)	
계	1,116(27.8)	1,301(32.4)	181(4.5)	1,418(35.3)	4,016(100.0)	

* 중복포함

6)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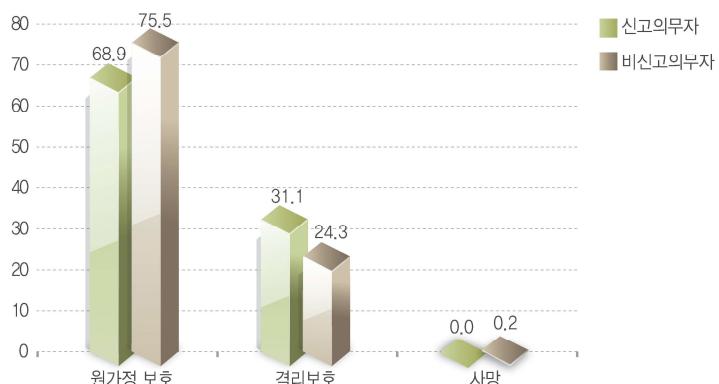
<표 5-12>에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격리보호가 31.1%인 반면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에서는 격리보호가 24.3%로 나타나 신고의무자 신고사례가 격리보호로 초기 보호조치되는 비율이 6.8%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심각한 아동학대를 발견·신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격리보호를 통해 초기 아동보호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신고자유형 \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계
신고의무자	1,870 (68.9)	845 (31.1)	1 (0.0)	2,716 (100.0)
비신고의무자	3,080 (75.5)	993 (24.3)	7 (0.2)	4,080 (100.0)
계	4,950 (72.8)	1,838 (27.0)	8 (0.1)	6,796 (100.0)

(단위 : %)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대행위자를 지속관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신고자유형 \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및 고발	만나지 못함	계
신고의무자	1,989 (73.2)	157 (5.8)	184 (6.8)	386 (14.2)	2,716 (100.0)
비신고의무자	3,231 (79.2)	215 (5.3)	360 (8.8)	274 (6.7)	4,080 (100.0)
계	5,220 (76.8)	372 (5.5)	544 (8.0)	660 (9.7)	6,796 (100.0)

(단위 : %)



<그림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7)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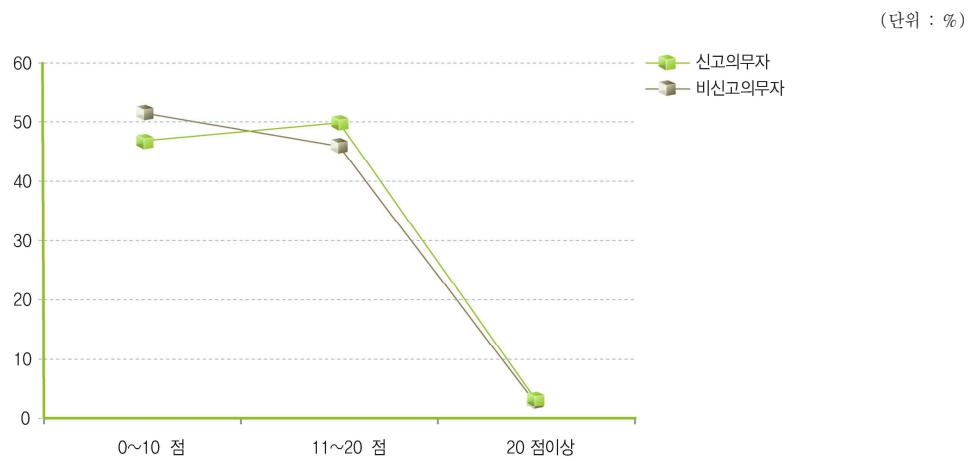
가.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를 살펴보았다. 위험사정척도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사정하여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들의 위험사정척도 점수가 비신고의무자들에 비교할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위험사정척도 11점 이상이 1,441건(53.0%)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위험사정척도 11점 이상이 1,978건(48.5%)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들이 더 위험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위험요인이 높은 학대사례를 더 잘 발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4>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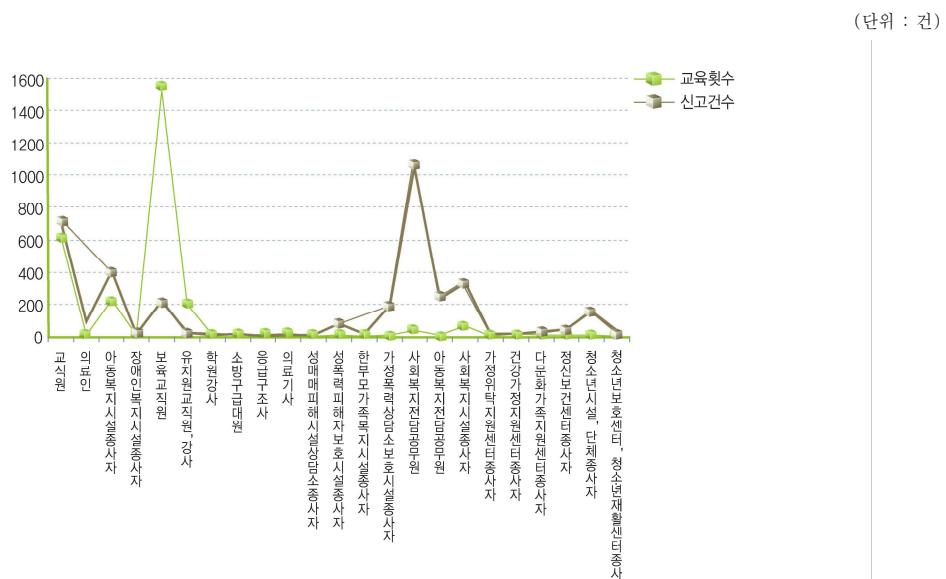
신고자유형	점수	0~10점	11~20점	20점 이상	계
신고의무자	1,275 (46.9)	1,356 (49.9)	85 (3.1)	2,716 (100.0)	
비신고의무자	2,102 (51.5)	1,873 (45.9)	105 (2.6)	4,080 (100.0)	
계	3,377 (49.7)	3,229 (47.5)	190 (2.8)	6,796 (100.0)	



<그림 5-9>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별 위험사정척도 점수

나.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횟수가 높을수록 신고 건수도 높아지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교육횟수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자 신변 노출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낮은 교육 횟수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과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 신고의무자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된 바 아동학대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0> 신고의무자군 교육횟수에 따른 신고건수

2

재학대 사례



본 장에서는 2013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2013년의 재학대 사례는 총 980건이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6,796건 대비 980건(14.4%)이었다.

<표 5-15>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

재학대 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980	14.4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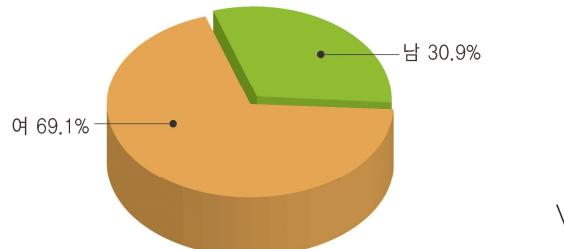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아 677건(69.1%), 남아 303건(30.9%)으로 피해아동 중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2.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작년의 수치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303 (30.9)
여	677 (69.1)
계	980 (100.0)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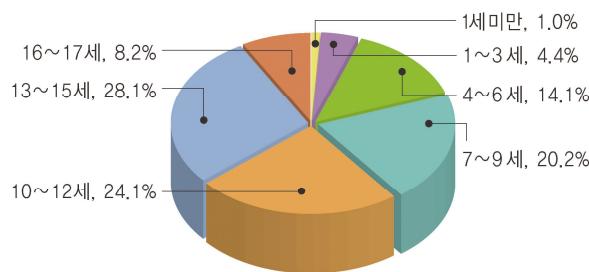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3~15세가 27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36건(24.1%), 만 7~9세가 198건(20.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비율이 높다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에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대비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이 다른 연령의 아동에 비해 학대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연령(만)	건 수 (비율)
1세 미만	10 (1.0)
1~3세	43 (4.4)
4~6세	138 (14.1)
7~9세	198 (20.2)
10~12세	236 (24.1)
13~15세	275 (28.1)
16~17세	80 (8.2)
계	980 (100.0)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Rereporting and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Finding from NC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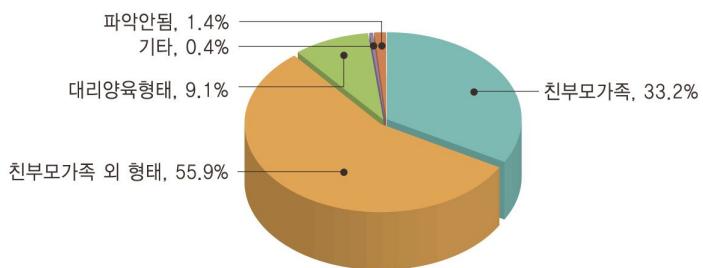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325건(33.2%), 친부모가족 외 형태 548건(55.9%), 대리양육형태 89건(9.1%), 기타 4건(0.4%), 파악 안 됨 14건(1.4%)이었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413건(42.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1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임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325	217	174	22	59	38	37	1	548	6	4	79	89	4	14	980
(33.2)	(22.1)	(17.8)	(2.2)	(6.0)	(3.9)	(3.8)	(0.1)	(55.9)	(0.6)	(0.4)	(8.1)	(9.1)	(0.4)	(1.4)	(100.0)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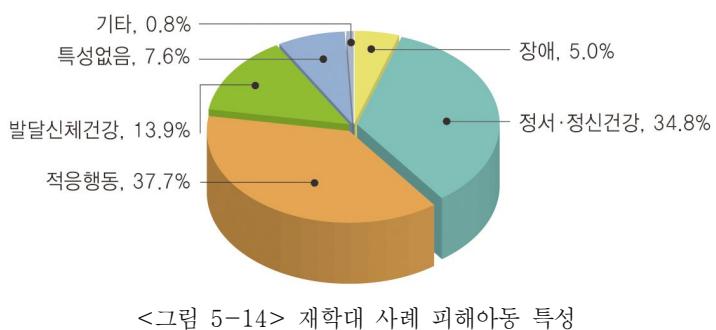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은 <표 5-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적응·행동 특성이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34.8%이었다.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적응·행동 특성에서는 학습문제 5.4%, 반항·충동·공격성이 5.2%, 거짓말이 4.2%로 나타났으며, 정서정신 건강 특성으로는 불안 6.5%, 주의산만 5.6%, 낮은 자아존중감 4.1%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5-1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 성		건수 (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16(0.6)
	정신적 장애	64(2.3)
	장애의심	63(2.2)
	소계	143(5.0)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60(5.6)
	과잉행동	86(3.0)
	인터넷(게임)중독	37(1.3)
	불안	184(6.5)
	애착문제	91(3.2)
	무력감	85(3.0)
	우울	85(3.0)
	낮은 자아존중감	116(4.1)
	성격 및 기질문제	84(3.0)
	탐식 및 결식	62(2.2)
적응·행동	소계	990(34.8)
	반항·충동·공격성	147(5.2)
	거짓말	119(4.2)
	도벽	89(3.1)
	가출	96(3.4)
	흡연·음주	60(2.1)
	성문제	31(1.1)
	학교 부적응	96(3.4)
	잦은 결식, 무단 결과	86(3.0)
	늦은 귀가	73(2.6)
발달·신체건강	학습문제	154(5.4)
	폭력행동	35(1.2)
	비행집단활동	20(0.7)
	불건전한 또래관계	34(1.2)
	대인관계 기피	32(1.1)
	소계	1,072(37.7)
	신체발달지연	44(1.5)
	언어문제	87(3.1)
	영양결핍	46(1.6)
	대소변문제	21(0.7)
특성 없음	위생문제	156(5.5)
	턱(음성,신체,뚜렷)	5(0.2)
	잦은 병치료, 허약	10(0.4)
	주요병력	26(0.9)
기타	소계	395(13.9)
	특성 없음	217(7.6)
	기타	23(0.8)
계		2,841(100.0)

* 중복포함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본 절에서는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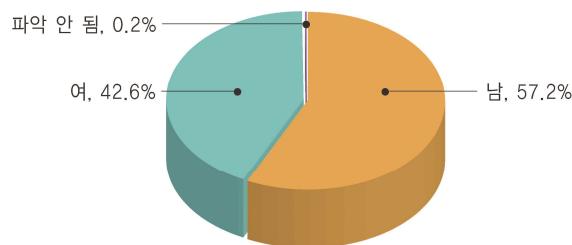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표 5-20>에는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남성은 561건(57.2%), 여성은 417건(42.6%), 그리고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2건(0.2%)으로 조사되었다.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성별	건수 (비율)
남	561 (57.2)
여	417 (42.6)
파악 안 됨	2 (0.2)
계	980 (100.0)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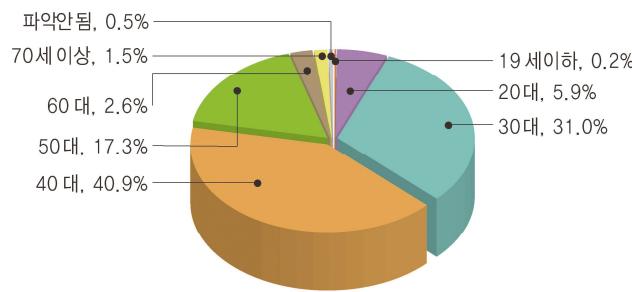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은 40대가 401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304건(31.0%)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30~40대(71.9%)로 나타났다.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만)	건수 (비율)
19세 이하	2 (0.2)
20~29세	58 (5.9)
30~39세	304 (31.0)
40~49세	401 (40.9)
50~59세	170 (17.3)
60~69세	25 (2.6)
70세 이상	15 (1.5)
파악 안 됨	5 (0.5)
계	980 (100.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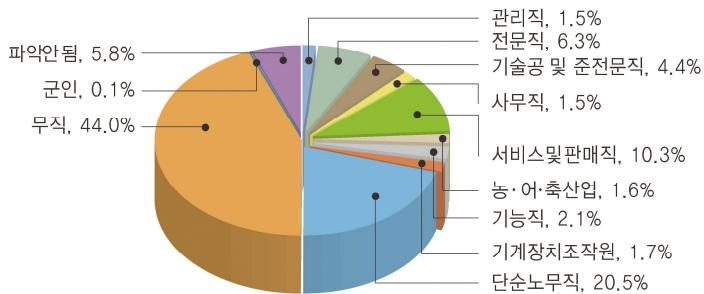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이 431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이 201건(20.5%), 서비스 및 판매직 101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건, %)

직업	건수 (비율)
관리직	15 (1.5)
전문직	62 (6.3)
기술공 및 준전문직	43 (4.4)
사무직	15 (1.5)
서비스 및 판매직	101 (10.3)
농어축산업	16 (1.6)
기능직	21 (2.1)
기계장치조작원	17 (1.7)
단순노무직	201 (20.5)
무직	431 (44.0)
군인	1 (0.1)
파악 안 됨	57 (5.8)
계	980 (100.0)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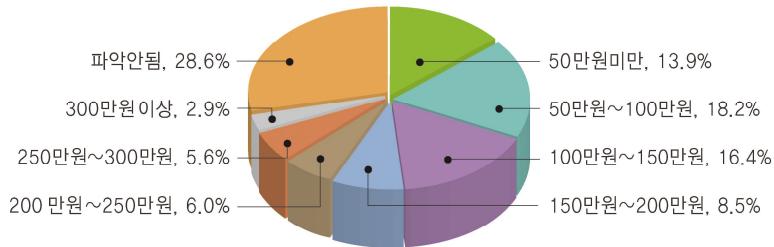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178건 (18.2%),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161건(16.4%), 50만 원 미만이 136건(13.9%)으로 평균되었으나,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28건(2.9%)으로 집계되어 학대행위자 가운데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건, %)

소득	건수 (비율)
50만 원 미만	136 (13.9)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78 (18.2)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61 (16.4)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3 (8.5)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59 (6.0)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5 (5.6)
300만 원 이상	28 (2.9)
파악 안 됨	280 (28.6)
계	9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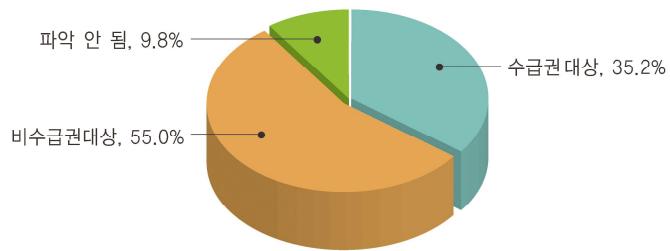
<그림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5-24>를 통해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가 제시되었다. 세부적 유형을 살펴보면 비수급권 대상자는 539건(55.0%), 수급권 대상자는 345건(35.2%)으로 나타났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는 96건(9.8%)에 해당한다.

<표 5-2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수급권 대상	(단위: 건, %)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345	(35.2)
비수급권 대상	539	(55.0)
파악 안 됨	96	(9.8)
계	980	(100.0)



<그림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113건(31.5%)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808건(22.8%), 부부 및 가족갈등 282건(8.0%)으로 나타났다.

<표 5-2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특성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38 (1.1)
정신적 장애	42 (1.2)
장애 의심	57 (1.6)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113 (31.5)
중독문제	236 (6.7)
질환문제	31 (0.9)
성격 및 기질문제	258 (7.3)
위생문제	103 (2.9)
나태 및 무기력	58 (1.6)
난독해, 난작문	6 (0.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808 (22.8)
어릴 적 학대 경험	85 (2.4)
폭력성	139 (3.9)
전과력	47 (1.3)
성문제	46 (1.3)
원치 않은 아동	35 (1.0)
부부 및 가족 갈등	282 (8.0)
종교문제	10 (0.3)
특성 없음	96 (2.7)
파악안됨	47 (1.3)
계	3,537 (100.0)

*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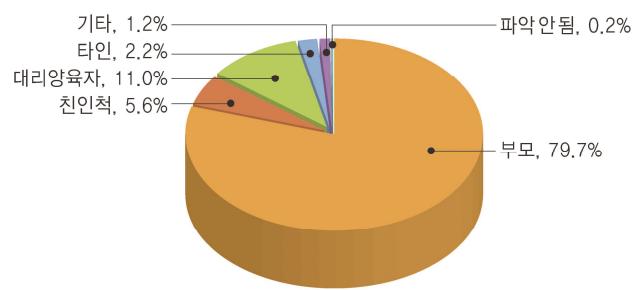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 중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781건(7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대리 양육자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각각 108건(11.0%), 55건(5.6%)이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중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80건(8.2%)이었다.

<표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계	건수 (비율)
부모	친부	415(42.3)
	친모	321(32.8)
	계부	15(1.5)
	계모	29(3.0)
	양부	1(0.1)
	소계	781(79.7)
친인척	친조부	5(0.5)
	친조모	14(1.4)
	외조부	2(0.2)
	외조모	8(0.8)
	친인척	20(2.0)
	형제·자매	6(0.6)
대리양육자	소계	55(5.6)
	부모의 동거인	16(1.6)
	교직원	2(0.2)
	학원강사	1(0.1)
	보육·교직원	6(0.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4(7.6)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6(0.6)
	위탁모	3(0.3)
타인	소계	108(11.0)
	이웃	15(1.5)
	낯선 사람	7(0.7)
기타	소계	22(2.2)
	파악 안 됨	12(1.2)
	계	980(100.0)



<그림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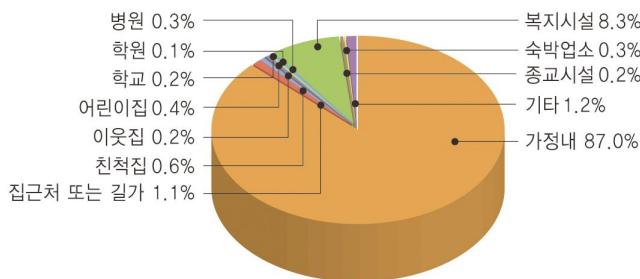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853건(8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발생 장소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27>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837(85.4)
	학대행위자 가정 내	16(1.6)
	소계	853(87.0)
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11(1.1)
	친척집	6(0.6)
	이웃집	2(0.2)
	어린이집	4(0.4)
	학교	2(0.2)
	학원	1(0.1)
	병원	3(0.3)
숙박업소	아동복지시설	78(8.0)
	기타복지시설	3(0.3)
	소계	81(8.3)
종교시설	숙박업소	3(0.3)
	종교시설	2(0.2)
	기타	12(1.2)
계		980(100.0)



<그림 5-21>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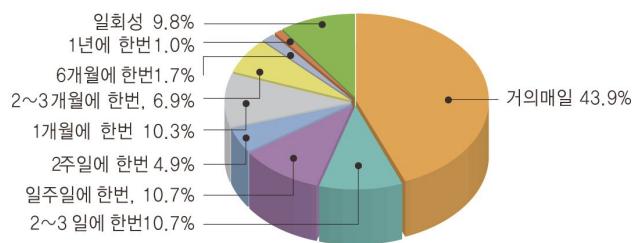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표 5-28>를 통해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30건(43.9%)이며 2~3일에 한 번과 일주일에 한 번 일어난 학대가 105건(10.7%), 1개월에 한 번 101건(10.3%)으로 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28>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빈도	건수 (비율)
거의 매일	430 (43.9)
2~3일에 한 번	105 (10.7)
일주일에 한 번	105 (10.7)
2주일에 한 번	48 (4.9)
1개월에 한 번	101 (10.3)
2~3개월에 한 번	68 (6.9)
6개월에 한 번	17 (1.7)
1년에 한 번	10 (1.0)
일회성	96 (9.8)
계	9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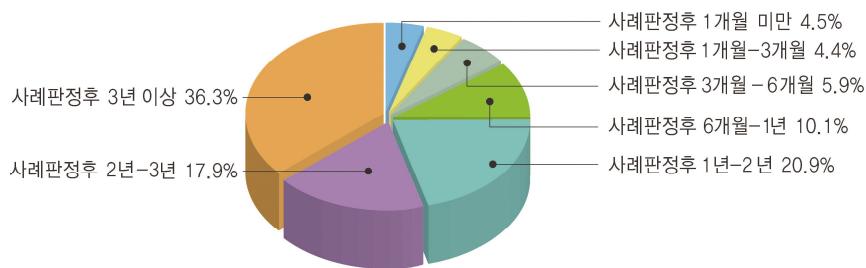
<그림 5-22>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사례판정 후 3년 이상이 356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판정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05건(20.9%), 2년에서 3년이 175건(17.9%)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재학대 사례의 75.1%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정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판정 후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및 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표 5-29>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발생시기	건수 (비율)	(단위: 건, %)
사례판정 후 1개월 미만	44 (4.5)	
사례판정 후 1개월~3개월	43 (4.4)	
사례판정 후 3개월~6개월	58 (5.9)	
사례판정 후 6개월~1년	99 (10.1)	
사례판정 후 1년~2년	205 (20.9)	
사례판정 후 2년~3년	175 (17.9)	
사례판정 후 3년 이상	356 (36.3)	
계	980 (100.0)	



<그림 5-23>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표 5-30>에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최초 학대발생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에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응행동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3개월에서 6개월에서는 정서정신건강이 85건(41.9%), 적응행동이 76건(3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개월에서 3개월의 경우 68건(41.7%), 59건(36.2%), 6개월에서 1년은 122건(40.7%), 119건(39.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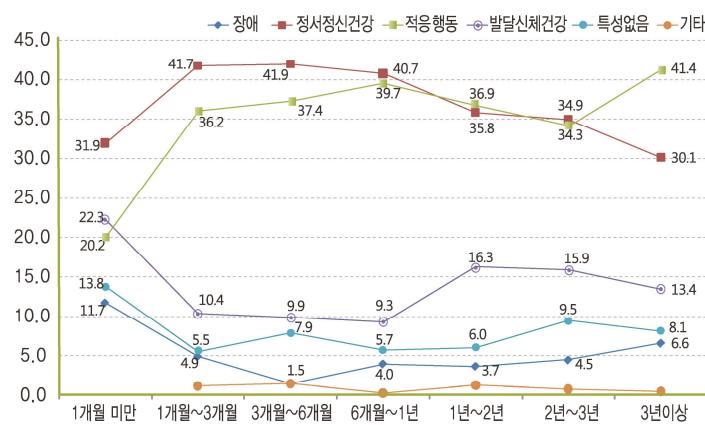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할 때 공격성, 반항, 충동 등의 적응행동특성과 우울, 불안 등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학대 피해아동의 특성이 재학대 발생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표 5-30>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장애	신체적 장애	0(0.0)	0(0.0)	1(0.5)	0(0.0)	1(0.2)	4(0.8)	10(1.0)	
	정신적 장애	4(4.3)	2(1.2)	1(0.5)	6(2.0)	12(1.9)	9(1.9)	30(3.1)	
	장애 의심	7(7.4)	6(3.7)	1(0.5)	6(2.0)	10(1.6)	9(1.9)	24(2.5)	
	소계	11(11.7)	8(4.9)	3(1.5)	12(4.0)	23(3.7)	22(4.5)	64(6.6)	
정서정신 건강	주의산만	7(7.4)	11(6.7)	16(7.9)	13(4.3)	35(5.6)	27(5.6)	51(5.2)	
	과잉행동	2(2.1)	7(4.3)	8(3.9)	8(2.7)	13(2.1)	16(3.3)	32(3.3)	
	인터넷(게임)중독	0(0.0)	0(0.0)	3(1.5)	8(2.7)	5(0.8)	5(1.0)	16(1.6)	
	불안	7(7.4)	14(8.6)	13(6.4)	23(7.7)	46(7.4)	36(7.4)	45(4.6)	
	애착문제	2(2.1)	7(4.3)	9(4.4)	13(4.3)	21(3.4)	16(3.3)	23(2.4)	
	무력감	2(2.1)	8(4.9)	7(3.4)	13(4.3)	24(3.9)	13(2.7)	18(1.8)	
	우울	3(3.2)	3(1.8)	9(4.4)	11(3.7)	24(3.9)	12(2.5)	23(2.4)	
	낮은자아존중감	3(3.2)	7(4.3)	11(5.4)	16(5.3)	27(4.4)	22(4.5)	30(3.1)	
	성격 및 기질문제	2(2.1)	8(4.9)	7(3.4)	12(4.0)	20(3.2)	17(3.5)	18(1.8)	
	탐식 및 결식	2(2.1)	3(1.8)	2(1.0)	5(1.7)	7(1.1)	5(1.0)	38(3.9)	
	소계	30(31.9)	68(41.7)	85(41.9)	122(40.7)	222(35.8)	169(34.9)	294(30.1)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1.1)	10(6.1)	12(5.9)	16(5.3)	28(4.5)	25(5.2)	55(5.6)	
	거짓말	1(1.1)	6(3.7)	7(3.4)	7(2.3)	20(3.2)	9(1.9)	39(4.0)	
	도벽	3(3.2)	5(3.1)	8(3.9)	13(4.3)	16(2.6)	12(2.5)	39(4.0)	
	가출	0(0.0)	2(1.2)	4(2.0)	1(0.3)	11(1.8)	5(1.0)	18(1.8)	
	약물흡연음주	3(3.2)	7(4.3)	6(3.0)	12(4.0)	32(5.2)	18(3.7)	37(3.8)	
	성문제	1(1.1)	2(1.2)	3(1.5)	2(0.7)	8(1.3)	6(1.2)	9(0.9)	
	학교부적응	4(4.3)	9(5.5)	10(4.9)	16(5.3)	29(4.7)	22(4.5)	64(6.6)	
	잦은결석,무단결과	3(3.2)	3(1.8)	1(0.5)	10(3.3)	14(2.3)	13(2.7)	29(3.0)	
	늦은귀가	0(0.0)	3(1.8)	4(2.0)	6(2.0)	7(1.1)	2(0.4)	12(1.2)	
	학습문제	0(0.0)	3(1.8)	2(1.0)	2(0.7)	9(1.5)	7(1.4)	12(1.2)	
	폭력행동	0(0.0)	3(1.8)	4(2.0)	2(0.7)	4(0.6)	3(0.6)	4(0.4)	
	비행집단활동	0(0.0)	1(0.6)	5(2.5)	10(3.3)	19(3.1)	12(2.5)	39(4.0)	
	불건전한또래관계	2(2.1)	2(1.2)	2(1.0)	7(2.3)	9(1.5)	8(1.7)	2(0.2)	
	대인관계기피	1(1.1)	3(1.8)	8(3.9)	15(5.0)	23(3.7)	24(5.0)	45(4.6)	
	소계	19(20.2)	59(36.2)	76(37.4)	119(39.7)	229(36.9)	166(34.3)	404(41.4)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4(4.3)	2(1.2)	1(0.5)	4(1.3)	13(2.1)	8(1.7)	12(1.2)	
	언어문제	5(5.3)	5(3.1)	8(3.9)	6(2.0)	23(3.7)	17(3.5)	23(2.4)	
	영양결핍	6(6.4)	2(1.2)	2(1.0)	2(0.7)	13(2.1)	10(2.1)	11(1.1)	
	대소변문제	0(0.0)	3(1.8)	0(0.0)	0(0.0)	4(0.6)	4(0.8)	10(1.0)	
	위생문제	5(5.3)	4(2.5)	6(3.0)	14(4.7)	41(6.6)	31(6.4)	55(5.6)	
	틱	0(0.0)	0(0.0)	0(0.0)	0(0.0)	1(0.2)	1(0.2)	3(0.3)	
	잦은병치례, 허약	1(1.1)	1(0.6)	0(0.0)	1(0.3)	3(0.5)	2(0.4)	2(0.2)	
	주요병력	0(0.0)	0(0.0)	3(1.5)	1(0.3)	3(0.5)	4(0.8)	15(1.5)	
	소계	21(22.3)	17(10.4)	20(9.9)	28(9.3)	101(16.3)	77(15.9)	131(13.4)	
특성없음		13(13.8)	9(5.5)	16(7.9)	17(5.7)	37(6.0)	46(9.5)	79(8.1)	
기타		0(0.0)	2(1.2)	3(1.5)	1(0.3)	8(1.3)	4(0.8)	5(0.5)	
계		94(100.0)	163(100.0)	203(100.0)	300(100.0)	620(100.0)	484(100.0)	977(100.0)	



<그림 5-24>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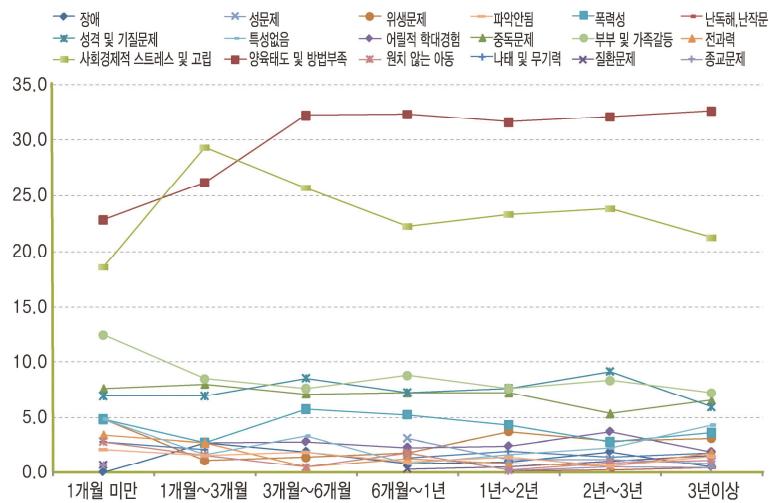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표 5-31>에서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 특성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 5-31>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건, %)

피해아동 특성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신체적 장애	0(0.0)	5(2.7)	4(1.9)	3(0.8)	8(1.0)	12(1.9)	6(0.5)
정신적 장애	0(0.0)	2(1.1)	1(0.5)	8(2.1)	11(1.3)	4(0.6)	16(1.4)
장애의심	3(2.1)	0(0.0)	1(0.5)	2(0.5)	17(2.0)	6(0.9)	28(2.5)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3(22.8)	49(26.1)	68(32.2)	125(32.3)	262(31.6)	208(32.1)	368(32.6)
중독문제	11(7.6)	15(8.0)	15(7.1)	28(7.2)	60(7.2)	34(5.3)	73(6.5)
질환문제	1(0.7)	0(0.0)	0(0.0)	1(0.3)	4(0.5)	7(1.1)	18(1.6)
성격 및 기질문제	10(6.9)	13(6.9)	18(8.5)	28(7.2)	63(7.6)	59(9.1)	67(5.9)
위생문제	7(4.8)	2(1.1)	3(1.4)	7(1.8)	31(3.7)	18(2.8)	35(3.1)
나태 및 무기력	4(2.8)	4(2.1)	0(0.0)	5(1.3)	16(1.9)	9(1.4)	20(1.8)
난독해, 난작문	0(0.0)	0(0.0)	0(0.0)	0(0.0)	1(0.1)	1(0.2)	4(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7(18.6)	55(29.3)	54(25.6)	86(22.2)	193(23.3)	154(23.8)	239(21.2)
어릴적 학대경험	0(0.0)	5(2.7)	6(2.8)	9(2.3)	20(2.4)	24(3.7)	21(1.9)
폭력성	7(4.8)	5(2.7)	12(5.7)	20(5.2)	36(4.3)	18(2.8)	41(3.6)
전파력	5(3.4)	5(2.7)	1(0.5)	5(1.3)	7(0.8)	4(0.6)	20(1.8)
성문제	4(2.8)	3(1.6)	0(0.0)	12(3.1)	10(1.2)	8(1.2)	9(0.8)
원치 않는 아동	4(2.8)	3(1.6)	1(0.5)	7(1.8)	2(0.2)	6(0.9)	12(1.1)
부부 및 가족갈등	18(12.4)	16(8.5)	16(7.6)	34(8.8)	63(7.6)	54(8.3)	81(7.2)
종교문제	1(0.7)	0(0.0)	0(0.0)	0(0.0)	1(0.1)	3(0.5)	5(0.4)
특성없음	7(4.8)	3(1.6)	7(3.3)	3(0.8)	13(1.6)	14(2.2)	49(4.3)
파악안됨	3(2.1)	3(1.6)	4(1.9)	4(1.0)	12(1.4)	4(0.6)	17(1.5)
계	145(100.0)	188(100.0)	211(100.0)	387(100.0)	830(100.0)	647(100.0)	1,129(100.0)



<그림 5-25>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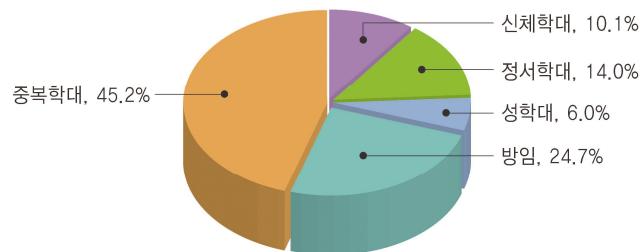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5-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학대 443건(45.2%), 방임 242건(24.7%), 정서학대 137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2>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99(10.1)
정서학대	137(14.0)
성학대	59(6.0)
방임	242(24.7)
중복학대	443(45.2)
계	980(100.0)



<그림 5-2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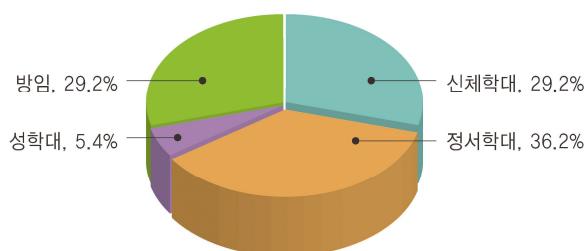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는 총 980건이지만 2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 유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1,506건이었다.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정서학대로 545건(36.2%)이며, 방임과 신체학대는 동일하게 440건(29.2%), 성학대는 81건(5.4%)이었다.

<표 5-3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440 (29.2)
정서학대	545 (36.2)
성 학 대	81 (5.4)
방임	440 (29.2)
계	1,506 (100.0)

* 중복포함



* 중복포함

<그림 5-2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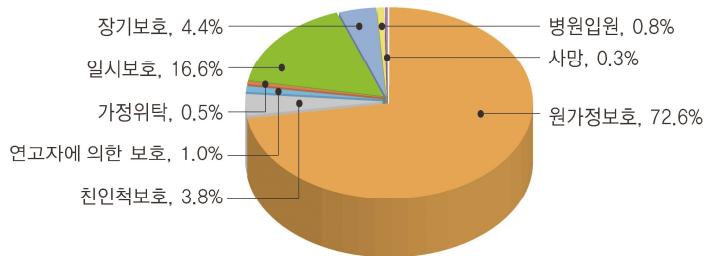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711건(72.6%), 격리보호 266건(27.1%), 사망 3건(0.3%) 순이었으며, 전체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분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계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711 (72.6)	37 (3.8)	10 (1.0)	5 (0.5)	163 (16.6)	43 (4.4)	8 (0.8)	266 (27.1)	3 (0.3)	980 (100.0)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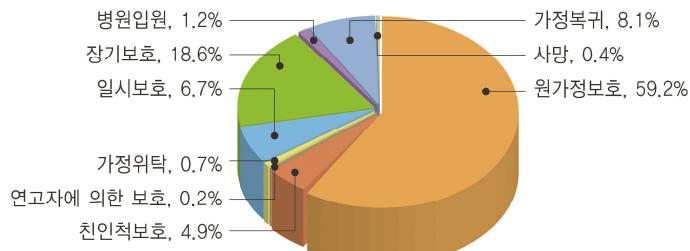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580건(59.2%), 격리보호 317건(32.3%)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격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79건(8.1%), 사망 4건(0.4%)이었다. 한편 전체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와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 시, 원가정 보호율은 전체 피해아동 최종 조치 시 원가정 보호율인 64.4%에 비해 약 5.2% 정도 낮았다. 이는 재학대로 신고된 만큼 가족 내 학대 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학대 재발의 가능성성이 높은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계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580(59.2)	48(4.9)	2(0.2)	7(0.7)	66(6.7)	182(18.6)	12(1.2)	317(32.3)	79(8.1)	980(100.0)



<그림 5-2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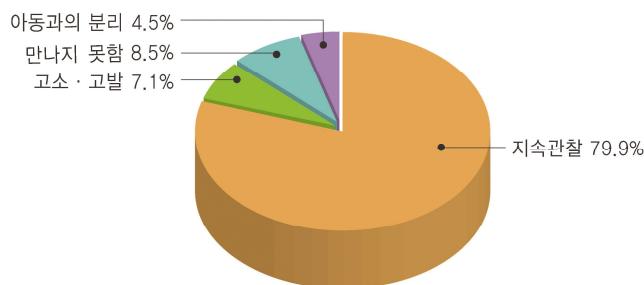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783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83건(8.5%), 고소고발 70건(7.1%), 이동과의 분리 44건(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초기조치의 경우에도 적극적이고 강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재학대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5-3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 결과

(단위: 건, %)

지속관찰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783 (79.9)	70 (7.1)	83 (8.5)	44 (4.5)	980 (100.0)



<그림 5-3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 결과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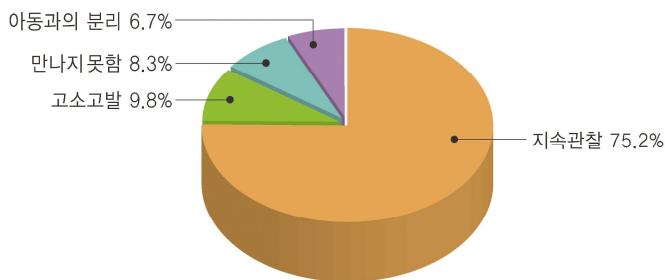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의 경우 지속관찰이 737건(75.2%)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96건(9.8%),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81건(8.3%), 아동과의 분리 66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행위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재학대 사례에 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면담을 거부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 5-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단위: 건, %)

지속관찰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737 (75.2)	96 (9.8)	81 (8.3)	66 (6.7)	980 (100.0)



<그림 5-3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8) 2012/2013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재학대의 발생요인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2012년 및 2013년 동안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들 중에서 재발생 여부를 조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중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 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격리보호 비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격리보호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아동의 경우 1차 학대의 결과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에 학대가 재발생했기 때문에 격리보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38>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단위 :건, %)

조치결과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원가정보호			
초기조치결과	격리 보호	친족보호	815(6.4)	23(5.2)
		연고자에 의한 보호	143(1.1)	11(2.5)
		가정위탁	23(0.2)	2(0.5)
		일시보호	1,935(15.2)	103(23.3)
		장기보호	460(3.6)	29(6.5)
		병원입원	146(1.1)	4(0.9)
		기타	1(0.0)	0(0.0)
		소계	3,523(27.6)	172(38.8)
	사망		11(0.1)	2(0.5)
		가정복귀	0(0.0)	0(0.0)
	계		12,756(100.0)	443(100.0)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8,214(64.4)	241(54.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29(8.1)	29(6.5)
		가정위탁	90(0.7)	3(0.7)
		일시보호	53(0.4)	3(0.7)
		장기보호	839(6.6)	49(11.1)
		병원입원	1,622(12.7)	87(19.6)
		기타	73(0.6)	3(0.7)
		소계	1(0.0)	0(0.0)
	사망		3,707(29.1)	174(39.3)
		가정복귀	29(0.2)	3(0.7)
	계		806(6.3)	25(5.6)
	12,756(100.0)		443(10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계부와 계모, 이웃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는 재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초기 발견 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학대 사례 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5-39>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단위 : 건, %)

관계	재학대 여부	재학대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부모	친부	5,611(44.0)	192(43.3)
	친모	4,359(34.2)	114(25.7)
	계부	170(1.3)	12(2.7)
	계모	281(2.2)	14(3.2)
	양부	36(0.3)	1(0.2)
	양모	34(0.3)	0(0.0)
	소계	10,491(82.2)	333(75.2)
친인척	친조부	131(1.0)	1(0.2)
	친조모	171(1.3)	12(2.7)
	외조부	21(0.2)	1(0.2)
	외조모	78(0.6)	0(0.0)
	친인척	311(2.4)	14(3.2)
	형제,자매	41(0.3)	5(1.1)
	소계	753(5.9)	33(7.4)
대리양육자	부모의동거인	149(1.2)	12(2.7)
	유치원종사자	84(0.7)	0(0.0)
	교원	43(0.3)	1(0.2)
	학원및교습소종사자	47(0.4)	1(0.2)
	보육교직원	310(2.4)	2(0.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40(3.4)	21(4.7)
	기타복지시설종사자	45(0.4)	2(0.5)
	위탁부	2(0.0)	0(0.0)
	위탁모	14(0.1)	0(0.0)
	베이비시터	10(0.1)	0(0.0)
	소계	1,144(9.0)	20(4.5)
타인	이웃	90(0.7)	21(4.7)
	낯선사람	72(0.6)	10(2.3)
	소계	162(1.3)	31(7.0)
기타	기타	149(1.2)	6(1.4)
	파악안됨	57(0.4)	1(0.2)
	계	12,756(100.0)	443(100.0)

다. 가족유형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 비율이 재학대사례에서 47.2%로 재학대미발생사례 37.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Hamilton, C. E. & Browne, K. D. (1999). Recurrence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 A survey of referrals to Police Child Protection Units in England. *Child Maltreatment*, 4(4), 275-286.

시설보호에서도 재학대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표 5-40> 2012/2013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단위 : 건, %)

가족유형	재학대 여부	재학대미발생사례	재학대사례
	친부모가정	4,882(38.3)	114(25.7)
친부모가족외형태	부자가정	2,720(21.3)	120(27.1)
	모자가정	1,835(14.4)	81(18.3)
	미혼부모가정	277(2.2)	8(1.8)
	재혼가정	904(7.1)	44(9.9)
	친인척보호	525(4.1)	16(3.6)
	동거(사실혼포함)	398(3.1)	23(5.2)
	소년소녀가정	42(0.3)	0(0.0)
소계		6,701(52.4)	292(65.9)
대리양육 형태	가정위탁	34(0.3)	0(0.0)
	입양가정	62(0.5)	2(0.5)
	시설보호	458(3.6)	25(5.6)
	소계	554(4.3)	27(6.1)
기타		112(0.9)	4(0.9)
파악안됨		507(4.0)	6(1.4)
계		12,756(100.0)	443(100.0)

3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3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22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3%를 차지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표 5-41>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 비율
22	0.3

* 2013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22건이며, 사망아동 수는 총 17명임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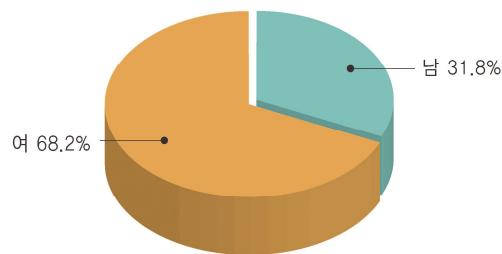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파악한 결과, 여아가 15건(68.2%), 남아가 7건(31.8%)으로 여자 아동이 많았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여아의 비율이 남아에 비해 많은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42>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성별	건수 (비율)
남	7 (31.8)
여	15 (68.2)
계	22 (100.0)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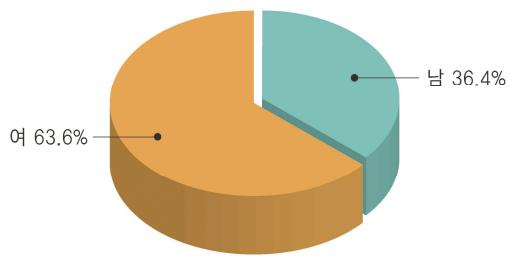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표 5-43>에는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에 대한 결과이다. 총 22건의 사례 중 여성은 14건(63.6%), 남성은 8건(36.4%)으로 사망아동 사례의 경우, 여성 학대행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성별	건수 (비율)
남	8 (36.4)
여	14 (63.6)
계	22 (100.0)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다음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교차시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4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2년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만 2세는 5건이었으며, 만 8세 3건, 만 7세와 만 11세는 각 2건, 5세와 15세는 각 1건이었다. 만 1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였는데, 30대 9건 (40.9%), 20대 7건(3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는데, 친모와 친부에 의한 사망아동 사례는 각 10건(45.5%), 7건(31.8%)이었으며, 계모 2건 (9.1%), 그 외 양모,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사례는 각 1건(4.5%)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에 의한 사망아동 사례의 대부분은 학대행위자가 부적절한 훈육 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이다. 또한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동의 외삼촌이 아동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동거녀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동거녀가 아동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연령 그리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22건 중 20건 (90.9%)이 부모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영아에 대한 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대사실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발견되기 어렵워 학대가 지속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녀 양육 스트레스 관련 대처 교육이 필요하다.

<표 5-44>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연령(만)	친부				친모				계모	양모	친인척	부모 동거인	계
	20대	30대	40대	소계	20대	30대	과악 안락	소계	30대	20대	40대	40대	
1세미만	1 (12.5)	2 (25.0)	0	3 (37.5)	3 (37.5)	1 (12.5)	1 (12.5)	5 (62.5)	0	0	0	0	8 (100.0)
2세	0	0	0	0	2 (40.0)	1 (20.0)	0	3 (60.0)	0	1 (20.0)	1 (20.0)	0	5 (100.0)
5세	0	0	0	0	0 (100.0)	1 (100.0)	0	1 (100.0)	0	0 (100.0)	0	0	1 (100.0)
7세	0 (50.0)	1 (50.0)	0 (50.0)	1 (50.0)	0 (50.0)	0 (50.0)	0 (50.0)	0 (50.0)	1 (50.0)	0 (50.0)	0 (50.0)	0 (50.0)	2 (100.0)
8세	0 (33.3)	0 (33.3)	1 (33.3)	1 (33.3)	0 (33.3)	0 (33.3)	0 (33.3)	0 (33.3)	1 (33.3)	0 (33.3)	0 (33.3)	1 (33.3)	3 (100.0)
11세	0 (50.0)	0 (50.0)	1 (50.0)	1 (50.0)	0 (50.0)	1 (50.0)	0 (50.0)	1 (50.0)	0 (50.0)	0 (50.0)	0 (50.0)	0 (50.0)	2 (100.0)
15세	0 (100.0)	0 (100.0)	1 (100.0)	1 (100.0)	0 (100.0)	1 (100.0)							
계	1 (4.5)	3 (13.6)	3 (13.6)	7 (31.8)	5 (22.7)	4 (18.2)	1 (4.5)	10 (45.5)	2 (9.1)	1 (4.5)	1 (4.5)	1 (4.5)	22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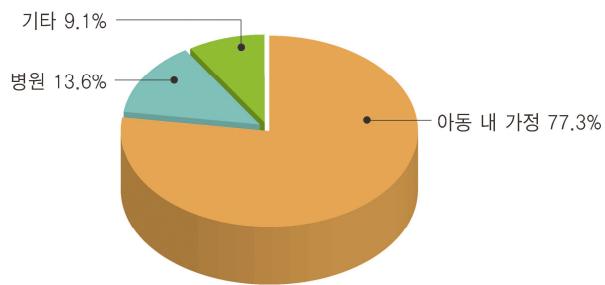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표 5-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피해아동의 가정은 17건(77.3%)이었다. 병원의 경우는 3건(13.6%), 기타장소는 2건(9.1%)이었다. 이 중 기타 유형의 경우,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한 사례는 친모와 아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친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표 5-45>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아동 가정 내	17(77.3)
병원	3(13.6)
기타	2(9.1)
계	22(100.0)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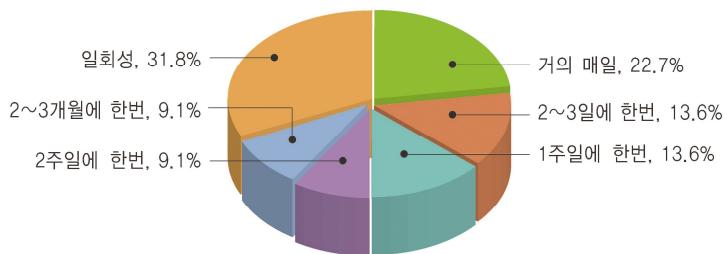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발생 빈도는 <표 5-46>에 제시되었다.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7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는 5건(22.7%), 2~3일에 한 번과 1주일에 한 번은 각 3건(13.6%), 2주일에 한 번과 2~3개월에 한 번은 각 2건(9.1%)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망아동 사례 중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일회적인 학대행위라도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46>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 (비율)
거의 매일	5(22.7)
2~3일에 한 번	3(13.6)
1주일에 한 번	3(13.6)
2주일에 한 번	2(9.1)
2~3개월에 한 번	2(9.1)
일회성	7(31.8)
계	22(100.0)



<그림 5-35>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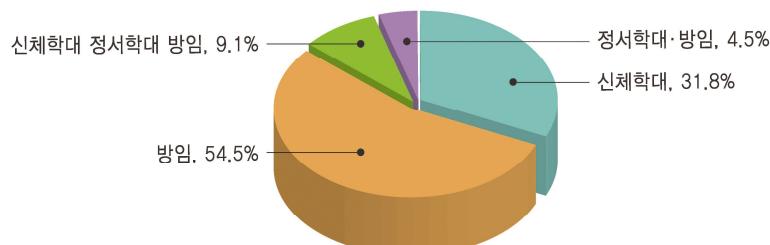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 12건(54.5%), 신체학대 7건(31.8%), 중복학대 3건(13.6%)으로 집계되었다. 신체학대 또는 방임만 단독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아동이 사망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방임이 단독적으로 발생한 총 12건 중 대부분이 물리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리적 방임 및 아동에 대한 수술을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료적 방임 역시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5-47>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7 (31.8)
	방임	12 (54.5)
종복학대	정서학대·방임	1 (4.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 (9.1)
	소계	3 (13.6)
계		22 (100.0)



<그림 5-36>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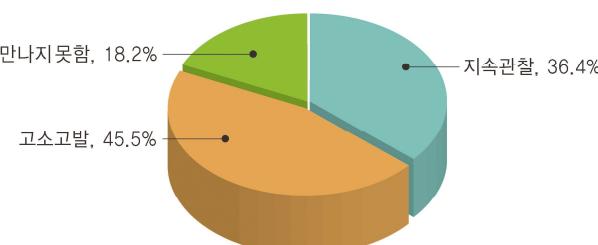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고소고발이 10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8건(36.4%),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4건(18.2%)이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매우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총 22건의 사망사례 중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각 사례의 상황을 고려해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4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지속관찰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계
8 (36.4)	10 (45.5)	4 (18.2)	22 (100.0)



<그림 5-37>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1) 기관별 현황

본 절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총 591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7%에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의 종사자는 27건이었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129건, 경상남도 58건, 울산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각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한 사례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135건, 그리고 보육 교직원 1건, 기타복지시설 7건이었다. 또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총 57건 중 보육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8건,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를 가한 사례는 39건이었다.

<표 5-49>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건, %)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서울	서울특별시	1(0.5)	2(0.6)	0(0.0)	3(0.5)	
	서울특별시동부	1(0.5)	1(0.3)	0(0.0)	2(0.3)	
	서울 강 서	6(3.0)	0(0.0)	0(0.0)	6(1.0)	
	서울 은 평	1(0.5)	0(0.0)	9(33.3)	10(1.7)	
	서울영등포	3(1.5)	0(0.0)	0(0.0)	3(0.5)	
	서울성북	3(1.5)	0(0.0)	0(0.0)	3(0.5)	
	서울 마 포	2(1.0)	0(0.0)	0(0.0)	2(0.3)	
소계		17(8.4)	3(0.8)	9(33.3)	29(4.9)	
부산	부산광역시	2(1.0)	2(0.6)	0(0.0)	4(0.7)	
	부산 동부	12(5.9)	0(0.0)	0(0.0)	12(2.0)	
	소계	14(6.9)	2(0.6)	0(0.0)	16(2.7)	
대구	대구광역시	11(5.4)	2(0.6)	0(0.0)	13(2.2)	
인천	인천광역시	7(3.5)	15(4.1)	0(0.0)	22(3.7)	
	인천 북부	2(1.0)	0(0.0)	0(0.0)	2(0.3)	
	소계	9(4.5)	15(4.1)	0(0.0)	24(4.1)	
광주	광주광역시	0(0.0)	16(4.4)	0(0.0)	16(2.7)	
울산	울산광역시	54(26.7)	0(0.0)	0(0.0)	54(9.1)	
경기	경기도	2(1.0)	2(0.6)	0(0.0)	4(0.7)	
	경기 북부	9(4.5)	21(5.8)	0(0.0)	30(5.1)	
	경기 성 남	18(8.9)	4(1.1)	0(0.0)	22(3.7)	
	경기 고 양	3(1.5)	3(0.8)	0(0.0)	6(1.0)	
	경기 부 천	5(2.5)	0(0.0)	2(7.4)	7(1.2)	
	경기 화 성	1(0.5)	39(10.8)	0(0.0)	40(6.8)	
	안산시	9(4.5)	6(1.7)	0(0.0)	15(2.5)	
	경기 용인	0(0.0)	1(0.3)	4(14.8)	5(0.8)	
	소계	47(23.3)	76(21.0)	6(22.2)	129(21.8)	
	강원도	0(0.0)	1(0.3)	0(0.0)	1(0.2)	
강원	강원 동부	0(0.0)	0(0.0)	3(11.1)	3(0.5)	
	원주시	1(0.5)	2(0.6)	0(0.0)	3(0.5)	
	소계	1(0.5)	3(0.8)	3(11.1)	7(1.2)	

충북	충청북도	2(1.0)	2(0.6)	0(0.0)	4(0.7)
	충북북부	18(8.9)	6(1.7)	0(0.0)	24(4.1)
	소계	20(9.9)	8(2.2)	0(0.0)	28(4.7)
충남	충청남도	5(2.5)	11(3.0)	2(7.4)	18(3.0)
	전라북도서부	1(0.5)	135(37.3)	7(25.9)	143(24.2)
	전라남도	0(0.0)	7(1.9)	0(0.0)	7(1.2)
전남	전남서부권	2(1.0)	1(0.3)	0(0.0)	3(0.5)
	전남중부권	0(0.0)	19(5.2)	0(0.0)	19(3.2)
	소계	2(1.0)	27(7.5)	0(0.0)	29(4.9)
경남	경상남도	18(8.9)	39(10.8)	0(0.0)	57(9.6)
	경남서부	0(0.0)	1(0.3)	0(0.0)	1(0.2)
	소계	18(8.9)	40(11.0)	0(0.0)	58(9.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1.5)	18(5.0)	0(0.0)	21(3.6)
	서귀포시	0(0.0)	6(1.7)	0(0.0)	6(1.0)
	소계	3(1.5)	24(6.6)	0(0.0)	27(4.6)
계	202(100.0)	362(100.0)	27(100.0)	591(100.0)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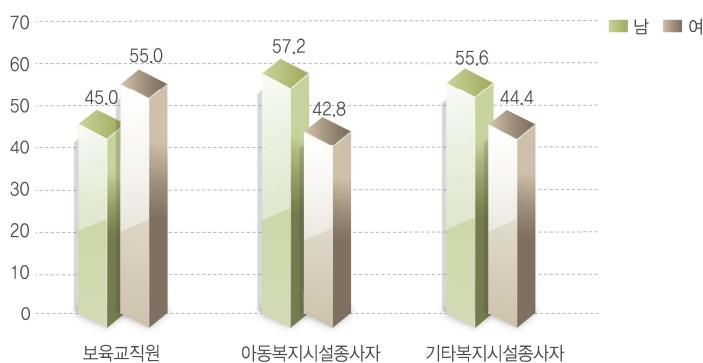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은 남 313건(53.0%), 여 278건(47.0%)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 종사자는 남자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보육교직원에 의한 피해아동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율이 높았다.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종사자유형	성별		
	남	여	계
보육교직원	91(45.0)	111(55.0)	202(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7(57.2)	155(42.8)	362(100.0)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15(55.6)	12(44.4)	27(100.0)
계	313(53.0)	278(47.0)	591(100.0)

(단위 : %)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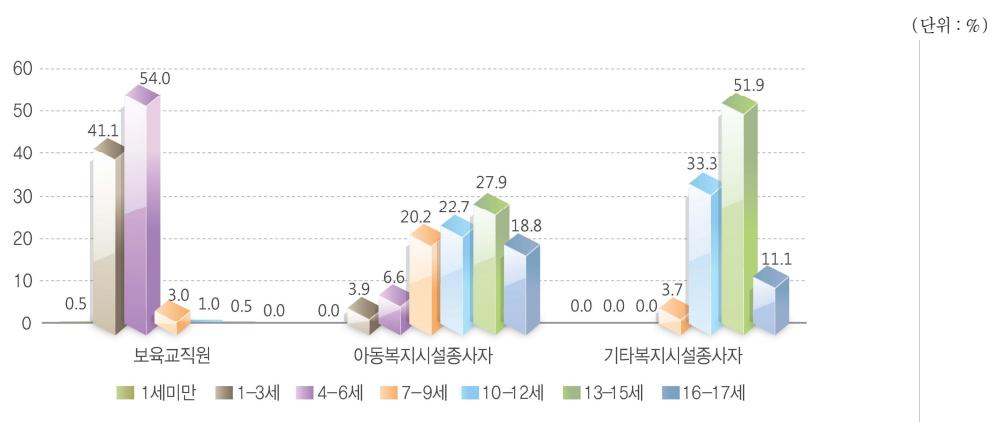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4~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133건(2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 13~15세 116건(19.6%), 만 1~3세 97건(16.4%), 만 10~12세 93건(15.7%) 순이었다.

보육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례의 경우, 보육교직원을 주로 만나게 되는 장소인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이전 단계 아동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 4~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10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만 1~3세 83건(41.1%), 만 1세 미만 1건(0.5%)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의 피해아동 중 101건(27.9%)이 만 13~15세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의 피해아동의 경우 만 13~15세에는 14건(51.9%)이었으며, 만 10~12세와 만 16~17세는 각 9건(33.3%), 3건(11.1%) 이었다.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연령(만)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1세 미만	1(0.5)	0(0.0)	0(0.0)	1(0.2)
1~3세	83(41.1)	14(3.9)	0(0.0)	97(16.4)
4~6세	109(54.0)	24(6.6)	0(0.0)	133(22.5)
7~9세	6(3.0)	73(20.2)	1(3.7)	80(13.5)
10~12세	2(1.0)	82(22.7)	9(33.3)	93(15.7)
13~15세	1(0.5)	101(27.9)	14(51.9)	116(19.6)
16~17세	0(0.0)	68(18.8)	3(11.1)	71(12.0)
계	202(100.0)	362(100.0)	27(100.0)	591(100.0)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다음 <표 5-52>를 통해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 없음 743건(43.4%)을 제외하고는 적응·행동 특성 466건(27.2%)과 정서·정신건강 특성 314건(18.4%)을 지닌 아동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시설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이 없는 아동이 263건(62.6%)이었으며, 정서·정신건강은 89건(21.2%)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의 피해아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도 반항·충동·공격성 88건(7.4%), 약물·흡연·음주 78건(6.6%), 학습문제 67건(5.6%)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타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의한 사례의 경우, 특성 없음이 49건(48.5%)이었으며, 적응·행동 특성을 지닌 피해아동은 23건(22.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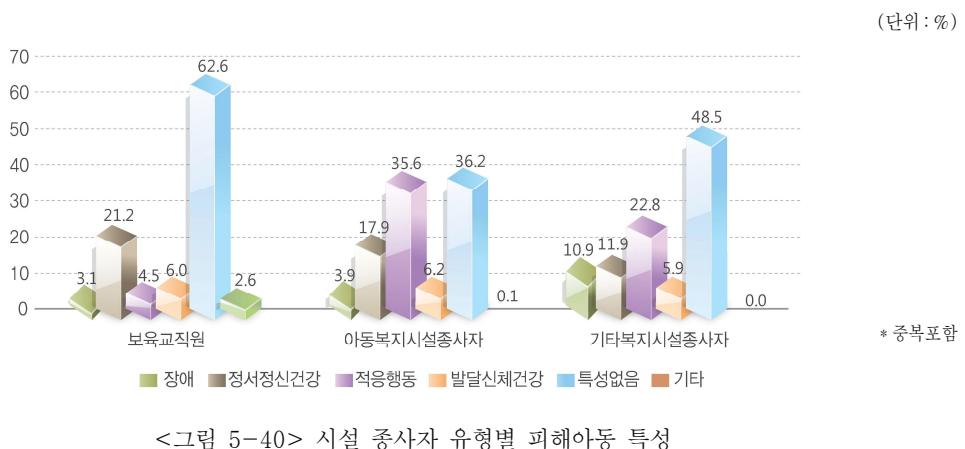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이 아닌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장애	신체적장애	0(0.0)	12(1.0)	0(0.0)	12(0.7)	
	정신적장애	8(1.9)	25(2.1)	11(10.9)	44(2.6)	
	장애의심	5(1.2)	10(0.8)	0(0.0)	15(0.9)	
	소계	13(3.1)	47(3.9)	11(10.9)	71(4.1)	
정서 정신건강	주의산만	60(14.3)	42(3.5)	4(4.0)	106(6.2)	
	파이팅행동	9(2.1)	27(2.3)	0(0.0)	36(2.1)	
	인터넷(게임)중독	0(0.0)	1(0.1)	0(0.0)	1(0.1)	
	불안	9(2.1)	13(1.1)	0(0.0)	22(1.3)	
	애착문제	10(2.4)	1(0.1)	2(2.0)	13(0.8)	
	무력감	0(0.0)	0(0.0)	0(0.0)	0(0.0)	
	우울	1(0.2)	1(0.1)	3(3.0)	5(0.3)	
	낮은 자아존중감	0(0.0)	8(0.7)	0(0.0)	8(0.5)	
	성격 및 기질문제	0(0.0)	60(5.0)	3(3.0)	63(3.7)	
	탐식 및 결식	0(0.0)	60(5.0)	0(0.0)	60(3.5)	
	소계	89(21.2)	213(17.9)	12(11.9)	314(18.4)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8(1.9)	88(7.4)	7(6.9)	103(6.0)	
	거짓말	0(0.0)	30(2.5)	0(0.0)	30(1.8)	
	도벽	4(1.0)	29(2.4)	2(2.0)	35(2.0)	
	기출	0(0.0)	33(2.8)	4(4.0)	37(2.2)	
	약물·흡연·음주	1(0.2)	78(6.6)	2(2.0)	81(4.7)	
	성문제	0(0.0)	9(0.8)	0(0.0)	9(0.5)	
	학교 부적응	1(0.2)	6(0.5)	2(2.0)	9(0.5)	
	잦은결석, 무단결과	0(0.0)	13(1.1)	0(0.0)	13(0.8)	
	낮은 귀가	1(0.2)	12(1.0)	0(0.0)	13(0.8)	
	학습문제	2(0.5)	67(5.6)	4(4.0)	73(4.3)	
	폭력행동	0(0.0)	22(1.8)	2(2.0)	24(1.4)	
	비행집단활동	0(0.0)	17(1.4)	0(0.0)	17(1.0)	
	불건전한또래관계	1(0.2)	18(1.5)	0(0.0)	19(1.1)	
	대인관계기피	1(0.2)	2(0.2)	0(0.0)	3(0.2)	
	소계	19(4.5)	424(35.6)	23(22.8)	466(27.2)	
발달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0(0.0)	0(0.0)	0(0.0)	0(0.0)	
	언어문제	5(1.2)	10(0.8)	4(4.0)	19(1.1)	
	영양결핍	0(0.0)	3(0.3)	0(0.0)	3(0.2)	
	대소변문제	9(2.1)	0(0.0)	0(0.0)	9(0.5)	
	위생문제	0(0.0)	59(5.0)	0(0.0)	59(3.4)	
	티(음성, 신체, 뚜렷)	0(0.0)	0(0.0)	0(0.0)	0(0.0)	
	잦은병치례	10(2.4)	0(0.0)	0(0.0)	10(0.6)	
	주요병력	1(0.2)	2(0.2)	2(2.0)	5(0.3)	
	소계	25(6.0)	74(6.2)	6(5.9)	105(6.1)	
	특성 없음	263(62.6)	431(36.2)	49(48.5)	743(43.4)	
기타		11(2.6)	1(0.1)	0(0.0)	12(0.7)	
계		420(100.0)	1,190(100.0)	101(100.0)	1,711(100.0)	

* 중복포함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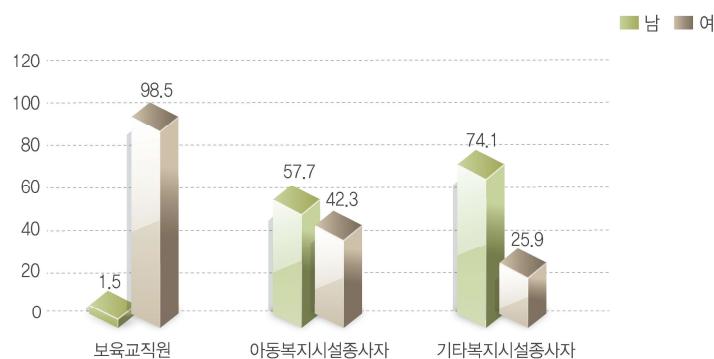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32건(39.3%), 여성 359건(60.7%)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종사자유형	성별	(단위 : 건, %)		
		남	여	계
보육 교직원	남	3(1.5)	199(98.5)	202(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남	209(57.7)	153(42.3)	362(100.0)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남	20(74.1)	7(25.9)	27(100.0)
계	남	232(39.3)	359(60.7)	591(100.0)

(단위 : %)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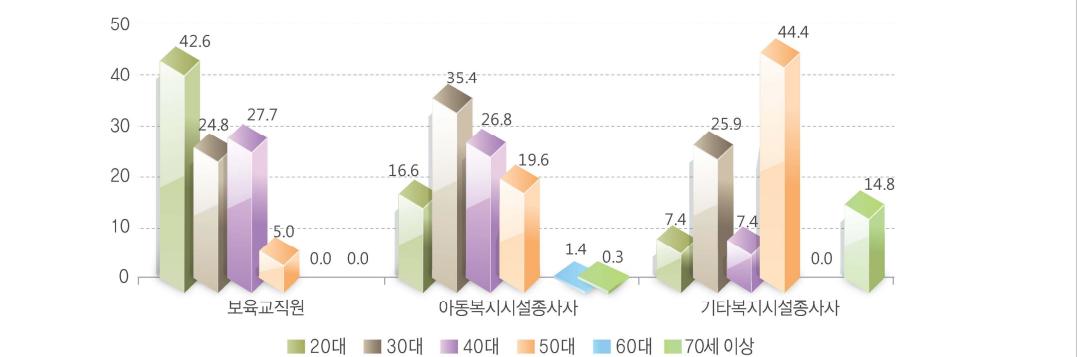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85건(31.3%)이었으며, 40대와 20대에 의한 사례는 각각 155건(26.2%), 148건(25.0%)이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20대 86건(42.6%), 30대 50건(24.8%)이었으며, 이에 반해 기타복지시설의 종사자는 50대 12건(44.4%), 30대 7건(25.9%)이었다.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20~29세	86(42.6)	60(16.6)	2(7.4)	148(25.0)
30~39세	50(24.8)	128(35.4)	7(25.9)	185(31.3)
40~49세	56(27.7)	97(26.8)	2(7.4)	155(26.2)
50~59세	10(5.0)	71(19.6)	12(44.4)	93(15.7)
60~69세	0(0.0)	5(1.4)	0(0.0)	5(0.8)
70세 이상	0(0.0)	1(0.3)	4(14.8)	5(0.8)
계	202(100.0)	362(100.0)	27(100.0)	591(100.0)

(단위: %)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938건(49.4%)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64건(8.6%), 성격 및 기질문제 161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종사자들의 연령이 20~30대로 대체로 높지 않은 연령이기 때문에 아동 지도 기술이 부족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 및 처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의 종교문제가 보육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이지만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4건(3.4%)이 나타났다.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신체적 장애	0(0.0)	0(0.0)	0(0.0)	0(0.0)
	정신적 장애	0(0.0)	0(0.0)	0(0.0)	0(0.0)
	장애의심	9(1.2)	0(0.0)	0(0.0)	9(0.5)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28(44.9)	524(50.0)	86(72.3)	938(49.4)	
중독문제	0(0.0)	0(0.0)	0(0.0)	0(0.0)	
질환문제	1(0.1)	0(0.6)	0(0.0)	1(0.1)	
성격 및 기질문제	67(9.2)	90(8.6)	4(3.4)	161(8.5)	
위생문제	0(0.0)	0(0.0)	0(0.0)	0(0.0)	
나태 및 무기력	0(0.0)	0(0.0)	0(0.0)	0(0.0)	
난독해, 난작문	0(0.0)	0(0.0)	0(0.0)	0(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17(16.0)	47(4.5)	0(0.0)	164(8.6)	
어릴 적 학대 경험	0(0.0)	0(0.0)	0(0.0)	0(0.0)	
폭력성	0(0.0)	0(0.0)	0(0.0)	0(0.0)	
전파력	0(0.0)	1(0.1)	0(0.0)	1(0.1)	
성문제	0(0.0)	6(0.6)	0(0.0)	6(0.3)	
원치 않은 아동	0(0.0)	0(0.0)	0(0.0)	0(0.0)	
부부 및 가족갈등	0(0.0)	0(0.0)	0(0.0)	0(0.0)	
종교문제	0(0.0)	0(0.0)	4(3.4)	4(0.2)	
특성없음	122(16.7)	304(29.0)	12(10.1)	438(23.1)	
과악안됨	87(11.9)	75(7.2)	13(10.9)	175(9.2)	
계	731(100.0)	1,047(100.0)	119(100.0)	1,897(100.0)	

* 중복포함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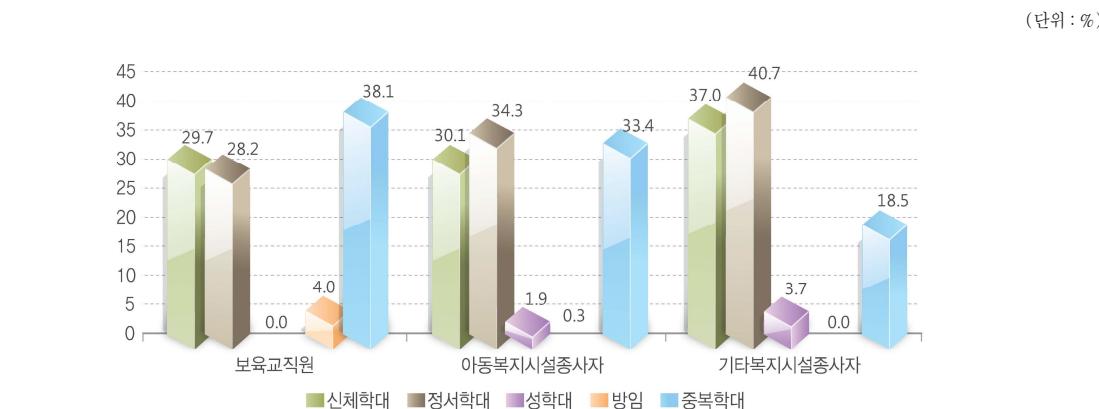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가 203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 192건(32.5%), 신체학대 179건(30.3%), 방임 9건(1.5%), 성학대 8건(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60(29.7)	109(30.1)	10(37.0)	179(30.3)
	정서학대	57(28.2)	124(34.3)	11(40.7)	192(32.5)
	성 학 대	0(0.0)	7(1.9)	1(3.7)	8(1.4)
	방임	8(4.0)	1(0.3)	0(0.0)	9(1.5)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73(36.1)	77(21.3)	3(11.1)	153(25.9)
	신체학대-성학대	0(0.0)	3(0.8)	1(3.7)	4(0.7)
	신체학대-방임	0(0.0)	2(0.6)	0(0.0)	2(0.3)
	정서학대-성학대	0(0.0)	1(0.3)	0(0.0)	1(0.2)
	정서학대-방임	2(1.0)	26(7.2)	0(0.0)	28(4.7)
	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2(1.0)	8(2.2)	0(0.0)	10(1.7)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0(0.0)	4(1.1)	1(3.7)	5(0.8)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소계		77(38.1)	121(33.4)	5(18.5)	203(34.3)
계		202(100.0)	362(100.0)	27(100.0)	591(100.0)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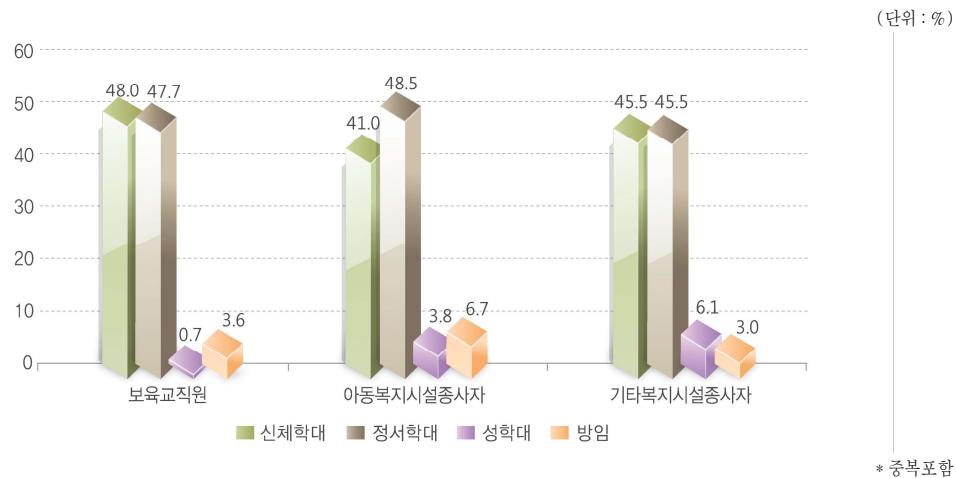
중복학대를 별도 분류하지 않고 중복 경험한 학대를 각 유형에 포함시킨 결과 정서학대가 389건 (4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353건(43.6%), 방임 44건(5.4%), 성학대 23건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7>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135 (48.0)	203 (41.0)	15 (45.5)	353 (43.6)
정서학대	134 (47.7)	240 (48.5)	15 (45.5)	389 (48.1)
성학대	2 (0.7)	19 (3.8)	2 (6.1)	23 (2.8)
방임	10 (3.6)	33 (6.7)	1 (3.0)	44 (5.4)
계	281 (100.0)	495 (100.0)	33 (100.0)	809 (100.0)

* 중복포함



<그림 5-4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표 5-58>에는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원가정보호가 539건(91.2%)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는 52건(8.8%)이었다. 격리보호 조치한 사례 중 장기보호가 23건(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는 19건(3.2%), 친인척에 의해 보호 조치한 경우와 병원입원은 각각 5건(0.8%)이었다.

<표 5-5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보육교직원	199 (98.5)	3 (1.5)	0 (0.0)	0 (0.0)	0 (0.0)	3 (1.5)	202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24 (89.5)	2 (0.6)	9 (2.5)	22 (6.1)	5 (1.4)	38 (10.5)	362 (100.0)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16 (59.3)	0 (0.0)	10 (37.0)	1 (3.7)	0 (0.0)	11 (40.7)	27 (100.0)	
계	539 (91.2)	5 (0.8)	19 (3.2)	23 (3.9)	5 (0.8)	52 (8.8)	591 (100.0)	



<그림 5-4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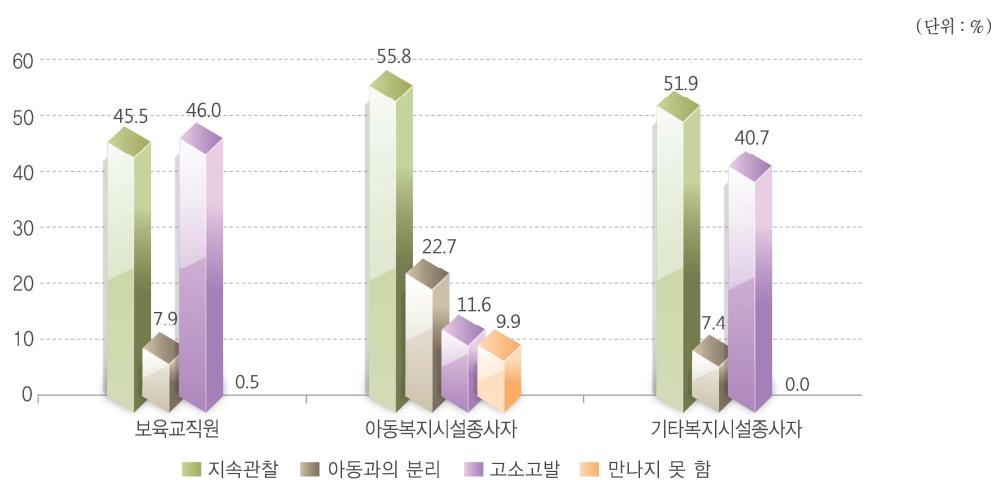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5-59>는 시설 종사자의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최종조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취해진 최종조치는 지속관찰로 308건(52.1%)이었으며, 고소고발은 전체 사례의 24.7%인 146건이었다. 또한 아동과 분리된 학대행위자는 100건(16.9%),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37건(6.3%)에 해당하였다.

<표 5-5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계	
						개	%
보육 교직원	92(45.5)	16(7.9)	93(46.0)	1(0.5)	202(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2(55.8)	82(22.7)	42(11.6)	36(9.9)	362(100.0)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14(51.9)	2(7.4)	11(40.7)	0(0.0)	27(100.0)		
계	308(52.1)	100(16.9)	146(24.7)	37(6.3)	591(100.0)		



<그림 5-4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6

제6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 6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량

본 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살펴보기 위해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교육·홍보·협력사업과 같은 관련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표 6-1> 참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13,071건 중 아동이 학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의심된 응급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0,856건을 대상으로 총 21,319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각 사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하는데,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학대의 감소,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년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은 449,172회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에게 총 17,42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등을 활용하여 1,794,960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협력사업의 경우 총 1,441회에 걸쳐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실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업무량을 기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수인 375명^{*}으로 나누어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받은 사례는 34.9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정되어 현장조사하는 경우는 1인 당 56.9회로 산출되었다. 현장조사는 상담원 2인이 동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한다면 실제 1인당 100회를 초과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해 동안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총 1,197.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46.5회, 홍보사업 4,786.6회, 협력사업 3.8회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경우 CPS(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역할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서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원들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까지 모든 과정을 모두 담당하며, 기존의 누적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 2013년 12월 말 기준

** 윤혜미(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까지 광범위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도 연관이 있다. 2013년 기준 추계아동인구가 9,331,894명인 반면 상담원의 수는 375명으로 우리나라는 상담원 1인당 약 24,885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상담원들에게 많은 양의 업무가 부여될 경우, 아동 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을 야기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아동학대사례개입의 질적 저하 및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과중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 상담원 업무량*

(단위 : 건, 회)

		업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지원사업	신고접수	13,071	34.9	
	현장조사	21,319	56.9	
	서비스제공	449,172	1,197.8	
교육·홍보·협력사업	교육사업	17,425	46.5	
	홍보사업	1,794,960	4,786.6	
	협력사업	1,441	3.8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 명, 건, 회)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포함)	신고접수	현장 조사	서비스제공	교육사업	홍보 사업	협력사업
서울	서울특별시	7	620	470	91	19	8,442	—
	서울특별시동부	7	340	658	15,187	72	1,006	58
	서울강서	6	199	460	5,186	449	22	20
	서울은평	6	233	316	4,954	679	9,371	18
	서울영등포	6	191	383	5,600	235	21	—
	서울성북	6	146	222	3,410	469	518	33
	서울마포	6	179	249	4,931	197	29	21
	서울동남권	6	—	—	3,341	974	5,661	128
소 계		50	1,908	2,758	42,700	3,094	25,070	278
부산	부산광역시	7	265	311	12,919	199	22,843	11
	부산동부	6	232	404	7,624	37	4,316	6
	소 계	13	497	715	20,543	236	27,159	17
대구	대구광역시	8	397	592	5,774	2,031	46,550	42
	대구광역시남부	8	56	114	1,264	152	6,210	—
	소 계	16	453	706	7,038	2,183	52,760	42
인천	인천광역시	8	471	708	24,298	939	56,262	3
	인천북부	6	198	392	5,149	243	6,029	1
	인천미추홀	4	69	113	—	6	4,559	—
	소 계	18	738	1,213	29,447	1,188	66,850	4
광주	광주광역시	8	279	558	8,512	384	56,323	47
대전	대전광역시	9	313	497	13,160	240	6,192	53
울산	울산광역시	8	504	630	5,026	301	2,904	19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면 현장조사 업무는 상담원 2인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총 현장조사 횟수인 21,319회를 바탕으로 할 때 실제적인 상담원 1인당 현장조사 총 횟수는 약 113.8회라 할 수 있음.

경기	경기도	10	372	546	13,062	578	19,511	34
	경기북부	10	312	572	7,166	237	21,243	9
	경기성남	8	364	640	15,102	500	19,221	33
	경기고양	7	270	514	7,827	363	265	12
	경기부천	6	334	624	20,555	204	9,626	23
	경기화성	9	428	826	10,091	251	8,807	22
	경기남양주	6	183	320	10,431	352	14,119	112
	안산시	6	346	612	17,861	168	4,835	32
	경기용인	7	77	172	1,618	78	4,736	2
	경기시흥	7	43	115	582	220	5,014	5
강원	소 계	76	2,729	4,941	104,295	2,951	107,377	284
	강원도	8	123	165	4,850	230	32,933	52
	강원동부	8	158	259	5,442	308	35,965	48
	원주시	6	111	188	6,773	352	297,497	–
충북	소 계	22	392	612	17,065	890	366,395	100
	충청북도	11	327	432	15,128	594	17,328	14
	충북북부	6	235	525	6,692	376	29,435	28
	충북남부	6	150	235	10,763	236	42,093	83
충남	소 계	23	712	1,192	32,583	1,206	88,856	125
	충청남도	9	423	819	11,586	341	1,209	17
	충청남도남부	4	163	200	3,173	211	28,631	9
전북	소 계	13	586	1,019	14,759	552	29,840	26
	전라북도	11	331	496	7,034	390	22,003	21
	전라북도서부	8	478	597	10,221	330	23,826	2
	전라북도동부	6	156	216	6,987	478	9,387	20
전남	소 계	25	965	1,309	24,242	1,198	55,216	43
	전라남도	8	274	448	9,343	226	30,165	61
	전남서부권	7	180	307	6,382	335	12,749	–
	전남중부권	8	187	387	11,296	266	16,485	30
경북	소 계	23	641	1,142	27,021	827	59,399	91
	경상북도	9	241	344	7,571	257	18,608	32
	경북안동	8	158	286	9,846	101	54,023	59
	경북포항	9	256	450	9,360	318	24,991	3
	경북구미	9	207	253	8,924	143	124,435	14
경남	소 계	35	862	1,333	35,701	819	222,057	108
	경상남도	15	904	1,839	33,919	319	104,171	42
	경남서부	10	214	375	13,244	219	92,081	83
제주	소 계	25	1,118	2,214	47,163	538	196,252	125
	제주특별자치도	7	179	242	10,487	484	286,625	42
	서귀포시	4	195	238	9,430	334	145,685	37
	소 계	11	374	480	19,917	818	432,310	79
	계	375	13,071	21,319	449,172	17,425	1,794,960	1,441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아동학대사례 수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6-3> 참조). 2013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5건을 전체 상담원 수인 375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담원 1인이 약 18.1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이전,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2013년에 들어서도 종결되지 않은 15,065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 수는 총 58.3건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2013년 신고 사례와 이전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 수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산광역시가 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83.7건, 충청남도 77.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광역시가 25.6건으로 가장 적었다. 상담원 1인에게 할당되는 아동학대 사례 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68.5건으로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업무량의 차이가 클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개입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걸쳐 높은 수준의 서비스 등 개입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나 상담원 증원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개소, 명, 건, 회)

지 역	기관수	상담원수	아동학대사례 총 건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013년 신고 사례	2013년 이전 신고 사례	소계	2013년 신고 사례	2013년 이전 신고 사례	소계
서울특별시	8	50	815	2,808	3,623	16.3	56.2	72.5
부산광역시	2	13	295	928	1,223	22.7	71.4	94.1
대구광역시	2	16	191	218	409	11.9	13.6	25.6
인천광역시	3	18	340	864	1,204	18.9	48.0	66.9
광주광역시	1	8	118	154	272	14.8	19.3	34.0
대전광역시	1	9	208	545	753	23.1	60.6	83.7
울산광역시	1	8	147	252	399	18.4	31.5	49.9
경기 도	10	76	1,516	3,360	4,876	19.9	44.2	64.2
강원도	3	22	236	523	759	10.7	23.8	34.5
충청북도	3	23	387	907	1,294	16.8	39.4	56.3
충청남도	2	13	347	656	1,003	26.7	50.5	77.2
전라북도	3	25	641	1,025	1,666	25.6	41.0	66.6
전라남도	3	23	372	622	994	16.2	27.0	43.2
경상북도	4	35	470	835	1,305	13.4	23.9	37.3
경상남도	2	25	575	1,004	1,579	23.0	40.2	63.2
제주특별자치도	2	11	137	364	501	12.5	33.1	45.5
계	50	375	6,795	15,065	21,860	18.1	40.2	58.3

2013년 아동학대사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결된 사례 중에서 6개월 이 775건(39.0%)로 가장 높았고 1년도 598건(30.1%)이었다. 진행중 사례 중에서는 1년이 2,149건(44.7%)로 가장 높았고 6개월이 1,212건(25.2%)로 높았다. 즉, 6개월에서 1년의 사례관리 기간을 가지는 사례들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담원들은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재학대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각 상담원의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단위: 건, %)

구분	기간	기간						계
		~30일	~60일	~90일	~180일	~1년	1년 이상	
아동학대사례	종결	105 (5.3)	205 (10.3)	288 (14.5)	775 (39.0)	598 (30.1)	18 (0.9)	1,989 (100.0)

* 상담원이 현장조사 및 방문서비스 시 2인 동행체계이므로 실제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건수는 표 대비 1.5배에 달할 수 있음.

** 아동학대사례 사례관리기간은 사례종결시기에서 신고접수시기를 뺀 기준으로 산출함.

	진행중	545 (11.3)	501 (10.4)	399 (8.3)	1,212 (25.2)	2,149 (44.7)	0 (0.0)	4,806 (100.0)
계		650 (9.6)	706 (10.4)	687 (10.1)	1,987 (29.2)	2,747 (40.4)	18 (0.3)	6,795 (100.0)

7

제7장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 7 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였고, 2005년과 2006년 모두 14.3%,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부터 상담신고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도에는 총 13,076건이 신고접수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러한 언론 홍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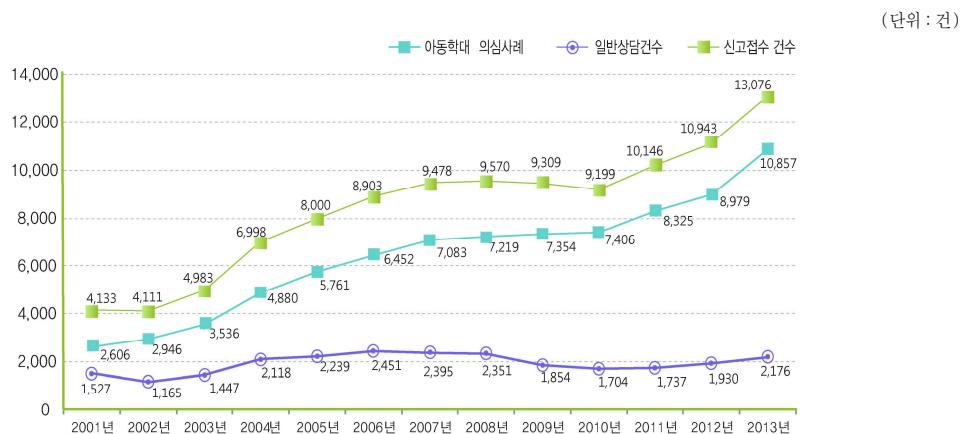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을 나타내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83%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으며 이는 2012년 대비 약 20.9%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증진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연도 \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01년	2,606(63.1)	—	1,527(36.9)	4,133(100.0)	—
2002년	2,946(71.7)	—	1,165(28.3)	4,111(100.0)	-0.5
2003년	3,536(71.0)	—	1,447(29.0)	4,983(100.0)	21.2
2004년	4,880(69.7)	—	2,118(30.3)	6,998(100.0)	40.4
2005년	5,761(72.0)	—	2,239(28.0)	8,000(100.0)	14.3
2006년	6,452(72.5)	—	2,451(27.5)	8,903(100.0)	11.3
2007년	7,083(74.7)	—	2,395(25.3)	9,478(100.0)	6.5
2008년	7,219(75.4)	77—	2,351(24.6)	9,570*(100.0)	1.0
2009년	7,354(79.0)	101(1.1)	1,854(19.9)	9,309(100.0)	-2.7
2010년	7,406(80.5)	89(1.0)	1,704(18.5)	9,199(100.0)	-1.2
2011년	8,325(82.1)	84(0.8)	1,737(17.1)	10,146(100.0)	10.3
2012년	8,979(82.1)	34(0.3)	1,930(17.6)	10,943(100.0)	7.9
2013년	10,857(83.0)	43(0.3)	2,176(16.6)	13,076(100.0)	19.5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표 7-2>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재신고 사례 수는 2001년 20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신고의 14.1%가 재신고 사례였다.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건, %)

구 분 \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고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 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정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 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됨.

(단위: 건)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3년 3,70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30% 내외에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 유형에서는 부모, 아웃 및 친구, 사회복지관련종사자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원	134(5.1)	149(5.0)	190(5.4)	280(5.7)	431(7.5)	611(9.5)	771(10.9)	887(12.3)	547 (7.4)	535 (7.2)	594 (7.1)	732 (8.2)	716 (6.6)
의료인	51(2.0)	59(2.0)	83(2.3)	102(2.1)	126(2.2)	114(1.8)	157(2.2)	105 (1.5)	98 (1.3)	83 (1.1)	88 (1.1)	85 (90.9)	93 (0.9)
시설종사자*	285(10.9)	238(8.1)	181(5.1)	226(4.7)	222(3.8)	217(3.3)	374(5.3)	426(5.9)	-	-	-	-	-
이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 (4.9)	425 (5.7)	338 (4.1)	424 (4.7)	403 (3.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26 (0.4)	24 (0.3)	28 (0.3)	11 (0.1)
보육시설 종사자	-	-	-	-	-	-	-	-	76 (1.0)	152 (2.1)	178 (2.1)	166 (1.8)	223 (2.1)
유치원 종사자	-	-	-	-	-	-	-	-	43 (0.6)	66 (0.9)	40 (0.5)	84 (0.9)	20 (0.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0.0)	15(0.3)	23(0.4)	32(0.5)	26(0.4)	24 (0.3)	18 (0.2)	16 (0.2)	6 (0.1)	13 (0.1)	7 (0.1)
소방구급대원	-	-	-	-	-	-	3(0.0)	6 (0.1)	11 (0.2)	6 (0.1)	10 (0.1)	16 (0.2)	11 (0.1)
응급구조사	-	-	-	-	-	-	-	-	-	-	0 (0.0)	0 (0.0)	-
의료기사	-	-	-	-	-	-	-	-	-	-	4 (0.0)	6 (0.1)	-
성매매피해상	-	-	-	-	-	-	-	-	-	-	-	-	-
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	-	-	-	-	-	-	41 (0.6)	47 (0.6)	45 (0.5)	39 (0.4)	8 (0.1)
성폭력피해상	-	-	-	-	-	-	-	-	-	-	-	51 (0.6)	75 (0.7)
신고의무자	216(8.3)	392(13.3)	575(16.3)	738(15.1)	805(14.0)	1,038(16.1)	953(13.4)	941(13.0)	975(13.3)	786 (10.6)	1,169 (14.0)	904 (10.1)	1,055 (9.7)
이동복지전담 공무원	-	-	-	-	-	-	-	-	-	-	-	102 (1.1)	234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157 (1.7)	336 (3.1)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15 (0.2)	17 (0.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21 (0.2)	17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27 (0.3)	27 (0.2)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	-	-	-	-	-	-	-	-	34 (0.4)	46 (0.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	-	-	-	-	-	-	123 (1.4)	160 (1.5)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45 (0.5)	37 (0.3)
소 계	686(26.3)	838(28.4)	1,030(29.1)	1,361(27.9)	1,607(27.9)	2,012(31.2)	2,284(32.2)	2,389(33.1)	2,339(31.8)	2,299(30.9)	2,704 (32.5)	3,316(36.9)	3,706 (34.1)
													(계 총)

신고자 유형		연도	(단위: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 모	772(29.6)	591(20.1)	673(19.0)	990(20.3)	1,073(18.6)	1,165(18.1)	1,294(18.3)	1,31(18.2)	1,35(18.4)	1,37(18.6)	1,41(16.9)	1,43(16.0)	1,426 (13.1)
	이웃친구	685(26.3)	757(25.7)	843(23.8)	921(18.9)	933(16.2)	886(13.7)	856(12.1)	845(11.7)	80(10.9)	861(11.6)	991(11.9)	970(10.8)	1,065 (9.8)
	친인척	241(9.3)	242(8.2)	367(10.4)	373(7.6)	481(8.3)	500(7.7)	471(6.7)	502(6.9)	46(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경 촬	104(4.0)	164(5.6)	221(6.3)	338(6.9)	357(6.2)	340(5.3)	275(3.9)	322(4.5)	41(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비 신 고 의 무 자	종교인	-	36(1.2)	49(1.4)	47(1.0)	74(1.3)	99(1.5)	77(1.1)	54 (0.7)	54 (0.7)	54 (0.7)	53 (0.6)	45 (0.5)	28 (0.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90(3.0)	114(3.2)	506(10.4)	823(14.3)	980(15.2)	1,165(16.5)	1,17(16.3)	1,35(18.4)	1,56(21.1)	1,85(22.3)	1,68(18.8)	2,632 (24.2)
	낯선 사람	-	-	4(0.1)	114(2.3)	80(1.4)	148(2.3)	88(1.2)	70 (1.0)	71 (1.0)	69 (0.9)	55 (0.7)	92 (1.0)	103 (0.9)
	아동본인	40(1.5)	56(1.9)	52(1.5)	65(1.3)	80(1.4)	71(1.1)	50(0.7)	73 (1.0)	88 (1.2)	115 (1.6)	135 (1.6)	158 (1.8)	171 (1.6)
	의 명	-	11(0.4)	13(0.4)	13(0.3)	41(0.7)	26(0.4)	11(0.1)	61 (0.8)	8 (0.1)	6 (0.1)	40 (0.5)	12 (0.1)	14 (0.1)
	형체,자폐	-	-	-	-	-	-	-	-	34 (0.5)	44 (0.6)	47 (0.6)	63 (0.7)	45 (0.4)
	기 타	78(3.0)	161(5.5)	170(4.8)	152(3.1)	212(3.7)	225(3.5)	512(7.2)	416(5.8)	35(4.9)	241 (3.2)	258 (3.1)	324 (3.6)	546 (5.0)
	소 계	1,920(73.7)	2,108(71.6)	2,506(70.9)	3,519(72.1)	4,154(72.1)	4,440(68.8)	4,799(67.8)	4,83(66.9)	5,01(68.2)	5,11(69.1)	5,62(67.5)	5,66(63.1)	7,151 (65.9)
	계	2,606(100.0)	2,946(100.0)	3,536(100.0)	4,880(100.0)	5,761(100.0)	6,452(100.0)	7,083(100.0)	7,21(100.0)	7,35(100.0)	7,40(100.0)	8,32(100.0)	8,97(100.0)	10,857 (100.0)

* 2009년부터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유치원 종사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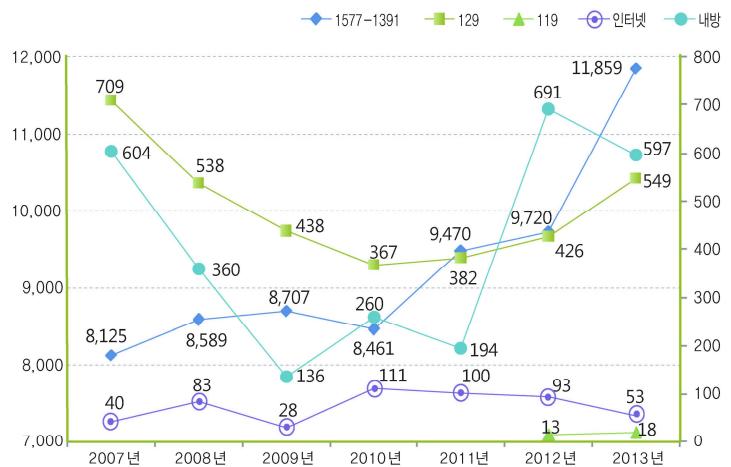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1577-1391, 129, 119, 인터넷 그리고 내방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7-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	구분	(단위: 건, %)					
		1577-1391	119*	129	인터넷	내방	
2007년		8,125(85.7)	-	709(7.5)	40(0.4)	604(6.4)	9,478(100.0)
2008년		8,589(89.7)	-	538(5.6)	83(0.9)	360(3.8)	9,570(100.0)
2009년		8,707(93.5)	-	438(4.7)	28(0.3)	136(1.5)	9,309(100.0)
2010년		8,461(92.0)	-	367(4.0)	111(1.2)	260(2.8)	9,199(100.0)
2011년		9,470(93.3)	-	382(3.8)	100(1.0)	194(1.9)	10,146(100.0)
2012년		9,720(88.8)	13(0.1)	426(3.9)	93(0.8)	691(6.3)	10,943(100.0)
2013년		11,859(90.7)	18(0.1)	549(4.2)	53(0.4)	597(4.6)	13,076(100.0)

* 119 안전신고센터는 2012년부터 신고접수 경로로 업무가 개시되었음.

(단위: 건)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표 7-5>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이와 같은 원인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에서 찾을 수 있겠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수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도 정비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393건 증가하여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2년과 2013년 간 신고접수 증가 폭이 큰 것과 더불어 아동복지와 관련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례가 다양한 기관에서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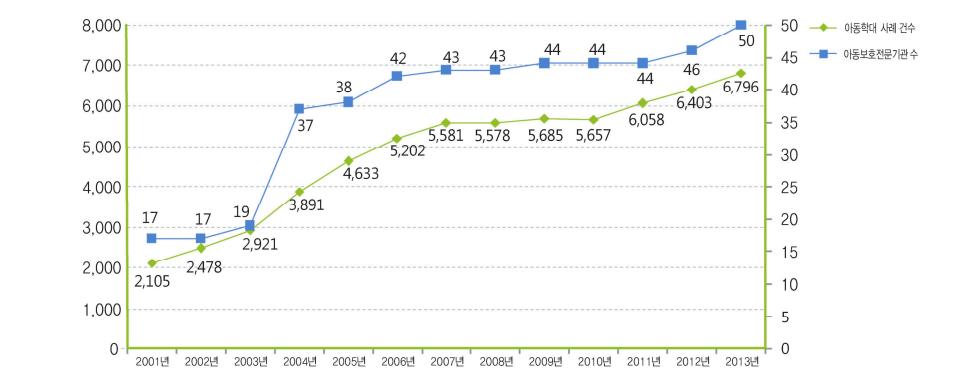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가기관수	-	2	18	1	4	1	-	1	-	-	2	4	-

(단위: 건)

(단위: 개소)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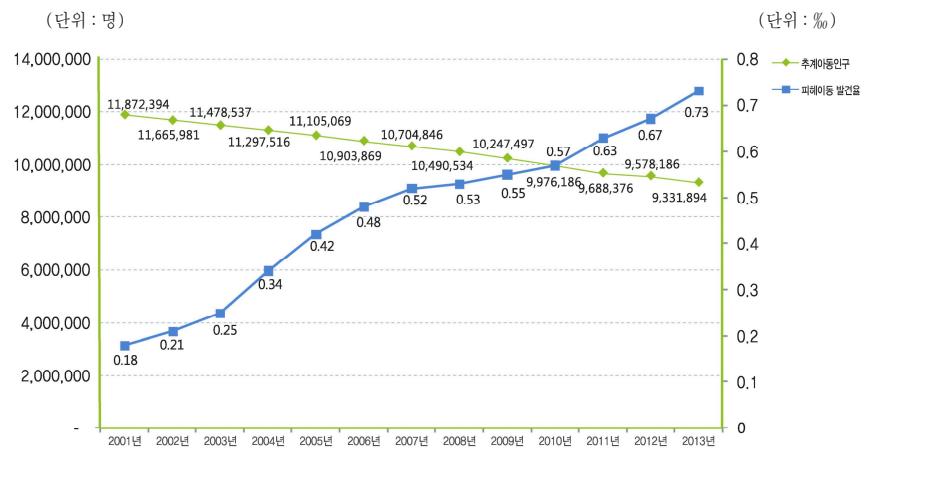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중 일부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5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 통계청(www.kosis.kr), 2001~2013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표 7-7>에서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다. 또한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한 <표 7-8>에 의하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할 때와 유사하게 방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임 사례를 파악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방임 가정의 학대행위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녀양육 능력 부족 및 정신질환 등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기간 내에 학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방임은 아동에게 신체인자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방임 가능성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 발굴을 통한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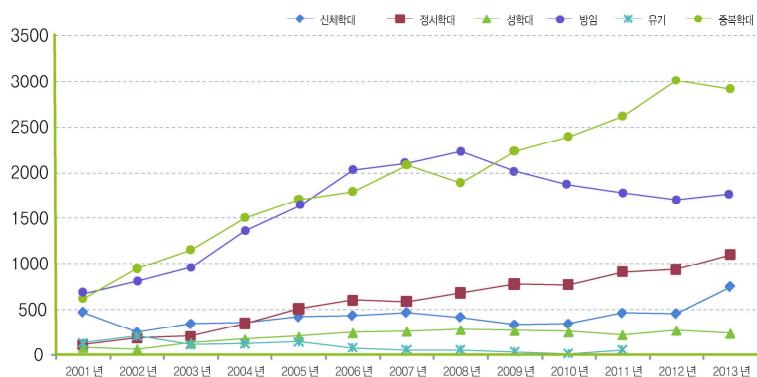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연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22.6)	114(5.4)	86(4.1)	672(31.9)	134(6.4)	623(29.6)	2,105(100.0)
2002년	254(10.3)	184(7.4)	65(2.6)	814(32.8)	212(8.6)	949(38.3)	2,478(100.0)
2003년	347(11.9)	207(7.1)	134(4.6)	965(33.0)	113(3.9)	1,155(39.5)	2,921(100.0)
2004년	364(9.4)	350(9.0)	177(4.5)	1,367(35.1)	125(3.2)	1,508(38.8)	3,891(100.0)
2005년	423(9.1)	512(11.1)	206(4.4)	1,635(35.3)	147(3.2)	1,710(36.9)	4,633(100.0)
2006년	439(8.4)	604(11.6)	249(4.8)	2,035(39.1)	76(1.5)	1,799(34.6)	5,202(100.0)
2007년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5,581(100.0)
2008년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5,578(100.0)
2009년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5,685(100.0)
2010년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5,657(100.0)
2011년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6,058(100.0)
2012년	461(7.2)	936(14.6)	278(4.3)	1,713(26.8)	—	3,015(47.1)	6,403(100.0)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	2,922(43.0)	6,796(100.0)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건)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평균 20% 정도 높다. 이를 통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은 1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서학대만으로 신고되기 보다는 타 유형과 함께 발생했을 때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정서학대만 받는 아동은 장기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정서학대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서 학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서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연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2001년	890(41.8)	192(9.0)	116(5.4)	797(37.5)	133(6.3)	2,128(100.0)
2002년	1,039(28.4)	961(26.3)	119(3.2)	1,329(36.3)	212(5.8)	3,660(100.0)
2003년	1,315(30.3)	1,172(27.1)	203(4.7)	1,514(35.0)	126(2.9)	4,330(100.0)
2004년	1,587(27.5)	1,680(29.2)	266(4.6)	2,071(35.9)	160(2.8)	5,764(100.0)
2005년	1,728(25.9)	2,034(30.5)	305(4.6)	2,416(36.4)	176(2.6)	6,659(100.0)
2006년	1,827(24.9)	2,182(29.8)	372(5.1)	2,842(38.8)	106(1.4)	7,329(100.0)
2007년	2,095(26.1)	2,420(30.1)	409(5.1)	3,018(37.6)	92(1.1)	8,034(100.0)
2008년	1,857(23.8)	2,315(30.0)	424(5.0)	3,105(40.0)	94(1.2)	7,795(100.0)
2009년	2,095(25.1)	2,847(34.1)	426(5.1)	2,939(35.2)	43(0.5)	8,350(100.0)
2010년	2,182(25.8)	2,974(35.1)	400(4.7)	2,878(34.0)	32(0.4)	8,466(100.0)
2011년	2,464(26.9)	3,312(36.3)	368(4.0)	2,919(31.9)	85(0.9)	9,148(100.0)
2012년	2,858(28.8)	3,785(38.1)	446(4.5)	2,849(28.7)	—	9,938(100.0)
2013년	3,160(30.9)	3,843(37.6)	380(3.7)	2,848(27.8)	—	10,231(100.0)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합계함.

* 중복포함

(단위 : 건)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8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세부유형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에 가까웠다.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여기던 과거 사회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사회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매년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신고의무자인 교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위탁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 이상으로 아동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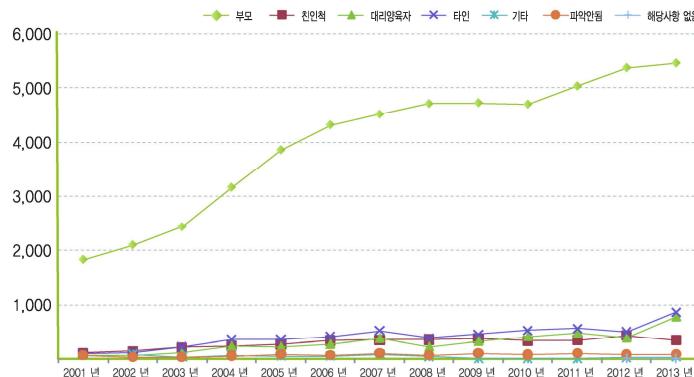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연도 관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모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 (47.1)	3,013 (47.1)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2,090 (32.6)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친인척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친조모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외조부	48 (2.3)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친언제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유치원 종사자	-	-	-	-	-	-	-	-	-	-	-	31 (0.5)
	교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보육 교직원	-	-	-	-	-	-	-	-	-	-	-	110 (1.7)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99 (1.5)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20 (0.3)
	위탁부모	-	-	-	-	-	-	-	-	2 (0.1)	3 (0.1)	5 (0.1)	0 (0.0)
	위탁모 뱠이비 시터	-	-	-	-	-	-	-	-	7 (0.1)	5 (0.1)	8 (0.1)	3 (0.0)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225 (4.0)	331 (5.8)	419 (7.4)	482 (8.0)	397 (6.2)
다인	아동 낯선 사람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0)	134 (2.4)	115 (2.0)	92 (1.5)	108 (1.7)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폐악수령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3 (0.0)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 시설종사자의 경우 2012년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복지시설종사자로 구분되었음.

(단위: 건)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추세를 분석한 <표 7-10>에 의하면 부자가정이 평균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모자가정 또한 지난 13년 간 평균 14.5%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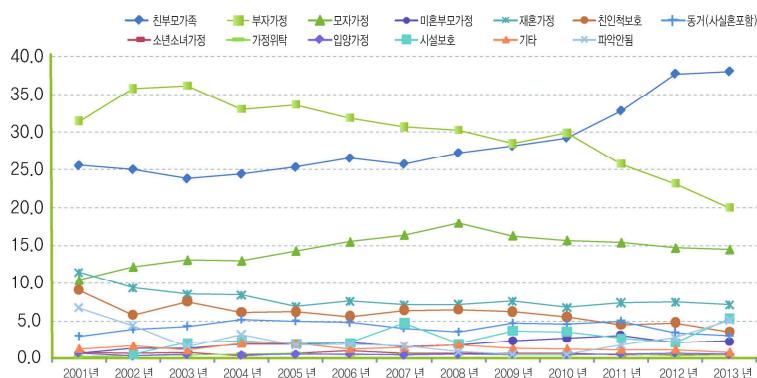
부자가정과 모자가정과 더불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부모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및 시행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연도 가족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친부모가족	536(25.5)	619(25.0)	696(23.8)	950(24.4)	1,173(25.3)	1,380(26.5)	1,432(25.7)	1,515(27.2)	1,599(28.1)	1,654(29.2)	1,988(32.8)	2,415(37.7)	2,581(38.0)	
친부 모 가족 의 형태	부자가정	662(31.4)	885(35.7)	1,054(36.1)	1,285(33.0)	1,559(33.7)	1,656(31.8)	1,710(30.6)	1,687(30.2)	1,615(28.4)	1,684(29.8)	1,559(25.7)	1,480(23.1)	1,360(20.0)
	모자가정	217(10.3)	299(12.1)	380(13.0)	502(12.9)	659(14.2)	799(15.4)	907(16.3)	999(17.9)	919(16.2)	881(15.6)	927(15.3)	935(14.6)	981(14.4)
	미혼부-모가정	10(0.5)	30(1.2)	35(1.2)	70(1.8)	85(1.8)	109(2.1)	78(1.4)	97(1.7)	132(2.3)	150(2.6)	180(3.0)	131(2.0)	154(2.3)
	제혼가정	238(11.3)	228(9.2)	246(8.4)	322(8.3)	317(6.8)	389(7.5)	390(7.0)	395(7.1)	429(7.6)	380(6.7)	441(7.3)	475(7.4)	473(7.0)
	친인척보호	187(8.9)	142(5.7)	217(7.4)	235(6.0)	283(6.1)	284(5.5)	353(6.3)	358(6.4)	347(6.1)	303(5.3)	266(4.4)	303(4.7)	238(3.5)
	동거 (사실혼포함)	60(2.9)	94(3.8)	122(4.2)	200(5.2)	227(4.9)	242(4.6)	215(3.8)	198(3.6)	263(4.6)	252(4.5)	294(4.9)	220(3.4)	201(3.0)
	소년소녀가정	15(0.7)	14(0.6)	21(0.7)	9(0.2)	26(0.6)	49(0.9)	28(0.5)	35(0.6)	31(0.5)	28(0.5)	21(0.3)	22(0.3)	20(0.3)
소계		1,389(66.0)	1,692(68.3)	2,075(71.0)	2,623(67.4)	3,156(68.1)	3,528(67.8)	3,681(65.9)	3,769(67.5)	3,736(65.7)	3,678(65.0)	3,688(60.9)	3,566(55.7)	3,427(50.4)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3(0.1)	5(0.2)	8(0.3)	20(0.5)	29(0.6)	14(0.3)	26(0.5)	26(0.5)	20(0.4)	15(0.3)	28(0.4)	13(0.2)	21(0.3)
	입양가정	13(0.6)	5(0.2)	13(0.4)	13(0.3)	17(0.4)	26(0.5)	19(0.3)	25(0.4)	26(0.5)	25(0.4)	30(0.5)	37(0.6)	27(0.4)
	시설보호	-	10(0.4)	57(2.0)	90(2.3)	88(1.9)	102(2.0)	254(4.6)	104(1.9)	204(3.6)	196(3.5)	155(2.6)	127(2.0)	356(5.2)
	소계	16(0.7)	20(0.8)	78(2.7)	123(3.1)	134(2.9)	142(2.8)	299(5.4)	155(2.8)	250(4.5)	236(4.2)	213(3.5)	177(2.8)	404(5.9)
기 타	25(1.2)	40(1.6)	29(1.0)	76(2.0)	92(2.0)	60(1.1)	77(1.4)	102(1.8)	75(1.3)	68(1.2)	67(1.1)	70(1.1)	46(0.7)	
파악 안 됨	139(6.6)	107(4.3)	43(1.5)	119(3.1)	78(1.7)	92(1.8)	92(1.6)	37(0.7)	25(0.4)	21(0.4)	102(1.7)	175(2.7)	338(5.0)	
계	2,105(100.0)	2,478(100.0)	2,921(100.0)	3,891(100.0)	4,633(100.0)	5,202(100.0)	5,581(100.0)	5,578(100.0)	5,685(100.0)	5,657(100.0)	6,058(100.0)	6,403(100.0)	6,796(100.0)	

(단위: %)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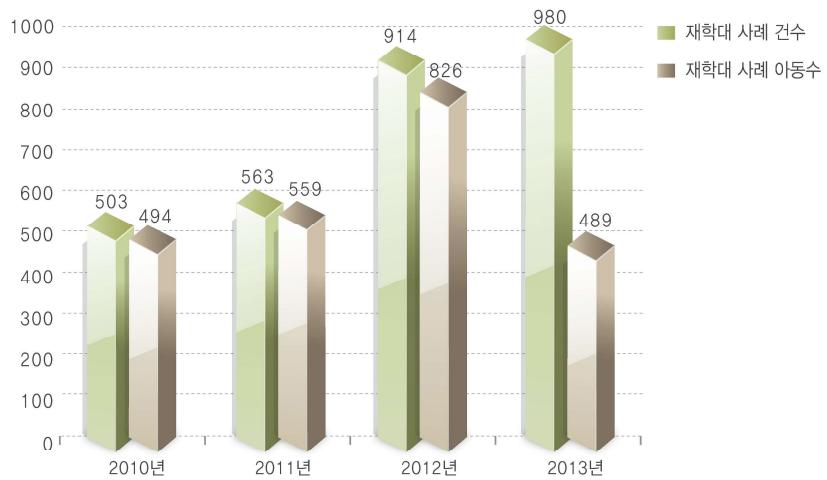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489명의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건, 명)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학대 사례 건수		503	563	914	980
재학대 사례 아동수		494	559	826	489

(단위: 건, 명)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매년 정서학대 및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성학대의 경우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체학대		193 (24.1)	257 (28.5)	361 (25.0)	440 (29.2)
정서학대		282 (35.2)	340 (37.7)	536 (37.1)	545 (36.2)
성학대		40 (5.0)	39 (4.2)	102 (7.1)	81 (5.4)
방임		286 (35.6)	266 (29.5)	445 (30.8)	440 (29.2)
유기		1 (0.1)	1 (0.1)	—	—
계		802 (100.0)	903 (100.0)	1,444 (100.0)	1,506 (100.0)

* 중복포함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재학대 사례 중 약 30% 정도가 초기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전체 재학대 사례 중 36.3%가 초기 아동학대사례 판정 이후 3년 이후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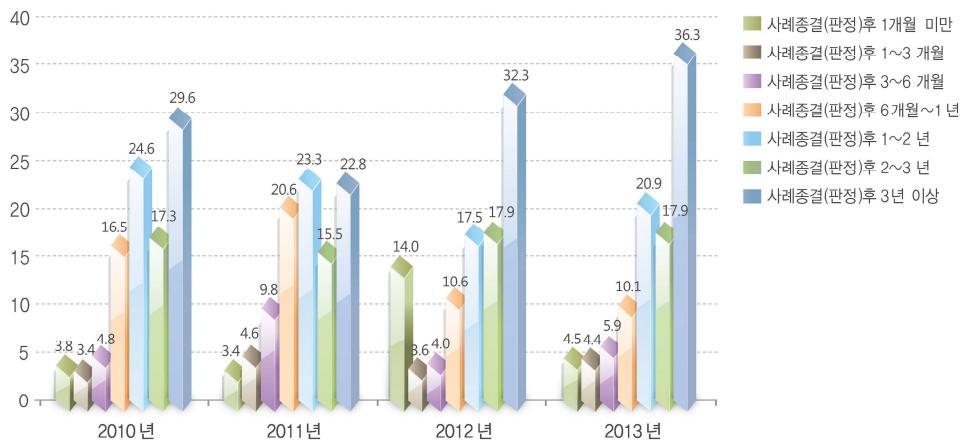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건, %)

발생시기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종결(판정) 후 1개월 미만		19 (3.8)	19 (3.4)	128 (14.0)	44 (4.5)
사례종결(판정) 후 1개월~3개월		17 (3.4)	26 (4.6)	33 (3.6)	43 (4.4)
사례종결(판정) 후 3개월~6개월		24 (4.8)	55 (9.8)	37 (4.0)	58 (5.9)
사례종결(판정) 후 6개월~1년		83 (16.5)	116 (20.6)	97 (10.6)	99 (10.1)
사례종결(판정) 후 1년~2년		124 (24.6)	131 (23.3)	160 (17.5)	205 (20.9)
사례종결(판정) 후 2년~3년		87 (17.3)	87 (15.5)	164 (17.9)	175 (17.9)
사례종결(판정) 후 3년 이상		149 (29.6)	129 (22.8)	295 (32.3)	356 (36.3)
계		503 (100.0)	563 (100.0)	914 (100.0)	980 (100.0)

* 2013년의 경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정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단위: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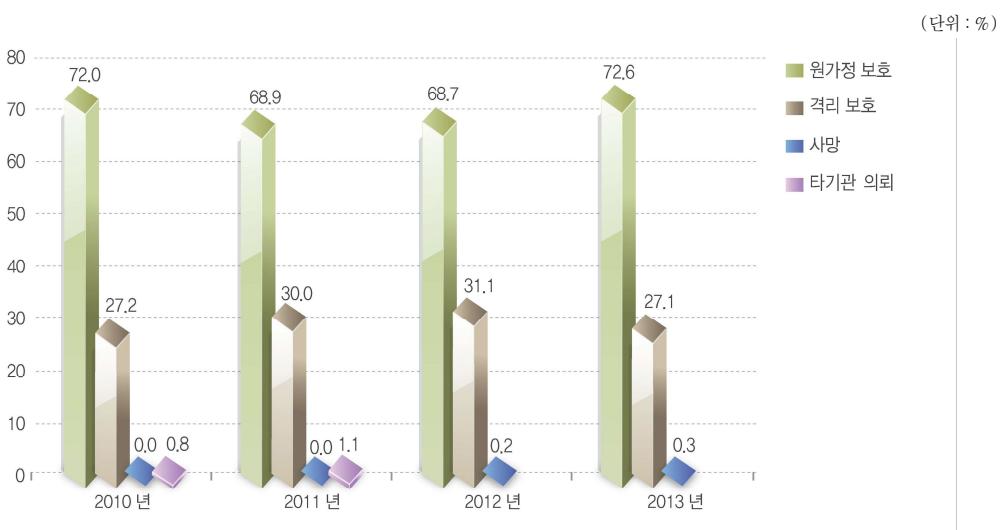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약 70% 이내 수준으로 나타났다. 격리보호의 경우 약 30% 이내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가정보호		362 (72.0)	388 (68.9)	628 (68.7)	711 (72.6)
격리보호		137 (27.2)	169 (30.0)	284 (31.1)	266 (27.1)
사망		0 (0.0)	0 (0.0)	2 (0.2)	3 (0.3)
타기관 의뢰		4 (0.8)	6 (1.1)	-	-
계		503 (100.0)	563 (100.0)	914 (100.0)	980 (100.0)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지속관찰의 경우 2011년까지는 80%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2013년에는 75.2%로 감소하였다. 반면 고소고발은 2011년까지 약 5%의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9.8%가 고소고발 조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관찰		411 (81.7)	472 (83.8)	703 (76.9)	737 (75.2)
고소·고발		21 (4.2)	30 (5.3)	71 (7.8)	96 (9.8)
타기관 의뢰		24 (4.8)	23 (4.1)	—	—
만나지 못 함		47 (9.3)	38 (6.8)	81 (8.9)	81 (8.3)
아동과의 분리		—	—	59 (6.5)	66 (6.7)
계		503 (100.0)	563 (100.0)	914 (100.0)	980 (100.0)

(단위: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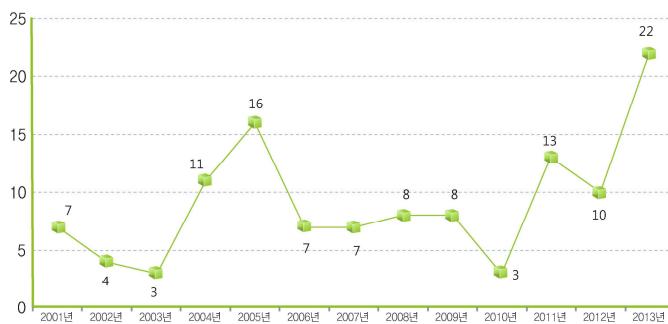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9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정보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사망아동의 형제자매 및 비가해부모 등) 또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사기관 제한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사후대처 방안 및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명 수	7	4	3	11	16	7	7	8	8	3	13	10	22	119

(단위: 건)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은 2012년을 제외하고 방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의 경우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3년의 경우 방임에 이어 신체학대 31.8%, 중복학대 1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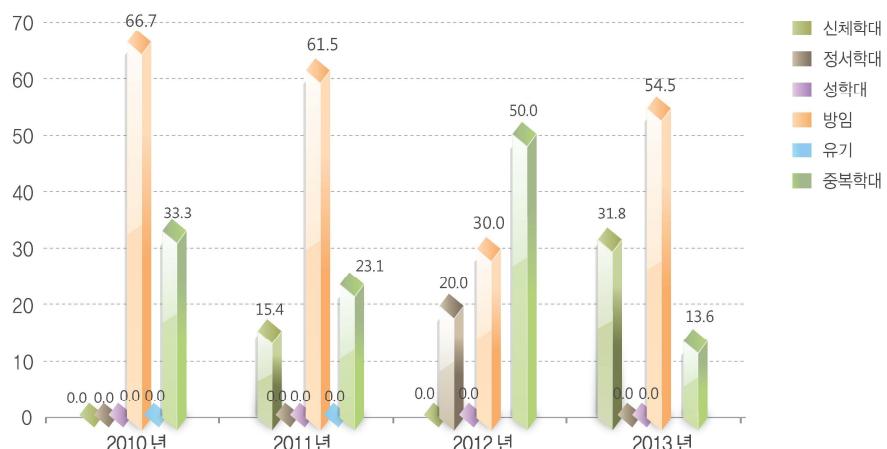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체학대		0(0.0)	2(15.4)	0(0.0)	7(31.8)
정서학대		0(0.0)	0(0.0)	2(20.0)	0(0.0)
성학대		0(0.0)	0(0.0)	0(0.0)	0(0.0)
방임		2(66.7)	8(61.5)	3(30.0)	12(54.5)
유기*		0(0.0)	0(0.0)	—	—
중복학대		1(33.3)	3(23.1)	5(50.0)	3(13.6)
계		3(100.0)	13(100.0)	10(100.0)	22(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합계함

(단위: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2013년의 경우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한 사례는 전체의 45.5%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례는 36.4%였다.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관찰		0 (0.0)	9 (69.2)	4 (40.0)	8 (36.4)
고소·고발		3 (100.0)	3 (23.1)	5 (50.0)	10 (45.5)
타기관 의뢰		0 (0.0)	0 (0.0)	—	—
만나지 못 함		0 (0.0)	1 (7.7)	0 (0.0)	4 (18.2)
아동과의 분리		—	—	1 (10.0)	0 (0.0)
계		3 (100.0)	13 (100.0)	10 (100.0)	22 (100.0)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부록

부 록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용어집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록 1. 용어집

[신고접수]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고접수 (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 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됨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메일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아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복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 하였으나 사례판정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보고한 사례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중복신고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유형이 있음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정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아동복지법 제25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정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스크리닝척도 :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아동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구분할 뿐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학대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됨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정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사례판정위원회의 :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정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잠재위험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수)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모·부자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 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 사례판정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위험사정척도 :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의 위험성과 위험 요인을 정확히 사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결정 유형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격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실시하는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

검진 및 검사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검진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함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 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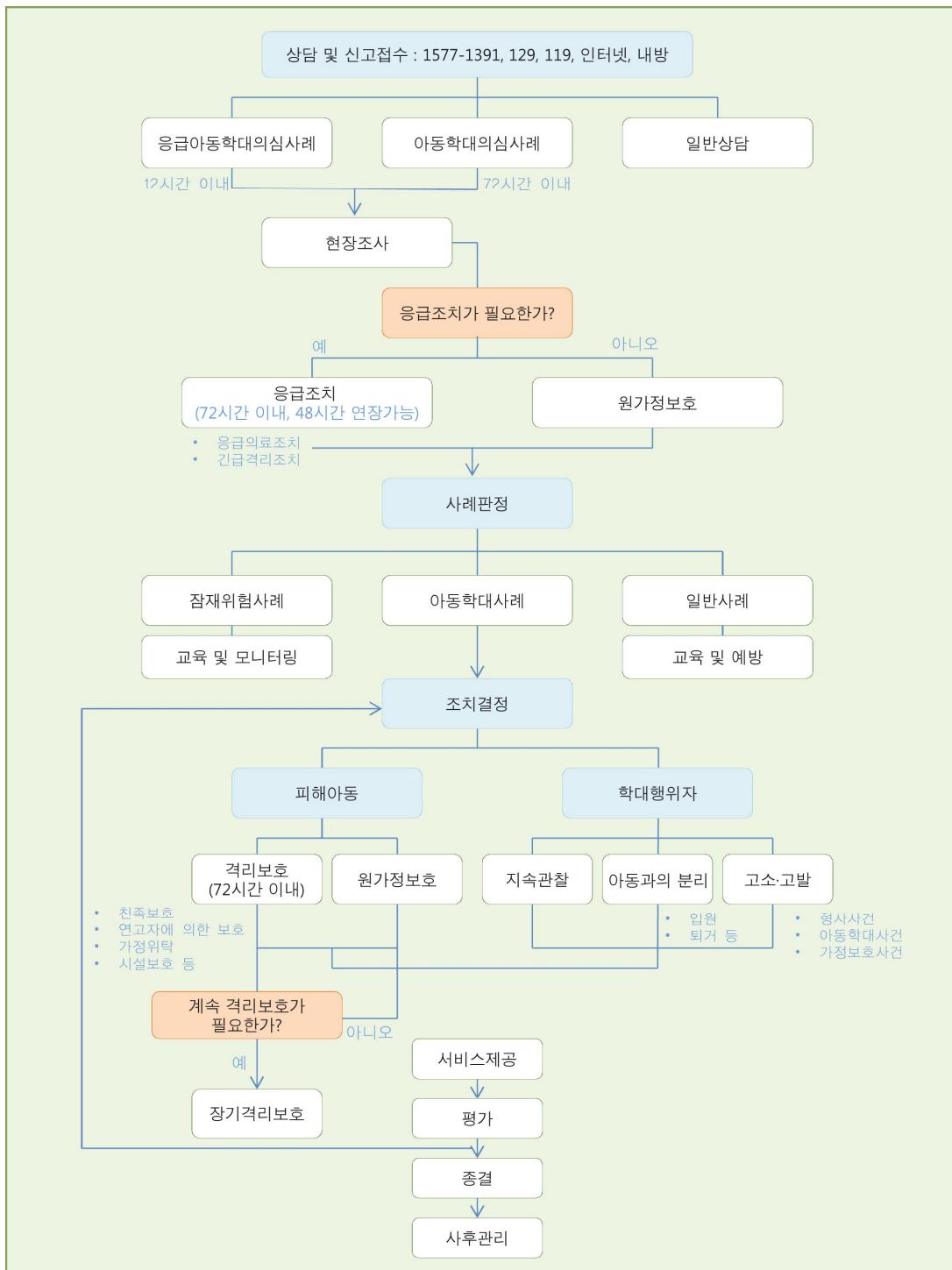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고소고발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된 이후,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법원 동행 및 보조인 선임제도 신청 등을 지원하는 것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부록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부록 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4년 7월 기준, 51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 (8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www.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십리로 69길 106	cps.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www.goodneighbors.kr /gangseo	02-2654-1391
	서울은평 아동보호 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65 2층	www.goodneighbors.kr /eunpyeong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7가길 5, 태안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 /yongdungpo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나길 3 성지관 201호	www.goodneighbors.kr /seongbuk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www.mapo.sc.or.kr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	www.goodneighbors.kr /gangdong	02-474-1391
부산 (2개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구,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adong.busan.go.kr	051-242-1391
	부산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5층	www.bd1391.or.kr	051-507-1391
대구 (2개소)	대구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www.dg1391.or.kr	053-422-1391~2
	대구광역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남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2층	http://www.goodneighbors.kr/ndaeju	053-623-1391
인천 (3개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www.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평구,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제현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 /ninchon	032-515-1391
	인천광역시 미추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http://cwc.incheon.go.kr/index.do	032-423-1391
광주 (1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www.cyber1391.or.kr	062-385-1391~3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www.goodneighbors.kr/edaejeon	042-254-6790~4
울산 (1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www.ulsan.sc.or.kr	052-245-9382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 (10개소)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길 20	www.goodneighbors.kr/suwon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도림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local/ui1391	031-877-8004
	경기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	www.goodneighbors.kr/sungnam	031-758-1385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	고양시, 괴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길 11 삼성프라자7층	www.goodneighbors.kr/goyang	031-966-1391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령마로 1334, 오승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hwaseong	031-297-6587
	경기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 405호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길 39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슈마프라자 203호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	www.goodneighbors.kr/yongin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www.goodneighbors.kr/siheung	031-316-1391
강원 (3개소)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길 35	www.1391.org	033-244(3)-1391
	강원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 5번길 33 반트스포트센터 2층	www.kd1391.or.kr	033-644-1391
	원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길 7	www.goodneighbors.kr/wonju	033-766-1391
충북 (3개소)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길 66-1	www.goodneighbors.kr/cheongju	043-217(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	www.cchkorea.org/ccpa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 1길 19	www.cbnb1391.org	043-731-3686
충남 (2개소)	충청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www.goodneighbors.kr/chonan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25, 2층	www.goodneighbors.kr/boryeong	041-734-6640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북 (3개소)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www.goodneighbors.kr/locat/jeonju	063-283-1391~2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www.goodneighbors.kr/locat/namwon	063-635-1391~4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복로 377	www.goodneighbors.kr/locat/iksan	063-852-1391
전남 (3개소)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www.e1391.or.kr	061-753-5125~8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www.goodneighbors.kr/mokpo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www.goodneighbors.kr/jnjb	061-332-1391
경북 (4개소)	경상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문경시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길 24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안동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직골길 20	www.adl1391.org	054-853-1391
	경북포항 아동보호 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 12, 3층	www.goodneighbors.kr/pohang	054-284-1391
	경북구미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2개소)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www.gnw1391.or.kr	055-757-1391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령로 59	www.jj1391.or.kr	064-712-1391~4
	서귀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www.sgp1391.org	064-732-1391~2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쇄일 : 2014년 7월

발행일 : 2014년 7월

발행인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편집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편집위원 : 김경희, 김상진, 강인수, 이태호, 이지연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02-558-1391)



